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범죄사실 보도의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03. 12. 12.자 판결 (2002가합9215)

서울고등법원 2004. 9. 14.자 판결 (2004나2610)

대 법 원 2005. 7. 15.자 판결 (2004다53425)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2005년 7월 15일 ○○지역 택시노조 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 국가와 (주)인천일보, (주)경인일보와 (주)기호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피고 인천일보는 1,000만 원, 피고 경인일보와 기호일보는 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국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신문기사는 그 제목이 본문에 비하여 활자의 크기나 지면 면적에 있어 훨씬 크고, 피의자이었던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문의 내용 또한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그가 대행한 법률사무 및 갈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다가, 피고 경인일보와 피고 기호일보는 ‘원고가 자격 없이 소송수행의 대가로 택시 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용자측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마치 원고가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도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피의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나아가 피고 경인일보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기사 말미에 이 사건 피의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사화하고 있어, 일반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

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사실의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그에 대한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인천일보 소속 기자와 피고 경인일보 소속 기자가 ○○○○경찰서에 취재를 위하여 들렀다가 경찰서 내의 당직대장, 업무보고서 등 경찰내무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을 발견한 후 그에 대하여 ○○○○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사실확인 작업만을 거쳤을 뿐 원고를 직접 면담한다거나 그와 같은 면담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취재를 통하여 피의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천일보와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경찰서의 당직대장과 업무보고철을 통해 알게된 원고의 피의사실에 대해 소속 경찰관들에게 간단한 진위 여부 확인작업을 거쳐 2000년 12월 14일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2가합9215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 금 실

소송수행자 서 ○ ○

2.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향동4가 18-1

대표이사 신 화 수

3. 주식회사 경인일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대표이사 우 제 찬

4. 주식회사 기호일보

인천시 중구 선린동 3

대표이사 서 강 훈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철 원

변론종결 : 2004. 11. 21.

판결선고 : 2003. 12. 12.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는 금 1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경인일보, 주식회사 기호일보는 각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2003.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 주식회사 경인일보, 주식회사 기호일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인일보, 주식회사 기호일보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경인일보, 주식회사 기호일보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8, 2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3, 7, 갑 제16호증의 8, 10, 11, 12, 14, 갑 제17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3 내지 5, 8, 9, 12의 각 기재와 을 제26호증의 10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을 제1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갑호증과 중복되는 을호증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가.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하 각 택시노조의 노사분규 등과 관련하여 법률교육, 상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탈세 또는 택시기사들의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의혹 등 부정비리를 여러차례 언론기관 등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 ○○경찰서 소속의 형사과장 김○○, 강력1반장 우○○ 경위, 강력1반에 속한 서○○ 경장(이하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이라 한다) 등은 2000. 12월 초 원고가 ○○지역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사측의 비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원고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

다. 소속 경찰관들은 위 내사과정에서 2000. 12. 8.과 같은 달 16.경 주식회사 ○○택시(이하 ○○택시라고만 한다) 소속 기사였던 이□□을 불러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으로부터 진정서를 작성받아 원고를 정식 입건하고 나아가 임○○, 이○○, 김○○, 하○○, 서○○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받는 등으로 수사한 다음 같은 달 12. 원고를 별지 1 기재와 같은 변호사법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로 긴급체포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며 원고가 위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소속 경찰관들은 위 참고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원고에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단정하여 같은 달 13.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이하 피고 인천일보라고만 한다) 소속의 김○○ 기자와 피고 주식회사 경인일보(이하 피고 경인일보라고만 한다) 소속의 이○○ 기자 및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이하 피고 기호일보라고만 한다) 소속의 성명불상의 기자는 ○○경찰서 출입기자들로서 각자 2000. 12. 13. ○○경찰서에 일상적인 취재를 위하여 들렀다가 위 경찰서 형사과 당직계에 있는 당직대장과 업무보고철(원고에 대한 범인검거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등을 통하여 위 피의사실을 지득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간단한 사실확인작업을 거친 후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피고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2000. 12. 14. 위 각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토대로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바. 한편, 위 ○○경찰서는 2000. 12. 19. 위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근거로 하여 보강수사를 마치고 2001. 1. 6. 원고를 변호사법위반

및 공갈죄로 기소하였으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01고단118, 1024(병합))은 2002. 9. 12.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공갈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항소부(2002노2432)는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반면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대법원 2003도7481호로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① 위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② 그 수사과정에서 인천 소재 신문사들 소속의 기자를 불러모아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로 인해 위 피의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수사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수사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피건대, ① 먼저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의 노조활동에 불만을 가진 자들로부터 거액의 로비를 받는 등 부정한 동기로 인해 원고를 수사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9, 10 내지 6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②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자료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26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를 내사하던 중 위 서○○이 2000. 11. 8. 원고에게 소송수행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을 불러 이□□으로부터 ○○택시 소속 택시기사들이 퇴직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원고가 소송을 맡기라고 하므로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모은 돈을 원고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사실, 당시 이□□은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혐의에 관하여 고소나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은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이□□이 이미 서부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사실, 그 후 서○○은 같은 달 16. 이□□을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았는데, 당시 이□□은 원고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으로 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서○○의 요구에 따라 그 작성일자를 2000. 11. 3.로 소급 기재한 사실, 서○○은 진정서를 받은 이후에 진정인을 소환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편철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진정서가 소급한 일자에 접수된 것처럼 접수확인원을 기재하고, 같은 일자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서 및 수사보고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잘못이 인정되고, ③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중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속 경찰관들이 2000. 12. 12. 원고를 긴급체포하면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를 압수한 다음 문○○에게 위 서류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②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서○○등 소속 경찰관들은 2000. 12월 초부터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진정서 및 수사보고서 등은 작성 일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시 수사단계에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며 위 작성일자의 변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소추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③의 경우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서류에 유한회사 ○○실업 명의로 된 작성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위 회사의 전무인 문○○을 불러 위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작성경위 등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위 ②, ③의 경우 소속 경찰관들의 수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법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권리 침해를 넘어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마지막으로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임○○, 이△△ 등으로 하여금 진실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5, 6,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먼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00. 12. 12. 기자들을 불러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경찰서 출입기자들이 2000. 12. 13. 위 경찰서에 들어가 당직대장과 업무보고철 등을 열람함으로써 위 피의사실을 지득한 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간단한 사실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취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사건보도를 위하여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취재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과 일반적인 취재관행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위 피의사실을 위 출입기자들에게 공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소속 경찰관

들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에 대한 청구

가.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각 신문사가 발행하는 2000. 12. 14.자 신문에 수사가 진행중인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택시 회사의 노조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는 원고가 택시기사 또는 사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각 기사에는 원고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기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에 원고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를 아는 사람들로서는 위 각 기사에 보이는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연맹(민택련) ○○지역본부 해고특위 위원장 이모씨(45·○○시 ○구○○동)”라는 표현에 나타난 소속단체, 직책, 성씨, 나이, 주소 등에 의하여 위 각 기사가 원고에 관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인천일보는 위 신문사의 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피의자인 원고측의 주장을 함께 적시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이 위 피의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천일보의 기사 말미에 “한편 이에 대해 민주택시 ○○본부는 ‘본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방향을 보고 조작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라고 기재되어 원고측의 반론을 적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기재부분은 기사의 출처를 경찰로 밝히면서 범죄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위 피의사실에 대한 원고측의 반론에 해당하는 기재부분은 원고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원고가 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출처로 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범죄수사보도에서 볼 수 있는 다소 통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반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언급이 없어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위 피의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증거가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

i) 변호사법위반 혐의 부분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 중 변호사법위반 혐의 부분의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2 내지 6, 갑 제12,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8. 12월 일자불상경 ○○택시의 퇴직자인 임○○ 등을 만나 ○○택시의 전현직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사납금 추가입금부분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실, ② 임○○은 위 소송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택시 전현직 기사들로부터 1인당 5만원 내지 10만 원을 각출하여 1999. 2. 1. 원고에게 인지대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1999.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임○○ 등을 만나 미리 준비한 소장 (원고 : 선정당사자 임○○(선정자 최○○ 등 66명), 피고 : ○○택시, 소가 합계 : 243,971,325원, 이하 '이 사건 제1민사소

송'이라 한다} 및 위임장, 각종 증거서류 등 첨부서류를 접수하면서 인지대(1,030,000원), 송달료(45,600원) 등을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임○○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임○○으로부터 각종 복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 ⑤ 그 후 이 사건 제1민사소송에 참가한 대부분의 현직 기사들이 소를 취하하자 원고는 1999. 5. 초순경 ○○택시 퇴직자인 이△△를 만나 이를 전부 취하하고 새로이 참가자를 모집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⑥이△△는 위 소송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택시 전직 기사들로부터 1인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각출하여 1999. 5. 13.과 5. 16. 원고에게 인지대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각 55만 원 및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⑦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택시가 자신에 대하여 타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비방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위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회에 자신의 ○○택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하기로 한 사실, ⑧ 이에 원고는 199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등을 만나 미리 준비한 소장 {원고 : 선정당사자 이○○(선정자 최○○ 등 22명), 피고 : ○○택시, 소가 합계 : 64,143,397원, 이하 '이 사건 제2민사소송'이라 한다} 및 위임장, 각종 증거서류 등 첨부서류를 접수하면서 인지대(320,000원), 송달료(45,600원) 등을 납부한 사실, ⑨ 그 후 원고는 최○○ 등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이△△로부터 각종 복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05,000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 ⑩ 이 사건 제2민사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1999. 11. 23. 원고 청구부분은 그와 같은 손해가 ○○택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최○○ 등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선정당사자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나아가 원고가 임○○, 이△△로부터 받은 금원이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선뜻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사기관이래 형사 제1심 및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임○○, 이△△로부터 이 사건 각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복사비 등의 소송비용조로 받은 것이며 그 이상의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임○○, 이△△의 수사기관 및 형사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을 통하여 위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에 대한 활동비, 수고비, 변호사비용, 교통비 등의 성격을 띤 것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각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

용조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하였는바, 위 활동비, 수고비, 변호사비용, 교통비 등의 표현은 전체적인 진술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이□□ 등이 인지대 등의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내용, 진행경과, 이 사건 금원의 수수경위,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지대, 송달료,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도장비, 복사비, 교통비 등의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 등을 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 이△△로부터 받은 위 각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수행과 관련한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관한 위 각 기사는 결국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없이 없다 할 것이다.

ii) 공갈 혐의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기사 중 공갈 혐의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위 범죄혐의가 진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6, 7, 10, 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만 한다)측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8내지 10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기업 관련 집회신고를 관할 ○○ ○○경찰서에 냈다가, 담당경찰관의 중재 권유에 따라 ○○기업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방문 경위가 그와 같고, 현직 경찰관의 입회한 상태에서 위 기사와 같은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이○○이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때 전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장소, 만나서 같이 있었던 시간 등에 관한 이○○의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④ 이○○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나타난 통화횟수 및 통화시간 등을 살펴보면, 동인이 원고를 만나려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⑤ 김○○가 원고에게 금원을 전달해 달라고 하○○에게 부탁한 경위, 김○○가 하○○에게 돈을 준 시간 등에 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점, ⑥ 하○○과 이○○은 위 금 500만원 중 1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기업에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김○○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형사 제1심에서는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경리직원인 정○○의 경찰 진술과 경리장부 및 통장에서 위 금 100만원의 행방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나 기재가 없는 점, ⑦ 얼마든지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서인천전화국 앞 화단분리대에서 금원을 교부하였

다는 이○○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공갈 혐의에 관한 위 각 기사도 결국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 인천일보 소속의 김○○ 기자, 피고 경인일보 소속의 이○○ 기자, 피고 기호일보 소속의 성명불상의 기자는 각 2000. 12. 13. ○○경찰서에 취재차 들렀다가 경찰서 내의 당직대장, 업무보고서 등 경찰내부문서를 통하여 원고가 변호사법위반 및 공갈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지득하고 그에 대하여 ○○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간단한 사실확인작업을 거친 후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이와 같이 경찰서 내에 있는 경찰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각 소속 기자들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은 경우에 그 성질상 고도의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피의자인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설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원고와의 면회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통하여 위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원고에 대한 위 피의사실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나아가 위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연령, 신분과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보도기사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 인천일보는 10,000,000원, 피고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각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인천일보는 10,000,000원, 피고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기사가 게재된 날인 2000. 12. 14.부터 위 피고

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3. 1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수 천
판사 변 성 환
판사 김 봉 원

2심 판결문

사 건 : 2004나261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 ○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승 규

소송수행자 서 ○ ○

피고, 항소인 : 2.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4가 18-1

대표이사 신 화 수

3. 주식회사 경인일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대표이사 우 제 찬

4. 주식회사 기호일보

인천 중구 선린동 3

대표이사 서 강 훈

피고 2,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 승 희

제 1심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2가합9215 판결

변론종결 : 2004. 8. 17.

판결선고 : 2004. 9. 14.

주 문 :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 주식회사 경인일보, 주식회사 기호일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 취지 :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2003.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 주식회사 경인일보, 주식회사 기호일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하 각 택시노조의 노사분규 등과 관련하여 법률교육, 상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탈세사실과 과다 청구된 보험금을 착복한 비리 등을 여러 차례 언론기관 등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 ○○경찰서 소속의 형사과장 김○○, 강력1반장 우○○ 경위, 강력1반에 속한 서○○ 경장(이하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이라 한다) 등은 2000. 12. 초 원고가 ○○지역의 택시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택시사업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원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원고를 2000. 12. 12. 별지 1 기재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로 긴급체포 한 후 다음날인 2000. 12. 13.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원고가 2000. 12. 14. 구속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인천일보(이하 피고 인천일보라고만 한다) 소속의 김○○ 기자와 피고 주식회사 경인일보(이하 피고 경인일보라고만 한다) 소속의 이○○ 기자는 ○○ ○○경찰서 출입기자들로서 2000. 12. 13. ○○ ○○경찰서에 일상적인 취재를 위하여 들렀다가 우연히 당시 ○○지역의 택시노조와 사업자간의 첨예한 대립상황에서 노조측의 활동을 주도한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간단한 확인작업을 거치고, 피고 주식회사 기호일보(이하 피고 기호일보라고만 한다) 소속의 성명불상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하여 원고의 혐의사실을 파악하여 각자 2000. 12. 14. 피고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이하 피고 신문사들이라 한다)에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 게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은 2000. 12. 19. 원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근거로 하여 보강수사를 마친 후 2001. 1. 6. 원고를 변호사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01고단118, 1024(병합)}은 2002. 9. 12.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공갈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항소부(2002노2432)는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반면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3도7481호) 2004.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고의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신문기자들에게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 5, 7,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수사하던 담당경찰관 서○○이 2000. 11. 8. 이□□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를 작성하면서 당시까지 이□□이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 그 후 2000. 11. 16. 이□□을 추가조사하면서 같은 날 이□□이 제출한 진정서의 제출일을 2000. 11. 3.로 소급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소급 기재된 진정서의 제출일에 맞추어 접수확인원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진정서와 수사보고서의 제출일자 및 작성일자 등이 법률상의 소추요건 등과 무관하게 단순히 수사기관의 서류작성의 편의나 관행에 따라 실제 날짜와 달리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에 수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수사가 위법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가 제1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가 제14호증의 1, 2, 을가 제25호증, 을가 제26호증의 1 내지 4, 8, 9,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기자와 이○○ 기자는 2000. 12. 13. ○○ ○○경찰서 당직실에 있던 당직대장과 업무보고철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발견한 후 위 업무보고철에 편철된 원고에 대한 검거보고서를 사본하여 강력1반장인 우○○에게 그와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사업자들로부터 사주를 받아 원고를 수사하면서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고, 참고인들에게 관련장부를 조작하도록 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문사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비록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소속단체, 직책, 성씨, 나이,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각 기사의 객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가 노조활동을 빌미로 노사문제에 개입해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문사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신문사들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신문사들의 담당기자들은 경찰서의 내부분견과 담당경찰관들을 통한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였고, 그와 같은 보도경위와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일부 유죄로 인정할 만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범죄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구속된 피의자를 면담하여 사실을 확인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 신문사들이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와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그에 대한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분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 공표사실 이외에 자신이 별도로 취재한 사실이나 개인적인 의견, 추리 등을 함께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상당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 기호일보의 다른 신문사들과 같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담당기자가 경찰관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위 기사를 작성, 보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 기사를 직접 취재, 보도한 담당기자의 성명을 밝히고 있지 않아

담당 기자가 어떤 취재과정을 거쳐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기사화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인천일보 소속의 김○○ 기자와 피고 경인일보 소속의 이○○ 기자가 2000. 12. 13. ○○ ○○경찰서에 취재를 위하여 들렀다가 경찰서 내의 당직대장, 업무보고서 등 경찰내부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을 발견한 후 그에 대하여 ○○ ○○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사실확인작업만을 거쳤을 뿐 원고를 직접 면담한다거나 그와 같은 면담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취재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비록 피고 인천일보가 기사 말미에 민주택시 ○○본부의 대응방침을 함께 기사화 하여 이를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경인일보와 피고 기호일보는 '원고가 자격 없이 소송수행의 대가로 택시 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용자측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 "택시회사 근로자 및 기업인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경찰에 적발", "소송대행금 명목으로 3백45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원고가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도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피의사실을 왜곡보고하고, 나아가 피고 경인일보는 특별한 근거 없이 기사 말미에 이 사건 피의사실과 무관한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직함을 이용해 택시회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업무대행과 노동법교육, 관공서 고소, 고발 등 노사개입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사화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재과정, 기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문사들이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 신문사들은, 원고가 공적인 인물임을 전제로 피고 신문사들이 비록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언론의 책임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택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위 주장과 같은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 신문사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나아가 피고 신문사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연령, 신분과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피고 신문사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기사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 인천일보는 10,000,000 원, 피고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각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인천일보는 10,000,000원, 피고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각 15,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날인 2000. 12. 14.부터 피고 신문사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별지 1, 2〉 피의사실, 신문기사 생략 - 편집자 주

3심 판결 문

사 건 : 2004다5342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이 ○ ○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향동 4가 18-1

대표이사 신 화 수

2. 주식회사 경인일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대표이사 우 제 찬

3. 주식회사 기호일보

인천 중구 선린동 3
대표이사 서 강 훈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 승 희, 민 경 술, 김 미 영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4. 9. 14. 선고 2004나2610 판결

판 결 선 고 : 2005. 7. 15.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외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신문기사는 그 제목이 본문에 비하여 활자의 크기나 지면 면적에 있어 훨씬 크고, 피의자이었던 원고의 범행을 단정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피고 인천일보는, 퇴직자 각종 訴 금품받고 대행, 피고 경인일보는, 택시회사 노사문 제개입 금품갈취, 피고 기호일보는, 위원장 직분이용 금품갈취, 등으로 각기 제목을 달았다) 본문의 내용 또한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그가 대행한 법률사무 및 갈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다가, 피고 경인일보와 피고 기호일보는 ‘원고가 자격 없이 소송수행의 대가로 택시 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용자측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 “택시회사 근로자 및 기업인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경찰에 적발”, “소송대행금 명목으로 3백45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원고가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도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피의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나아가 피고 경인일보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기사 말미에 이 사건 피의사실과 무관한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직함을 이용해 택시회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업무대행과 노동법교육, 관공서 고소, 고발 등 노사개입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사화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제목의 크기나 표현된 문구에 비추어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단순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근로자들로부터 소송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

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보도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여 주고 돈을 받은 것과 택시회사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신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언론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와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그에 대한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정당한 발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거나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를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 인천일보 소속의 김○○ 기자와 피고 경인일보 소속의 이○○ 기자가 2000. 12. 13. ○○○○경찰서에 취재를 위하여 들렀다가 경찰서 내의 당직대장, 업무보고서 등 경찰내부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을 발견한 후 그에 대하여 ○○ ○○경찰서 강력계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사실확인 작업만을 거쳤을 뿐 원고를 직접 면담한다거나 그와 같은 면담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취재를 통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택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 지 담
 대법관 배 기 원
 주 심 대법관 이 강 국
 대법관 김 용 담

□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상호간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은 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방송의 전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자 판결 (2002가합7713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자 판결 (2005나1639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11일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당시 문제된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왔고, 그 진위 여부마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방송사 내지 그 종사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원고의 보도내용과 태도에 대하여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가 다른 언론들에 비하여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 적게 보도하거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는 상반된 내용의 기사를 게재·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도의 전제사실은 대부분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의학관련 보도에서도 의문사위가 국내 법의학계에 허 일병 사건과 관련하여 부검, 법 의학 소견을 의뢰한 적이 없고, 법의학자가 시사저널을 통해 감정서를 보낸 일이 없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도내용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원고들의 보도목적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성공회대 교수로부터 원고의 보도태도는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 조사결과와 병역비리 의혹이 대비될 경우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구하였고,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보도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호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기관 내지 그 종사자들인 피고들의 다른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은 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견의 표명이 지극히 왜곡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전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덧붙여 “이 사건 보도에는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피고들과 대립하고 있던 원고의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엿보이나, 피고들은 의문사위 조사결과 뿐 아니라 원고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고, 확인작업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허 일병 사망과 관련된 보도 방침을 바꾼 배경이 16대 대통령 선거와 정치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피고들의 의견을 부연하여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되었고, 언론매체간의 특정 사실을 둘러싼 상호 비판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널리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저해되었고 원고의 명예감정 역시 다

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화방송이 2002년 9월 13일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 조선일보가 허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 상반된 내용으로 보도하는 이유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2가합77132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희

2. 최 ○ ○

3. 성 ○ ○

4. 이 ○ ○

5. 이 ○ ○

6. 박 ○ ○

7. 김 ○ ○

8. 정 ○ ○

피고 2 내지 8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전 태 진

변론종결 : 2004. 11. 24.

판결선고 : 2004. 12. 29.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3.부터 이 판결선고

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본방송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청색바탕의 화면 상단에 통상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통상 보도와 같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정정보도문 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정정보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만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강제2호증의 1 내지 4, 강제3호증의 1, 2, 강제4, 5호증, 강제6호증의 1 내지 4, 강제7호증의 1 내지 3, 강제8호증, 강제9호증의 1, 2, 강제10호증의 1 내지 5, 을제1 내지 10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6, 을제13호증의 1 내지 7, 을제16호증의 1 내지 4, 을제20호증의 1 내지 5, 을제21호증의 1 내지 5, 을제22호증의 1 내지 5, 을제23호증, 을제25호증의 1 내지 7, 을제2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

(1) 원고는 일간지 ‘조선일보’ 등을 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MBC라는 명칭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고 최○○은 2002. 9. 13. 당시 미디어 비평의 책임연출자, 피고 성○○은 ‘미디어 비평’의 진행자, 피고 이○○, 이○○은 ‘미디어 비평’의 취재기자, 피고 박○○, 김○○, 정○○은 ‘미디어 비평’의 연출자였던 사람이다.

(2) 미디어 비평이란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회 방영하는 것으로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특정사건에 대한 신문, 방송 등의 여러 언론들의 보도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비평을 하는 이른바 매체비평프로그램이다.

나. 2002. 9. 13.자 미디어 비평의 내용

피고 문화방송은 2002. 9. 13.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중 ‘뉴스초점’이라는 코너에서 “죽음의 진실을 가로막는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자막) 성○○/진행

성○○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비평의 성○○입니다. 인혁당 사건 등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행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작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뉴스초점에서는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을 외면해 오다가 허○○ 일병의 타살결론에 대해서는 왜곡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합니다. 또 미디어 이슈에서는 불편부당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정당 편들기에 나선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자막) 뉴스초점 - 죽음의 진실 가로막는 언론

성○○ : 지난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 가혹행위를 못 견뎌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허○○ 일병의 죽음이 사실은 술에 취한 상관에 의한 타살이었다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막) 허 일병 의문사 최종조사결과 발표/9. 10.

당일 새벽 중대본부 중대장실에서 있었던 중대간부들의 술자리 끝에 말다툼이 있었고, 술 취한 노모씨가 내부반에서 사병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허○○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죽음의 의혹을 파헤치는데 지난 18년의 세월을 바쳐온 허 일병의 아버지 허□□ 씨는 취재기자들을 향해서 원망과 부탁의 말을 던졌습니다.

(자막) 허□□/故 허○○ 일병의 아버지

: 우리 나라 언론들 참으로 옛날에는 한심스러웠어요. 우리 보도자료 가지고 조선일보도 여러 차례 문 두드렸어요. 바라지도 않았습시다. 그리고 여러 기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보복차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어떻게 했으면 잘할까 하는 그런 신념에서 어떠한 제도로서 이러한 의문사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다가 찬물을 끼얹으면 안되지요.

성○○ :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난달 20일 의문사위가 허 일병 사건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일제히 사건 당시의 정황과 조직적인 은폐경위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며칠 뒤부터 의문사위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사들을 연이어 실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막) 조선일보/ 8. 28. : 허 일병 부대원 9명 증언 “회식자리 싸움, 총기사고 없었다”

조선일보/8. 28. : 허○○ 일병 사망 당시 부대원들 조직적 은폐조작 없었다 - 본지 취재팀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신원이 확인되는 부대원 13명 중 연락 가능한 9명을 인터뷰한 결과, 부대원들은 ... “의문사위 발표내용은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르며 우리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것처럼 진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 :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했던 일부 당사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말이 왜곡보도됐다고 항의했습니다.

(자막) 허일병 부대원

: 그 때 당시 그 날짜에 쓰여진 두 면의 기사가 상당히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쓰여졌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게 어떻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남의 말을 변조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데스크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데스크에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 : 조선일보는 국내 법의학자들이 허일병의 부검사진을 검토한 뒤에 내린 자살소견을 위원회가 무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막) 조선일보/8. 30. : 허 일병 자살 의심할 증거 없어. 법의학자 8명, 작년 의문사위 소견 통보 - 고려대 의대 황○○ 교수는 29일 “나를 포함, 대한법의학회 소속 법의학자 8명이 ... 종합검토한 결과 자살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소견을 의문사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 :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막) 박○○/의문사위 조사3과장

: 국내 법의학계에다 우리가 허 일병 사건 관련해서 감정소견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황○○ 교수를 포함한 감정소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4월달에 우리가 감정소위원회에서 군사망사건 관련해서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사건, 비의뢰사건으로 나뉘어서 했는데 9번, 9번인데 허 일병 사건 경우는 법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의뢰대상으로 선정 ...

성○○ : 주간 시사저널은 조선일보의 남다른 보도태도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선일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막) 시사저널 9. 12. : 허 일병 의문사 진상 추적 - 조선일보가 틀렸다. 허○○ 일병을 또 사살하려는가. 8월 28일로부터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일부 부대원들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의문사위 중간조사결과 발표에 흠집을 내는 각종 보도가 뒤따랐다.

(자막) 정○○/시사저널 기자

: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만나는 취재원들이 범행의 공범관계는 모르게 가담한 인물일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정황,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취재원들을 어떤 방식

으로 접근해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 속에서 그 취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성○○ : 지난 200년 10월에 출범한 의문사위는 그 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왔습니다.

(내레이터)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과거 의문사는 모두 83건으로 현재 11건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억울한 죽음으로 판정되었고, 32건이 기각 또는 규명불능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그 동안 의문사위는 유신시절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가해졌던 잔인한 사상 전향 공작, 80년대 강제징집된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녹화사업 등 권위주의 정권시절 가해진 고문과 가혹행위의 실태를 파헤쳤다. 9월 16일로 활동기한이 임박해 온 의문사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의문사 39건이 영구미제로 역사 속에 묻힐 위기에 놓여 있다.

성○○ : 어제 의문사위는 1974년에 일어난 인혁당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사형이 선고된 8명을 선고한지 하루도 안 돼 형을 집행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사법살인이라는 지탄을 받아온 대표적인 시국사건입니다. 이 같이 역사의 그늘에 묻힌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의문사위의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대부분의 언론은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막) 동아일보/9. 4. 의문사위 시한 연장해야 -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지났더라도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의 진실을 캐기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자막) 한겨레/9. 10. : 땡(법적 활동시한 종료) 그만 철수! - 의문사규명위, 미약한 조사 권한

성○○ :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는 오히려 의문사위의 활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기사화했습니다.

(자막) 조선일보/9. 4. : “의문사위 활동 위헌소지” - 헌변(憲辯), 헌법소원 제기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3일 오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 :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위원회에 투입된 비용과 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막) 조선일보/9. 5. : ‘의문사’ 규명의 어려움 - 위원회가 발족해 한 건의 실적을 내는데 6개월 반이 걸렸다. 그것도 한 대학생의 의문사를 단순 사고사로 판명한 것이다. 과거의 수사결론 그대로였다. 전체 예산 48억원, 인력 95명의 의문사위원회가 이룬 성과의 비효율

성은 또 어떤가!

성○○ : 지난 9일, 의문사위는 71년 당시 선거관리위원이었던 김□□씨 죽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막) MBC 뉴스데스크/9. 9.

목포 선거관리위원이었던 53살의 김□□씨, 당시 집권공화당은 목포선거에서 패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김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김씨는 공화당과 경찰관계자들에 이끌려 서울행 열차를 탔고, 다음날 새벽 김제역 부근 논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되었습니다.

성○○ : 반면 조선일보는 김□□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사위의 발표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의문사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단신 처리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던 조선일보가 왜 허일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막) 한○○/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지금과 같이 돈 있는 뻥 있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들은 다 군대를 면제받는 마당에 평범한 집 자식이 군대에 가서 그것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 대로라면 라면 잘못 끓였다고 총을 맞고 죽고 이 엄청난 괴리감에서 이 사건이 폭발할 경우에 아마도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성○○ : 언론이 독재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숨진 사람들을 팽개쳐두고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언론의 존재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 이 사건 보도 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조사활동 등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 한다)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1. 1. 15. 법률 제6160호로 제정)에 따라 2000. 10. 17. 조직된 대통령소속 하의 위원회로 1984. 4. 2. 군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던 허○○ 일병의 유족의 진정에 의하여 2001년경 그의 죽음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2) 의문사위는 허○○ 일병 사건을 비롯하여 진정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하여 2001. 4. 13.경 법의학자인 소외 황○○, 이○○, 이○○, 허○○ 일병의 아버지인 소외 허□□, 소외 양○○, 백○○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감정의뢰 내용 검토를 위한 감정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감정소위원회는 의문사위 조사 3과의 '감정의뢰사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그 회의는 의문사위 조사3과가 허○○ 일병에 대한 군 공식 부검결과에 나타난 의문

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한 감정의뢰사항, 즉 ① 허○○ 일병의 사체 사진에 나타난 총상으로부터 3발의 총상 발생순서가 어떠한지, ② 좌측 가슴의 사입구가 권총에 의한 것인지, ③ 두부의 총상모양으로 보아 자살일 경우 어떠한 자세로 사격해야 가능한지, ④ 내용불상의 미소화된 위 내용물이 700cc 가량 검출되었는데 그것으로 판단하여 음식물섭취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⑤ 오른쪽 손의 인지와 모지의 상처는 방어상처인지 자살시 총구를 잡아 생긴 상처인지, ⑥ M16소총으로 3발을 쏘고 자살이 가능한 것인지(좌측 가슴과 우측 가슴에 총격을 가한 후 폐, 횡경막, 갈비뼈가 손상됐는데 기절하지 않고 재차 두부에 총격을 가할 수 있는지), ⑦ 자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좌측 가슴과 우측 가슴의 사입·사출구가 자살시 일반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각도인지의 여부와 M16소총의 조정간을 단발에 위치시켜 한발씩 각 가슴부위에 쏜 후 최종적으로 두부에 총격을 가할 수 있는지, ⑧ 자·타살에 대한 종합소견을 검토하여 허○○ 일병 사건을 감정의뢰사건이나 비의뢰사건 중의 하나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위 ① 내지 ⑧의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감정소위원회의 회의결과 법의학자들인 황○○, 이○○, 이○○은 ‘양쪽 가슴과 두부의 총상에는 모두 생활반응이 있었고, 통상의 자살정황과는 상이하기는 하지만 자살로 결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허□□은 당시의 상황조사를 먼저하고 난 다음 감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결과 감정소위원회는 감정보다는 상황조사가 더 필요하므로 그 상황조사의 결과를 확인한 후 감정을 하더라도 그 후에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허○○ 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필요시 재검토하기로 결정’ 하였다.

(5) 한편 의문사위는 2001. 5. 4.경 대한법의학회에 의문사위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9건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하였고, 대한법의학회는 2001. 6. 26.경 그 9건의 사건에 대한 감정의견을 의문사위에 통보하였다. 그 9건의 사건 중에 허○○ 일병 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

(1) 의문사위는 2002. 8. 20. 허○○ 일병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정례브리핑형식으로 발표하였는데(이하, ‘중간조사결과 발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4. 4. 2. 허○○ 일병이 근무하던 강원도 ○○군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부대 안에서 3소대장 장○○ 중위의 진급축하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중 중대장 전령이었던 허일병은 안주를 나르는 등 술시중을 들었고, 새벽 2~4시쯤 회식을 하던 간부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술 취한 노○○ 중사가 내무반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을 집어 난동을 부리다 실수로 총이 발사되었고 허일병은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그 날 새벽 4~6

시 사이 중대장은 곧 이 사실을 대대에 유선으로 보고했고, 대대는 연대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대장은 아침 6~7시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3중대로 올라와 중대장 및 현장에 있던 간부들과 사건 대책을 논의하고 내려갔습니다. 중대장은 현장에 있던 10여 명의 사병들을 하나씩 중대장실로 불러 내무반에서 흘러내린 허일병의 피를 닦아내기 위해 물청소를 지시하는 등 할 일을 알려주고 알리바이 조작을 하였습니다. 오전 10~11시 당시 중대원들이 허일병 시체를 중대본부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 창고로 옮긴 뒤 왼쪽 가슴과 머리에 1발씩 더 쏘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중대장은 오전 10~11시 총성을 듣고 창고에 가보니 허일병이 숨져있었다고 허위신고하였습니다.』

(2) 허○○ 일병 사건이 발생한 1984년부터 1995년까지 5회의 민원제기에 따라 조사한 육군은 “3발의 탄흔이 근접사격이 아닌 밀착사격이었던 점, 탄피 3개가 허일병 총기에서 발사된 점, 사건 현장에 격투 및 방어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의문사위가 그와는 반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여러 언론들은 의문사위의 발표 내용을 기사화하고, 사설에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등의 보도를 하였고, 원고도 2002. 8. 21.자 조선일보에 “84년 술 취한 상관 총맞고 숨진 사병 군(軍)서 자살로 조직적 은폐”라는 제목의 기사와 “두 번 죽은 젊은 병사의 원혼”이라는 사설 및 “18년간 아들의 명예회복 위해 싸워 ... 아버지 허□□씨”라는 기사를, 2002. 8. 22.자 조선일보에 “허○○ 일병 자살조작 과정 상급부대 개입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허일병 타살목격 사병들 헌병대 조사 뒤 포상휴가 ... 의문사위 ‘심한 고문당해’”라는 제목의 기사 등 의문사위의 발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였고, 국방부도 2002. 8. 26.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문사위가 제기한 각종 의문점들을 재조사하기로 하는 등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중간조사결과발표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3) 그 후 원고는 2002. 8. 28.자 조선일보에 당시 허○○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병들 및 장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A30면에 “허일병 부대원 9명 증언 - 회식자리 싸움·총기사고 없었다”라는 제목과 A31면에 “허○○ 일병 사망 당시 부대원들 - 조직적 은폐조작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게재·보도하였고, 2002. 8. 29.자로 “헛갈리는 ‘허일병 미스터리’”라는 사설을, A30면에 “당시 부검의 추정... 의문사위 발표와 달라 허일병 세 번째 총상 전까진 생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게재·보도하였으며, 2002. 8. 30.자 A30면 “허일병 자살 의심할 증거 없어 - 법의학자 8명, 작년 의문사위에 소견 통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같은 면에 “군당국 부검기록으로 본 허일병 사망 - 가슴 2곳 근접사격한 총상 흔적”라는 제목의 기사를, 2002. 9. 5.자 A6면에 “‘의문사’ 규명의 어려움”이라는 제목

의 기사를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조선일보의 2002. 8. 28.자 이후의 위 기사들은 허○○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부대원들이나 허○○ 일병 사망 후 그 사체를 부검했던 부검의를 취재원으로 하여 허○○ 일병은 의문사위의 2002. 8. 20.자 중간조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타살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기사들이었고, 특히 2002. 8. 30.자 A30면의 “허일병 자살 의심할 증거 없어 - 법의학자 8명, 작년 의문사위에 소견 통보”라는 제목의 기사는 “고려대 의대 황○○ 교수와 원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2. 8. 29. ‘나를 포함, 대한법의학회 소속 법의학자 8명이 작년 하반기 의문사위 요청으로 허 일병의 부검 사진과 당시 부검소견서를 검토했고 그 8명이 종합 검토한 결과 자살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소견을 의문사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면서 의문사위는 2002. 8. 20.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같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다(이하,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라 한다).

(4) 그 후 의문사위는 2002. 9. 10.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지난 84년 4월 2일 군복무 중 사망한 허○○ 일병은 자살했다는 당초 군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었는데, 의문사위가 그러한 결론을 내린 데에는 ‘허○○ 일병의 사망일 새벽 중대본부에서 이 부대 장모 중위의 진급 축하연이 있었고 축하연 당시 노모 중사가 중대장과 말싸움을 벌였으며, 허일병이 이를 말리던 중 노 중사가 우발적으로 쏜 총에 한 발 맞았다’는 전모 상병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였다.

(5) 한편 의문사위가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2002. 8. 20.경에는 “자신이 검찰의 병역면제수사에 참여한 과정에서 전직 병무청장으로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병무청 소속의 고위간부들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인 소외 이정연에 대한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에 따라 이정연의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되었으며, 병역판정부표를 파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그 병역면제 대책회의와 관련된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고 있다”는 소외 김대업의 주장에서 비롯된 이정연의 병역면제 사건(이른바 병풍사건)으로 인하여 정치권을 포함한 여론은 1997년 대선 당시에 이어 다시 이정연의 병역비리 문제나 일부 사회지도층 자제에 대한 병역비리 문제 등으로 격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언론들도 그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자 일부 언론들은 ‘이정연과 허○○’ (세계일보 2002. 9. 29.자), ‘어둠의 자식과 신의 아들’ (한겨레 2002. 8. 26.자), ‘두 번 입대하는 꿈’ (한국일보 2002.

9. 5.자) 등의 제목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이정연과 현역입대하였다가 사망한 허○○ 일병을 비교하면서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의혹은 병역비리를 부채질할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들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지역갈등에 이어 계층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병역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등의 기사들을 게재·보도하기도 하였다.

(6) 그 후 2002. 10. 29. 허○○ 일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허○○ 일병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중대본부에서 노모 중사의 총기 오발 사고는 없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02. 11. 25. 황○○ 등 국내 법의학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학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법의학토론회에서 참석 법의학자 중 5명이 자살 의견을 피력하였고, 1명만 판단을 유보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국방부특별진상조사단은 2002. 11. 28. ‘허○○ 일병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결정적 근거가 된 전모 상병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했다).

2.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1)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난달 20일 의문사위가 허 일병 사건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일제히 사건 당시의 정황과 조직적인 은폐경위 등을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며칠 뒤부터 의문사위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사들을 연이어 실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거나 “지금까지 의문사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단신 처리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던 조선일보가 왜 허일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라고 보도하는 과정에서(이하, ‘이 사건 1 보도 부분’이라 한다) ‘대부분 언론’과 ‘조선일보’를 비교하면서, 원고가 다른 언론들과는 달리 의문사위의 활동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거나 단신으로만 다루었는데 그러한 보도태도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 일병 사건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보도태도는 의문사위의 활동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의 보도이고, (2) 원고의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에 대해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보도(이하, ‘이 사건 2 보도 부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원고는 그 기사에서 황○○의 발언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2 보도 부분 역시 허위사실의 보도이며, (3) “지금까지 의문사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단신 처리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

지 않던 조선일보가 왜 허일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한 다음 한○○와의 인터뷰를 통해 “... 아마도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라고 보도한 것(이하, ‘이 사건 3 보도부분’이라 한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허○○ 일병 사건을 왜곡보도하는 것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 언론사인 원고의 공신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 주장한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허○○ 일병 사건에 대해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만 처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만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나. 판단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또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보도 부분은 ‘원고가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며칠 뒤부터 의문사위의 발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원고가 의문사위의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거나 단신으로만 보도하다가 갑자기 허○○ 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원고의 보도태도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고 의문사위의 활동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2 보도 부분은 원고의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기사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3 보도 부분은 ‘원고가 허○○ 일병 사건에 대해 다른 언론과는 달리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는 이유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보도태도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1, 2 보도 부분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 및 그를 전제로 한 의견의 표명은 이 사건 보도의 제목(‘죽음의 진실 가리는 언론’), 사용된 용어(사실이 아니다), 편집방법(다른 신문의 보도내용과 원고의 보도내용의 비교) 등 이 사건 보도 전체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두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3 보도 부분에 있어서 그 의견표명의 전제된 사실은 원고가 허○○ 일병 사건을 왜곡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3 보도 부분 또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피고들의 그와 같은 표현이 모두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행위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들이 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러한 의견표명을 한 이상 이는 피고들의 의견 내지 논평이라 할 것이므로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의견의 표명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뒤에서 살핀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는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생긴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문사위의 활동, 특히 허○○ 일병 사건에 대해 의문사위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에 치우친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하여 매체비평 차원에서 비판하고, 진정한 과거사 규명과 올바른 언론의 자세를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취재·보도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물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론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

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론기관이 국가권력이나 사회 제 세 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언론기관이 그러한 비판자의 역할을 충분히하고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언론기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시각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어느 언론기관이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다른 언론기관인 경우 그 비판의 상대방인 언론기관도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고, 그 비판이 그 언론기 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쉽사리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 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 사이에 있어서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타 언론기관에 의 한 비판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언론기관이 쌍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 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공익성

이 사건 보도의 경우, 그 보도 당시에 문제된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는 쉽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군대 내의 의문사에 대한 것으로, 그러한 군 의문사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의문사위가 설치되 었음은 물론 이 사건 보도전의 다른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발표는 우리 국민 모 두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왔고, 이 사건 보도에서 문제된 허○○ 일병 사건의 경우 특히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 당사자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등 그 진위 여부마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방송사 내지 그 종사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원고의 보도내용과 태도에 대하여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하고자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진실성 내지 상당성

(1) 이 사건 1 보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가 다른 언론들에 비하여 의문사위 의 활동에 대해 적게 보도하거나(원고는 의문사위가 2001. 10. 13.경에 발표한 탁○○ 사건, 2002. 7. 17.경 발표한 김○○ 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도하지 않았고, 의문사위가 활동

을 시작한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01. 10. 19.경 다른 언론사들은 언론사위의 활동 1년을 계기로 여러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위 활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고(2002. 3. 7.자 '의문사위 또 시끌'이라는 제목의 기사, 2002. 3. 8.자 '표류하는 의문사위'라는 제목의 기사, 2002. 7. 11.자 '헌변 - 의문사진상규명법 헌법소원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 2002. 9. 5.자 '의문사 규명의 어려움'이라는 기사 등), 의문사위가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 후인 2002. 9. 9. 발표하였던 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사화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보도 당시 일부 언론은 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음(2002. 8. 22.자 동아일보 및 2002. 9. 10.자 한겨레 등)에 비하여 원고는 2002. 9. 3.자 '헌변 - 의문사위 활동 위헌소지 - 헌법소원 제기'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와 최종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언론들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이었음에 비하여 원고는 2002. 8. 20. 의문사위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부터 2002. 8. 22.경까지는 의문사위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허□□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기사화하다가 2002. 8. 28.부터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보도한 사실(물론 의문사위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내용 중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문점이 있고 그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취재한 결과에 따라 보도한 것은 언론기관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1 보도 부분의 전제사실은 대부분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 앞서 원고 소속 기자와 인터뷰한 것으로 보도된 당시 허○○ 일병과 같은 부대원이었던 장모씨로부터 원고 소속의 기자가 자신과의 인터뷰 내용과는 다른 취지의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으며, 그에 대해 원고 소속의 기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였더니 그가 '미안하다', '데스크에서 요구하는 것을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부분은 데스크에서 넣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 등의 취재를 한 사실, 원고가 2002. 9. 5.자 '의문사 규명의 어려움'이라는 기사에서 "제작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화해위원회(TRC)'에서 활동한 파즐 란데라 박사가 방한하여 '수십 년간의 인권 유린 행위를 짧은 기간에 다 밝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고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고 고백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 피고들은 파즐 란데라 박사와 직접 인터뷰한 한○○로부터 파즐 란데라 박사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1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사실적시 부분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 일병 사건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언론사의 그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보도태도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안에 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비평 내지 비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 그래서 의문사위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피고들이 그에 대해 자신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1 보도 부분에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등 원고의 보도태도를 단정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의견의 표명 역시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2 보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문사위는 2001년 4월경 감정소위원회에 허 일병 사건 당시의 부검소견서 등을 검토하게 하면서 '감정의뢰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일정 내용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의뢰에 따라 황○○ 등 법의학자들이 법의학적 검토를 하여 통상의 자살상황과는 상이하기는 하지만 자살로 결론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보도에 대해 피고들이 이 사건 2 보도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문사위가 법의학자들에게 전혀 허○○ 일병 사건에 대해 법의학적 소견을 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2002. 8. 30.자 기사가 모두 허위의 보도라고 인식하게 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감정소위원회의 회의 결과 허○○ 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감정의뢰보다는 상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전에 그 감정소위원회와 관련하여 의문사위의 조사3과장 박○○을 인터뷰하여 그로부터 '의문사위는 국내 법의학계에 허 일병 사건과 관련하여 부검, 법의학 소견을 의뢰한 적이 없고, 감정소위원회에서 감정의뢰사건과 비의뢰사건으로 나누기 위해 다른 적이 있으며, 허 일병 사건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의뢰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는 요지의 답변까지 들은 사실, 원고의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에서 인용된 황○○ 역시 원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감정소위원회에서 허○○ 일병 사건을 감정의뢰사건으로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허○○ 일병의 부검소견서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의문사위에 통보하였던 것 같다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허○○ 일병 사건은 감정의뢰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도 직전인 2002. 9. 12. '시사저널'이 황○○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원고의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 중 국내 법의학계가 허 일병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고, 그와 관련하여 황○○이 시사저널 소속의 기자인 소외 정○○에게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 조선일보의 이 사건 법의학 관련 보도 뒤에 의문사위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확인한 결과 허○○ 일병 사건에 대해 감정서를 보낸 일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의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이 "자신 등 8명의 법의학자들이 의문사위 요청으로 허 일병의 부검 사진과 당시 부검소견서를 검토했고 그 8명이 종합 검토한 결과 자살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소견을 의문사위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하는 한편 "의문사위는 2002. 8. 20.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같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바, 그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의문사위가 법의학자들에게 허○○ 일병 사건에 대해 법의학적 소견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 법의학자들이 자살이라는 소견을 통보했음에도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그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2 보도 부분은 그러한 것을 반박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의문사위가 2002. 8. 30.자 법의학관련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를 요청하였고, 그에 대해 원고도 그 반론보도요청을 수용한 점, '미디어 비평'과 같은 매체비평의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의 편집 및 구성상의 특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2 보도 내용 역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3 보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 보도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보도태도, 즉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발표와 다른 결론의 보도 내용을 전제로, 원고들의 보도 목적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또는 "언론이 독재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숨진 사람들을 팽개쳐두고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언론의 존재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한다는 언론기관의 본질적 임무를 저버리면서까지 특정 정치인을 도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당시는 2002년 12월에 예정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997년 대통령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정연의 병역면제에 대한 비리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발표로 병역면제의혹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사실, 한편 '미디어 오늘'이라는 신문이 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2002. 5. 8.부터 2002. 5. 13.까지 전국의 신문사 및 방송사 기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설문조사에 응한 기자들 중 82.8%가 2002년 4월경에 실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각 정당의 후보경선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특정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보도하였고, 그 기자들 중 77.1%가 특정후보에게는 불리하게 보도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어느 언론사가 어떤 후보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보도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고, 또 조선일보가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반면 노무현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보도했다고 답변하기도 한 사실, 2002년 4월경에도 일부 신문은 조선일보가 이회창 후보를 편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계속 작성해 온 점,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성공회대 교수인 한○○로부터 원고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보도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고, 한○○로부터 원고의 그러한 보도태도는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 조사결과와 병역비리의혹이 대비될 경우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들은 점, 이 사건 3 보도 부분은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 피고들의 입장에서 의문사위의 활동이나 허○○ 일병 사건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원고의 허○○ 일병 사건 관련 보도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상호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기관 내지 그 종사자들인 피고들의 다른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은 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나아가 이 사건 3 보도 부분은 원고에게 언론기관으로서의 중립적 보도를 촉구하기 위한 의견의 표명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도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태도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여러 차례 비판 내지 비평을 하여 온 점, 그러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견의 표명이 지극히 왜곡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보도 전후의 제반 사정, 언론기관 또는 그 종사자로서의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3 보도 부분에서의 의견 표명은 그 전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나아가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왜곡"이라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들이 허○○ 일병

과 근무한 부대원이나 의문사위의 조사3과장, 시사저널 소속의 기자, 한○○ 등을 직접 취재한 결과 원고의 허○○ 일병 사건 관련 보도 중 2002. 8. 28.자 “허○○ 일병 사망 당시 부대원들 조직적 은폐조작은 없었다”라는 기사는 취재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달리 기사화하였고, 2002. 8. 30.자 범의학관련보도에도 일부 오류가 있다는 등 피고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다소 과장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표현내용이 비평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모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로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그와 같이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을 넘은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균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2심 판결문

사 건 : 2005나16395 손해배상(기) 등

원 고, 항 소 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2. 최 ○ ○

3. 성 ○ ○

4. 이 ○ ○

5. 이 ○ ○

피고 2 내지 5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6. 박 ○ ○

7. 김 ○ ○

8. 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전 태 진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2가합77132 판결

변론종결 : 2005. 8. 30.

판결선고 : 2005. 10. 11.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본방송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청색바탕의 화면 상단에 통상 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보도와 같은 크기의 흰색 글자로 시청자들이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정정보도문의 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정정보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2행의 '200년 10월'을 '2000년 10월'로 정정하고, 제20쪽 7행부터 제21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전에 원고가 다른 언론들에 비하여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하여 비교적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였고, 다른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루었던 김□□ 사건 등에 관한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발표에 관하여는 단편적으로 보도하거나 아예 기사화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보도 당시 일부 언론은 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음(2002. 8. 22.자 동아일보 및 2002. 9. 10.자 한겨레 등)에 비하여 원고는 2002. 9. 3.자 ‘헌법 - 의문사위 활동 위헌소지 - 헌법소원 제기’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 의문사위의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발표에 대하여 다른 언론들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이었음에 비하여 원고는 2002. 8. 20. 의문사위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부터 2002. 8. 22.경까지는 의문사위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허□□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기사화하다가 2002. 8. 28.부터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보도한 사실(허○○ 일병 사망사건의 조사과정에 허일병의 아버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고, 중간조사결과 발표내용 중에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문점이 있어 그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취재한 결과에 따라 보도한 것은 언론기관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1 보도 부분의 전제사실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주요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확인 작업 없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허○○ 일병 관련 보도를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오보 또는 거짓 보도로 단정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나, 언론의 보도로 인해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경우와 동일시 될 수 없고, 그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 목적, 영업의 범위,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함께 고려하여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 등의 신용,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그 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 상호간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가 특정 보도의 사실여부를 둘러싼 매체

상호간의 정당한 비평인지 아니면 성향이 다른 상대 언론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일종의 악의적인 비난인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될 것이나, 거기에 각 언론사의 규모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 상대방의 보도에 대한 방어 내지 반박수단으로 자신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15대와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국내 굴지의 대형 언론사들이 매체의 특성으로서의 보도경향이나 이념적 가치관을 넘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후보가 누구인지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안을 자사의 처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언론사를 사실이나 신실한 매체비평 프로그램을 통하여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비판이나 비난을 해 온 것도 사실임은 우리가 경험한 바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보도에는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피고들과 대립하고 있던 원고의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엿보이고, 이 사건 보도에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도에 연이어 원고의 특정정당 편들기를 비판하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보도 이후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의 수사결과가 당초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허○○ 일병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 8. 22.까지의 기사에서 허○○ 일병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보도하던 원고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법률에 의한 공적 조사기관인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와 관련된 기사를 연속하여 보도하자, 피고들은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뿐 아니라 원고의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 일병과 같이 근무한 부대원, 의문사위 조사3과장,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자, 성공회대 한○○ 교수 등을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고, 그와 같은 확인작업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원고의 보도태도와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원고가 허○○ 일병의 사망과 관련된 보도 방침을 바꾼 배경이 16대 대통령 선거와 정치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피고들의 의견을 부연하여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에 이 사건 보도가 특정 사안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원고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문화방송이 사회적 영향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도의 대등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조선일보 등의 언론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매

체간의 특정 사실을 둘러싼 상호 비판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널리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저해되었고 원고의 명예감정 역시 다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박 인 식
판사 김 경 호

〈별지 2〉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국정원의 도·감청 가능성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0.자 판결 (2002가합67395)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005년 6월 10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이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가 2002년 10월 25일자 1면 『국정원, 첨단장비 50대 투입 요인 휴대전화 광범위 도청』 제하의 기사로 국가정보원이 외국으로부터 첨단장비를 구입해 정관계, 재계 및 언론계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도·감청을 하였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주요인물을 도·감청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첨단도청장비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구성원들이 본래의 조직 목적과는 다르게 주요인물을 도·감청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가능성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또한 “피고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도·감청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보안경비업체도 그 도·감청 가능성을 긍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여부를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사화한 것에 어떠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고, 또한 사생활보호라는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합67395 손해배상(기)

원 고 : 1. 광 ○ ○

2. 전 ○ ○

3. 최 ○ ○

4. 박 ○ ○

5. 홍 ○ ○

서울 서초구 양재2동 324-2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2. 어 ○ ○

3. 정 ○ ○

4. 이 ○ ○

5. 김 ○ ○

6. 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변론종결 : 2005. 5. 13.

판결선고 : 2005. 6. 10.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광○○에게 금300,000,000원, 원고 전○○, 원고 최○○, 원고 박○○, 원고 홍○○에게 각 금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동아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1면 기사 게재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명조체 28급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명조체 14급 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신문사로서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어○○은 피고 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정○○은 피고 신문사의 사회1부장, 피고 이○○, 김○○, 김○○은 피고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이다.

(2) 원고들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원고 곽○○은 통신 ○○ 및 ○○ 등 담당부서의 국장(1급), 원고 홍○○은 그 부서의 단장(2급), 원고 전○○은 단장(3급), 원고 박○○과 최○○은 과장(각 3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및 그 내용

피고 신문사는 2002. 10. 25.에 발행된 동아일보 제1면에 <국정원, 첨단장비 50대 투입 要人 휴대전화 광범위 도청>라는 대제목과 함께 <국정원 관계자가 本報에 폭로>, <政-官-言-財界등 주요인사 대상>, <광화문 여의도 과천서 집중 감청>라는 중제목을 달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제3면에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통화-위치 도청>라는 중제목과 함께 <국정원 관계자가 폭로한 ‘엿듣기’ 실태>, <국가기관 대당 30만달러짜리 美장비 들여와>, <번호 최대 1000개 입력... 발신-수신때 자동감지>, <보안업체 “정치인등 방지장비 구입문의 쇄도”>라는 소제목을 달고,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위 두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이 외국으로부터 첨단장비를 구입하거나 정관계, 재계 및 언론계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도·감청을 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에 이를 담당하는 특별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 중에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아무런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문, 풍문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보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이 정관계 및 재계, 언론계 등에 중사하는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내에서 특수한 장비와 기술을 이용한 ○○기술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신문사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민적인 의혹의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언론매체의 특정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기

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이 주요인물을 도·감청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첨단도청장비를 탑재한 승용차로써 정관가와 언론사가 밀집된 서울 여의도, 세종로, 서초동과 경기 과천시 등지의 목표건물 주변에서 도·감청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비싼 첨단도청장비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기존의 20여대에서 50대로 늘려 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구성원들이 본래의 조직 목적과는 다르게 주요인물을 도·감청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일응 국가정보원에서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우선 이 사건 각 기사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가능성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002. 10. 22.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도청자료’에 근거했다면서 당시 사회적 이슈로 되었던 금융기관의 현대상선 주식회사에 대한 4,000억원의 부당대

출에 관련된 수사에 있어 축소 수사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사이의 전화통화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도청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들에 의해 이 사건 각 기사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국내 주요 언론사가 위 정형근 의원의 주장을 보도한 사실, 그 당시 이미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위치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따라서 휴대전화의 도·감청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였던 사실, 피고들은 2002. 8.경 국가정보원 중견간부로부터 국가정보원의 도청차량이 광화문일대를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정형근 의원과 경찰의 정보관계자 등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간부의 제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부합하는 점을 확인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01277호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6조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모든 직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 중에서도 그 조직과 업무에 있어 비공개성, 밀행성, 접근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과 국가정보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도·감청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보안경비업체도 그 도·감청 가능성을 긍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여부를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사화한 것에 어떠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국정원 담당부서' 내지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특별기구'라는 집단표시가 곧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고, 또한 사생활보호라는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섭
판사 이봉수
판사 황인경

〈별지 1, 2〉 기사생략

〈별지 3〉 정정보도문생략 - 편집자주

□

보도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1.자 판결 (2002가단29613)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심재남 판사)는 2005년 7월 1일 유○○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PD, 유○○의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는 피고인 문화방송이 2002년 3월 14일 「우리시대」 ‘희망을 위하여’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희망이라는 아이가 이혼한 엄마와 산다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고, 강한 심리적 불안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원고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이상한 납치극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명문대 출신의 박사로서 직장 소재지가 부산인 대학교수이고 이혼 후 재혼하였으며 친가는 부산이고 이혼한 전처의 집은 인천이라는 언급만으로는 희망이 아빠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원고를 지칭

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단29613 손해배상(기)

원 고 : 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은 숙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2. 김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내

3. 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 돈 명, 이 석 태, 김 형 태, 이 정 희, 윤 영 환

변론종결 : 2005. 4. 15.

판결선고 : 2005. 7. 1.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맹○○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비디오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0. 2. ○○대학교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1. 3.부터 ○○
○○대학교 ○○○○학과 교수(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
○은 2002. 3. 14. 19:20부터 20:20분 사이에 방영된 피고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우리
시대> 중 “희망을 위하여”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담당 프로듀
서이며, 피고 김□□은 1992. 3. 원고와 결혼하여 1999. 11. 4. 협의이혼한 원고의 전처로서 원
고의 아들인 유□□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구성 및 주요 내용

(1) 피고 문화방송의 <우리시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사프로그램으로서, 한 회당 15 내지 20분 가량의 2, 3개의 내
용으로 구성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진행자 백지연의 이야기 외에 대역배우를 통한 재연 장면, 피고
김□□과 유□□의 인터뷰, 원고의 전화 인터뷰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전체 내용은 별지 '희망을 위하여' 기재와 같다.)

- 희망이라는 아이가 있다. 올해 나이 꼭 10살. 예정대로라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 새
친구들을 사귀느라 한창 들떠 있을 때지만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돈이 없어서
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다. 단지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산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할
희망이가 심리치료연구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강한 심리적 불안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 희망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자동차에 아이를 강제로 태우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을 빠르게 보여주다.) 이상한 납
치극이 일어났던 것은 한 달 전쯤의 일이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한 사람, 바로 아이의 아빠였다. (여자를 밀어뜨리는 남자의 모습과 절규하는
듯한 여자의 모습을 연이어 재연하는 장면을 보여주다.) 아빠에 의해 계획된 납치극. 믿기
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졌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 단란했던 희망이네 가족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3년 전, 희망이가 7살 때 일이다. 명문대
출신의 아빠와 아름다운 엄마 그 멋진 조합은 이혼서류 한 장에 끝이 났고, 양육권은 엄마
가 친권은 아빠가 갖기로 합의했다.

- 아이는 그렇게 양육권을 가진 엄마와 함께 살게 됐지만 혼자 사는 엄마가 아이를 키운
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아이는 엄마의 부탁에 따라 엄마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박사) 논문을 다 쓴 아빠에게 맡겨졌고, 다시 아빠의 직장이 있는 부산 할머니 집으로 내려와 아빠와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아빠가 재혼을 한다고 하였다.

- 사정이 달라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한 달에 두어 번 희망이를 보러 내려오던 엄마는 어느 날 희망이에게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구멍이 송송 나 있을 정도의 닳아 해진 팬티를 입고 있는 아이. (구멍 난 팬티를 연이어 비추다.) 구멍 난 팬티는 이후 세 차례나 더 발견됐고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아빠의 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엄마와 괜한 트집이라는 아빠의 반박.

- 급기야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가 부산으로 내려와 희망이를 만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게 시작했다.

- 이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엄마는 드디어 희망이에게 같이 살고 싶은데 너의 의사는 어떠냐고 물어보았는데 희망이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해 12. 23.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집으로 왔다. 다만 아이의 부탁에 따라 아이랑 함께 살기로 했다는 결심을 미리 아빠에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 인천 집에 올라 온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하여 겨울방학 때부터 아이랑 함께 살기로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아빠는 완강하게 반대하며 당장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양육권을 가진 엄마와 친권을 가진 아빠의 실랑이는 결국 아이의 학교 문제로 번졌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전학하기 위해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때문이었다. 겨울 내내 계속된 실랑이 속에 개학날은 점점 다가오고 엄마는 결국 친권자변경소송을 청구하게 된다.

-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날 저녁,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희망이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한 여자가 엄마를 붙잡고 한 남자가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고 아이가 안간힘을 써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 엄마가 자동차 안에 상체를 넣고 매달리는 모습 등을 연이어 재연하는 장면을 보여주다.) 엄마를 붙잡은 여자는 희망이의 고모였고 희망이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한 남자는 아빠였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엄마와 아이, 순식간에 동네는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다시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을 보여주다.) 그러나 엄마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일순간 아이를 빼앗기게 되었다.

-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잠시 후 엄마가 아이를 붙잡기 위하여 차에 매달리자 아빠는 엄마를 매단 채 그대로 10미터 이상을 달렸다.

- 동네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상황은 종결됐고 공포에 질린 엄마는

아빠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아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찾은 신경정신과에서는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전학시키고 함께 사는 것. 그러나 학교측은 친권자인 아빠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학교 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시끄러워지니까 이의를 안 걸도록 해야만 전학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혼한 엄마는 양육권이 있어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는 기막힌 현실이다.

- 희망이의 열 번째 봄은 아직 너무 답답한 햇빛이다. 현행 민법상 이제는 이혼한 여성도 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친권이나 양육권은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무엇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인지 먼저 생각했다면 아이가 이토록 상처 받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부디 희망이가 상처를 잘 딛고 일어나 건강하게 구김 없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사건 등장인물들은 '희망이', '희망이 엄마', '희망이 아빠' 등으로 호칭되고, 다만 화면에 원고는 '윤○○'으로, 피고 김○○은 '김○○'으로, 유○○은 '윤○○'으로 각 자막처리되었으며, 피고 김○○과 유○○의 얼굴은 통상의 시청자들로서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처리되었고, 원고와 유○○의 목소리는 변조되었으나, 피고 김○○의 목소리는 동인의 동의에 따라 그대로 방송되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경위

피고 문화방송은,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혼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부모에게는 친권과 양육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경각심을 주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입안을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방송이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영상 자체

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그 시청자들이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 중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가던 희망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한 이상한 남치극을 벌인 아빠가, 그리고 희망이에게 구멍이 숭숭 나 있을 정도로 닳아 해진 팬티를 입게 한 아빠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다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 중 희망이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으로는 ① 명문대 출신의 아빠, ② 아이 아빠가 (박사) 논문을 다 쓴 상태였음, ③ 아빠의 직장이 있는 부산에서의 생활, ④ 부산 할머니 집, ⑤ 아빠가 재혼을 하였음, ⑥ 인천 외할머니 집, ⑦ 아이의 아빠는 대학교수, ⑧ 피고 김□□의 목소리, 체격과 윤곽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① 내지 ⑦의 표현, 즉 명문대 출신의 박사로서 직장 소재지가 부산인 대학교수이고 이혼 후 재혼하였으며 친가는 부산이고 이혼한 전처의 집은 인천이라는 언급만으로는 위 희망이 아빠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피고 김□□의 절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 및 이혼 전의 원고 부부와 절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서 피고 김□□의 목소리, 체격과 윤곽을 잘 아는 사람은 위 희망이의 아빠가 피고 김□□의 이혼한 남편인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 중 희망이 아빠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희망이 아빠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9,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김□□이 이혼을 할 당시 친권은 원고가 갖되 유□□의 양육은 계속하여 피고 김□□이 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2002. 2. 5. 피고 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유□□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이때 원고의 동생인 유○○는 피고 김□□을 붙잡고 원고는 유□□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 김□□과 유□□이 심하게 저항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김□□이 차 안에 있는 유□□을 붙잡기 위하여 상체만을 차 안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몇 미터 진행시킨 사실, ③ 이로 인하여 유□□이 어머니와의 분리불안과 부정적 사건의 예견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상당기간의 신경과적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실, ④ 피고 김□□은 한 달에 두어 번 부산에 내려가 유□□을 만났는데 이때 유□□이 구멍이 송송 나 있을 정도로 닳아 해진 팬티를 몇 차례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1 내지 13호증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

사생활 침해에 있어 수인해야 할 범위가 큰 공인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진실성이나 진실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자 판결 (2004가합8252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유명 연예인 전○○(본명 : 왕○○)과 소속 매니지먼트사 (주)○○○(대표 정○○)가 뉴시스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뉴시스와 소속기자 민○○은 각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다.

원고들은 뉴시스가 지난 2004년 9월 29일자 『영화배우 전○○, '을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왕○○이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는 허위 내용을 적시, 이를 뉴시스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입었고 이 기사로 원고는 물론 원고가 소속된 회사의 명예도 훼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자 ‘스타’로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 말하고 “그러나 원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과 결혼할 예정이었거나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로서는 원고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등을 한 다음에 보도해야 함에도 피고 민○○은 특별히 원고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피고 최해운이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82527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왕 ○ ○(예명 : 전 ○ ○)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 ○

원고들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8 삼보빌딩 1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표 종 록

피 고 : 1.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51-8

대표이사 최 해 운

2. 최 해 운

3. 민 ○ ○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임 홍 중, 정 성 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상 현

변론종결 : 2005. 6. 22

판결선고 : 2005. 7. 6.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민○○은 각자 원고 왕○○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9.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왕○○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왕○○과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민○○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왕○○이, 나머지 1/2은 위 피고들이, 원고 왕○○과 피고 최해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왕○○이,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왕○○에게 7억 원,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3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왕○○은 '엽기적인 그녀', '내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화 등에 출연하였고, 광고모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며, 원고 회사(원래 상호는 ○○○○ ○○였으나 2004. 8. 2.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원고 왕○○에 대한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newsis.com)에 기사를 게재하면 그와 동시에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kr), 다음(www.daum.net), 야후(www.yahoo.co.kr) 등에 자동적으로 기사가 전송되는 형태로 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기사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피고 최해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민○○은 피고 회사 연예부 소속의 기자로 아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04. 9. 29.자 기사

피고 회사는 2004. 9. 29. 제목 "영화배우 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 하에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영화배우 전○○(24)이 올 11월 결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측근에 따르면 "전○○은 자신의 소속사인 ○○○○ ○○의 사장 정○○(37)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정 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 씨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일정을 다시 잡아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혼은 전○○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결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은 신랑 후보자인 정○○ 씨에게 중학교 재학 시절 발탁되어 연예계에 입문했으며 오늘날 톱스타로 성장했다. 특히 전○○의 결혼은 톱스타의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화제지만 배우자가 소속사 사장이란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7년 패션지 '에폴'의 모델로 데뷔한 전○○은 프린터 CF에서 테크노 댄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 또 지난 1999년 '화이트 발렌타인'으로 영화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전○○은 이후 '시월애' (2000년), '엽기적인 그녀' (2001년), '4인용 식탁' (2003년),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2004년)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연예계는 김정수 - 신은경 커플에 이어 또 한 쌍의 톱스타와 매니지먼트사 사장의 결혼이 성사될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is.com)에 게재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 등에 전송하여 게재되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의 기사임에도 피고들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 왕○○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보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왕○○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상에는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원고 왕○○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이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인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도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되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의 광고모델로서의 활동 등 연예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어 원고 왕○○ 및 원고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 왕○○의 결혼 여부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 대중의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것임은 물론 원고 왕○○의 결혼에 관련된 사실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었던 것이고, 피고 민○○이 그에 관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연예인 매니저 등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부터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또 2004년 8월 말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왕○○의 결혼 상대방으로 보도된 정○○과 친분관계에 있던 ○○기획 주식회사 대표인 김○○로부터 “전○○이 소속사인 당시 ○○○○ ○○의 사장 정○○과 결혼하기로 했으나 정○○의 개인사정 때문에 연기되었고, 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일정을 다시 잡아 결혼한다는 것” 등의 얘기를 들은 후에 기사화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 왕○○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그러한 법적 이익을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라 한다)이다.

한편, 언론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필요가 있는 등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상의 또 다른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이익형량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프라이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란 언론 기관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위 대법원 96다11327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언론 보도라도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론 기관이 그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이 '2004년 11월경에 소속사 사장과 결혼' 할 것이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에서 '원고 왕○○의 측근'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 왕○○이 '2004년 11월경 결혼 예정이었는데, 상대방인 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한편 그와 같은 결혼 일정은 원고 왕○○ 측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원고 왕○○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왕○○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왕○○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없는지는 뒤에서 판단한다).

(3) 한편, 원고 왕○○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최해운에 대하여, 피고 최해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피고 최해운도 다른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최해운이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피고 최해운에게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와 관련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 최해운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이외에 더 나아가 그에게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와 관련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왕○○의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의 여부

(1)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이므로, 어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려면 그 보도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의 결혼 상대방이 그녀의 소속 매니지먼트사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정○○이 원고 왕○○을 발탁하여 이른바 ‘스타’로 키웠고, 원고 왕○○의 결혼은 ‘톱스타’인 그녀의 결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과의 결혼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적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왕○○이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결혼 상대방인 정○○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외에는 원고 회사에 관하여는 별다른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고 있고, 그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것은 원고 왕○○의 결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미혼의 유명 여자연예인이 결혼을 함에 따라 ‘인기’가 종전에 비해 떨어진다거나,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일부 독자들이 그 연령대나 연예분야에의 관심 정도, 원고 왕○○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정도 등에 따라,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원고 왕○○이 그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과 결혼한다는 사실과 그 내막 등에 대한 막연한 추측 등으로 강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으나, 비록 미혼의 여자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여부에 관련된 사실적시’만으로 그 대상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 직접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의 직접 당사자인 원고 왕○○의 소속사이자 정○○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 회사, 피고 민○○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

원고 왕○○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왕○○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미혼의 유명 여자연예인인 원고 왕○○의 결혼 예정 사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사 내용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가) 우선,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을제4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원고 왕○○이 2004년 11월경 또는 그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과 결혼할 예정이었거나 예정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을제4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왕○○의 결혼 예정 여부에 관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도로 신빙성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신속한 보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원고 왕○○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등을 한 다음에야 보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민○○은 특별히 원고 왕○○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을 들었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른 매니저먼트사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제7호증(검사 작성의 피고 민○○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이 퍼져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도 언론 기관인 이상 막연히 이를 기사로서 보도해버리면 단순히 연예계 내부 등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입

장에서는 '소문'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인터넷 언론의 광역성, 유포의 신속성 및 편의성 등의 특성상 한번 잘못된 보도를 하면 그 오보를 돌이키기는 어려운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민○○은 원고 왕○○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기사에 직접 작성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민○○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 왕○○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됨에 따라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 피고 민○○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 왕○○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특별히 제약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왕○○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히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미혼의 유명 여성연예인인 원고 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사생활에 관하여는 일반인들에 비하여는 더 넓은 범위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점 등이 사건 기사 내용, 원고 왕○○과 피고 회사의 지위, 이 사건 기사에서의 표현방법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 왕○○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의 광고모델 등으로서의 활동 등에 지장을 미칠 것이 명백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 외에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왕○○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 회사, 피고 민○○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왕○○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불법행위일)인 2004. 9. 29.부터 원고 왕○○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04. 11. 17.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왕○○의 피고 회사 및 피고 민○○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왕○○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가 제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05. 7. 14.자 판결 (2004가단55233)

사실개요

창원지방법원 민사9단독(홍지영 판사)는 2005년 7월 14일 윤○○이 주식회사 경남도민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이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무고교사 사건 수사 결과 원고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가 제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상 고도의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고소 상대방인 원고를 통하여 이○○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인 경남도민일보가 2003년 11월 3일자 『진해 정비업소 노사마찰』, 6일자 『정비사 업주, 절도혐의 부인·맞고소…경찰수사』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시청 공무원과 짜고 정비공장 업주를 허위 고소했고, 이에 업주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단55233 손해배상(기)

원 고 : 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훈, 김 기 덕, 고 재 환, 박 영 식, 강 동 우

피 고 : 1. 오 ○ ○

마산시 양덕2동 151-25 경남도민일보사

2. 주식회사 경남도민일보사

마산시 양덕2동 151-25

대표이사 차 판 암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석 보, 염 영 선

변론종결 : 2005. 6. 9.

판결선고 : 2005. 7. 14.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7.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5%, 2005. 7.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의, 20%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의 1, 2, 강제4호증, 강제5호증의

1 내지 6, 강제7 내지 1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9, 을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2. 12.경부터 2003. 12.경까지 사이에 소외 이○○이 운영하는 진해시 소재 ‘○○정비공업사’에서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오○○은 피고 주식회사 경남도민일보(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기자이며, 피고회사는 ‘경남도민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나. 경남도민일보 2003. 11. 3.자 신문기사의 보도경위 및 내용

(1) 원고를 비롯한 ‘○○정비공업사’의 직원 8명은 2003. 8. 20.경부터 2003. 9. 초순경 사이에 경상남도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다음 사장 이○○에게 신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03. 9.경부터 임금 체불, 조합원 해고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작업을 거부하거나 공업사 안에서 집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이○○도 위 공업사를 폐쇄하는 등으로 하여 노사양측이 실질적인 쟁의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2003. 11. 1.경 민주노총 경남일반노동조합 조합원 등과 함께 이○○의 주소지 인근인 진해시 경화동 구 정수장 공터에서 집회를 가진 뒤 이○○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고객차량의 엔진을 뜯어 팔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인근 아파트 우편함 등에 배포하였다.

(3) 피고 오○○은 위 집회를 취재한 후 제목을 「진해 정비업소 노사마찰」로, 부제목을 「“비리” 주장에 “허위” 맞서...법정공방 불가피」로 각 하여 작성한 다음 같은 신문기사를 2003. 11. 3.자 경남도민일보 제19면에 게재·보도하였다(이하 ‘제1보도’라 한다).

『진해 ○○정비공업 노조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경남 일반노조 간부, 창원시 환경미화원 등 30여 명이 1일 오후 2시 30분께 ○○정비공업사 대표의 주소지 인근인 진해시 경화동 구 정수장 공터에서 농성집회를 가졌다.

일반노조내 정비업체 노조로는 도내 처음 열리는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고객 엔진절도, 월급 떼어먹은 진해 ○○정비 사장을 규탄한다’는 구호가 적힌 대형현수막 앞에서 약 1시간 가량의 농성을 벌인 후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사용자인 이 사장의 아파트 일대 우편함과 자동차 앞에 부착하고 길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날 ○○정비공업노조 윤○○씨는 “정비공장 상무로 근무하다가 노조에 가입해 현장에 일하는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목숨이 살아있는 그 날까지 싸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농성집회에 등장한 현수막과 유인물의 내용이 상당부분 이 회사 상무이자 노조원인 윤씨 등에 의해 조작된 허위사실이란 주장이 사용자측에서 제기돼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공업 이○○ 사장은 “회사 상무로 있던 윤씨가 공석중인 공장장에 기용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노조에 가입해 직원들에게 태업과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며 영세사업장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씨 등이 사용자에게 대해 수표도난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우고 고객을 상대로 온갖 허위고소를 교사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과 함께 공장을 노조에 넘기라는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 경남도민일보 2003. 11. 6.자 신문기사의 보도경위 및 내용

(1) 진해시청 공무원이던 소외 김○○은 위 정비공업사의 노사분쟁이 한창이던 2003. 10. 23.경 ‘수리를 맡긴 차량의 엔진을 이○○이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장착하였다’는 요지로 이○○을 고소하였다.

(2) 위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이○○은 2003. 10. 31.경 김○○이 자신을 무고하였고, 원고가 김○○으로 하여금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김○○을 각 고소하였다.

(3) 피고 오○○은, 이○○의 위 고소 이후 이○○을 만나 그로부터 자동차양도증서, 원고의 꺾에 빠져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김○○의 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인한 다음 제목을 「정비사 업주, 절도혐의 부인·맞고소…경찰수사」로, 부제목을 「“공무원·노조원 짜고 고소”」로 각 하여 작성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2003. 11. 6.자 경남도민일보 제19면에 게재·보도하였다(이하 ‘제2보도’라 한다).

『속보 = 시청 공무원이 쟁의중인 정비공업사 노조원과 짜고 정비공장 업주가 자신의 차 엔진을 몰래 절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김모(39. ○○직 ○급)씨가 지난 달 23일 진해 ○정비공업사 업무 이모(42. 경화동)씨가 자신의 차량 엔진을 몰래 절취한 뒤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장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이씨는 “공무원이 노조원의 교사를 받아 이미 나에게 양도한 차량을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아갔다”며 무고혐의로 맞고소 했다.

문제의 차량은 김씨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이씨의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것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 차량을 인수하는 대신 김씨에게 신차를 보상해 주는 한편 인수한 사

고차량을 정비공장에 되팔았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차주 김씨로부터 차량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받아 놓고 시세가 맞으면 팔려고 했다.

이씨는 그 근거로 김씨의 인감증명서 등 차량양도 관련서류와 함께 김씨가 이씨를 찾아와 진술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 문건에는 “정비공업사 노조원 윤모씨가 ‘이씨를 고소하면 차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핏에 빠져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돼 있어 이씨가 기록물을 5일 경찰에 제시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으로 신차를 받긴 했지만 가해자가 할부수수료 부담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차량의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었다”며 “차량양도증 등 서류는 정비공장에 차를 팔아 달라고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라. 이 사건 각 보도와 관련된 고소사건의 경과

(1) 제1보도의 수표도난 사건

원고는 2003. 9. 9.경 위 공업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명함통과 명함통 밑에 있던 수표 1장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이 명함통을 임의로 치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수표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일이 있는데, 이 일과 관련하여 이○○은 2003. 10. 29.경 원고가 자신을 수표 절도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로 원고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5494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수사 결과 원고는 2004. 5. 8.경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제1, 2보도의 차량엔진절도, 무고 및 무고교사사건

김○○이 이○○을 상대로 고소한 절도사건, 이○○이 김○○과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무고 및 무고교사 사건은 2003. 12.경 원고가 다시 이○○을 상대로 고소한 무고사건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2004형제3125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수사 결과 원래 김○○의 차량은 2003. 1.경 김○○이 당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김○○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면서 위 사고차량을 인수하여 이○○에게 매도한 것인데,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이 위 차량엔진을 다른 차량에 장착하였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은 김○○이 차량등록명의 이전문제를 빨리 해결할 생각으로 이○○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한편, 이○○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김○○의 진술서, 녹취록에 대하여는 김○○이 이○○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하거나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자신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결국 김○○은 무고죄로 구약식 처분

을, 원고 및 이○○은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제1보도의 명예훼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보도가 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시켜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고소를 교사하는 등의 파렴치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허위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등).

(2) 돌이켜 이 사건 제1보도를 살펴건대, 위 제1보도는 1, 2단에서 ○○정비공업 근로자들의 집회사실을 전달하고, 3단에서는 노조 측인 원고의 주장 내지 발언내용을 인용한 다음 4단에서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반론을 적시하는 한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5단에서는 사측인 이○○의 발언내용을 인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의 주장과 발언내용 뿐만 아니라, 원고나 노조 측의 주장과 발언내용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정비공업사 노사 양자 간에 참여한 입장 차이가 있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취지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교사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기사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제1보도에 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제2보도의 명예훼손 여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도는 부제목부터 의혹 제기 정도가 아닌, ‘공무원·노조원 짜고 고소’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의 무고를 교사했다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물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기사를 접한 일반인에게 노조원인 원고가 김○○으로 하여금 사장인 이○○이 고객의 차량엔진을 몰래 절취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도록 하였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위 사실이 적시된 제2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보도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확립 및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둘이켜 이 사건 제2보도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이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위 무고교사 사건의 수사 결과 원고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오○○이 이○○을 만나 그로부터 김○○이 작성한 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인 이○○이 제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이○○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위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보도는 그 내용상 고도의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고소 상대방인 원고를 통하여 이○○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오○○이 제2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위 제2보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보도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이 사건 제2보도가 게재된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제2보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보도 다음날인 2003. 1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5. 7.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홍지영

□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0.자 판결 (2004가합62875)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2005년 7월 20일 국정원 정책특별보좌관 이○○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인 동아일보가 2004년 3월 4일 주간동아 『‘돌아온 이○○’ 커가는 뒷말』 제하의 기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을 떠났던 원고가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원고의 과거의 국가정보원 포항출장소장으로서의 행적, 임명에 대한 국가정보원 내부자들의 반응 등은 원고 및 국가 중요기관 중의 하나인 국가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도덕성 및 청렴성, 투명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원고의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인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국가정보원 포항소장으로 근무한 당시 포스코의 구조조정에 개입하였다거나 관련 업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났다’,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정치권 줄대기를 하여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보도된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보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런 구체적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국가정보원장 특별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데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내부자들에 의하여 선거 때마다 정치권 줄대기를 하는 행태를 어떻게 막겠느냐’는 취지의 문제 제기 부분은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공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62875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종 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 경 희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6 층

대표이사 김 학 준

2. 김 ○ ○

3. 윤 ○ ○

피고 2, 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동아일보빌딩 6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변론종결 : 2005. 7. 6.

판결선고 : 2005. 7. 20.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4.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주간동아의 정치면 광고란을 제외한 기사 게재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4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3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2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가정보원(구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국가정보원'이라 한다)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자로 직권면직 되었다가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449호로 위 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4. 2. 17.자로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라고 한다)는 '주간동아'라는 책자를 출판 및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피고 김○○은 '주간동아'의 편집인이며, 피

고 윤○○는 ‘주간동아’의 기자로서 별지 1 신문기사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배경

중앙일보에는 2004. 2. 20.자로 원고와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이○○씨 노무현 대통령과 20년 인연』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동향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되어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별지 2 신문기사 기재 기사가 보도되었다.

피고 윤○○는 위 중앙일보 기사를 접한 후 원고의 발언이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한 누설로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인을 ‘사찰’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고에 대한 기사 소재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및 그 내용

피고 동아일보는 2004. 3. 4. ‘주간동아’ 제424호 제28면에 『‘돌아온 이○○’ 커가는 뒷말』이라는 큰 제목, 「국정원장 정책특보 파격발탁…盧 와 인연, 포항소장 시절 등 과거 행적 논란」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국가정보원 내부관계자 성명불상자 및 포스코 김○○ 전 회장의 측근인 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진술을 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배경과 그에 대한 국가정보원 관련 인사들의 반응 및 원고의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재직 당시의 행적, 구체적으로는, ① 원고가 정치인 김영삼의 동향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었는데, 그 후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어 소위 ‘물줄기’로 소문난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던 점, ② 국가정보원 포항출장소장을 역임할 당시 포스코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위 포항출장소장 재직 당시 주변의 업자들과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어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직권 면직 되었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인터넷상 동아닷컴사이트(www.donga.com) 2004. 8. 5. 현재까지도 “지난호 보기”에 게재되어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재직 당시 그를 사찰하게 됨을 기회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위 ‘정치권 줄대기’를 하

였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을 떠났던 사람이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이하 '제1기사' 라고 한다).

나. 원고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 4.경 부산시지부에서 경기지부 의정부출장소장으로, 1994. 3.경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으로 발령받는 등 수평이동에 그쳤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김영삼 전(前) 대통령에게도 '정치권 줄대기' 를 하여 소위 '물종기' 로 소문난 포항출장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이하 '제2기사' 라고 한다).

다. 또한 원고는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포스코의 구조조정의 업무 즉, 포철로재 주식회사(현재 상호명 : 주식회사 포스텍, 이하 '포철로재' 라고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고, 원고의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의 재임기간 동안 포철로재의 매각건이 실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재임 당시 포철로재 매각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 김○○ 회장에게 압력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이하 '제3기사' 라고 한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는 포항출장소장 재직 당시 골프를 칠 줄도 몰랐고, 따라서 관련 업자들과 골프를 자주 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가 업자들과 자주 어울려 골프를 친다' 는 내용의 투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어 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였다(이하 '제4기사' 라고 한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및 별지 3 정정보도문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원고가 정치권을 기웃거리다가 정치인들에게 소위 '줄대기' 를 하여 요직인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및 국가정보원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고, 과거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월권을 행사하여 포철로재 매각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포스코의 김○○ 회장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업자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김영삼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나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직권면직 되었던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서 임명된 것에 문제가 있으며, 취재 기자가 이러한 원고의 과거 구체적 비리내용을 원고의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재임 당시 주식회사 포스코 김○○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과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제보받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원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과거 의혹에 관한 단순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인에게 원고가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각종 비리를 야기하여 한직으로 밀려날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주간동아’의 발행 회사로서, 피고 김○○은 이 사건 기사의 편집인으로서, 피고 윤○○은 이 사건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로서, 각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위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일반적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발표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므로, 그 구체적 판단은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적 존재에 대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공공성에 대한 검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국가정보원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원고의 과거의 국가정보원 포항출장소장으로서의 행적, 임명에 대한 국가정보원 내부자들의 반응 등은 원고 및 국가 중요기관 중의 하나인 국가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도덕성 및 청렴성, 투명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원고의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인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진실성 여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가) 진실성 여부

그러나 '원고가 국가정보원 포항소장으로 근무한 당시 포스코의 구조조정에 개입하였다거나(제3기사) 관련 업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났다(제4기사)',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정치권 줄대기를 하여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제1, 2기사)'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 내지 4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은 공직자의 임명과정에서도 그 공직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관련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관련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바,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까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

답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원고가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보도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도덕성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보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경우 더 나아가서 원고의 구체적인 비리내용을 ‘국가정보원 내부관계자, 포스코 김○○ 전 회장의 측근인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로부터 제보받았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관하여 제기된 의혹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최소한 ①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할 당시 피고 윤○○에게 제보를 한 ‘국가정보원 내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② ‘국가정보원 내부관계자 및 김□□, 김△△’로부터 제보받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그러한 제보를 하였는지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들은 달리 이 사건 보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보도를 게재할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다만, ‘원고가 국가정보원장 특별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데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내부자들에 의하여 선거 때마다 정치권 줄대기를 하는 행태를 어떻게 막겠느냐’는 취지의 문제제기 부분, 즉 제1기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서 정치인 사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당시 정치인인 노무현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게 되어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정치권 줄대기’라고 평가한 것은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와의 인터뷰를 기초하여 중앙일보는 2004. 2. 20.자로 별지 2 신문기사 기재 기사와 같이 원고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찰하게 된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친분에 기초하여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점, 위 인터뷰 당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임무가 정치인 사찰업무를 포함한다고 원고 스스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점, 국가정보원 업무의 중요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헌법 제7조 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일정한 정치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84조

와 같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의 임명에 대하여 제1기사와 같이 국가정보원 내부자들의 우려 섞인 반응을 보도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제1기사는 공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영역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중앙일보 소속 기자와 인터뷰에 응하여 대구지부 포항출장소장 재직 당시 정치인 노무현과의 친분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제1기사의 게재를 자초하였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원고로서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결국 피고들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1기사를 작성·게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기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의 제2, 3, 4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보도의 취재 경위, 원고의 부도덕성에 관한 구체적인 비리내용을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 김□□, 김△△’로부터 제보받았다고 인용보도의 형식을 취한 점 등 이 사건 보도의 형식과 그 내용, 국가정보원 정책특별보좌관의 지위와 그 임무의 중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1) 원고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동아일보에 대하여 별지 3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동아일보에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별지 3 정정보도문 기재 보도문은 그 제목을 “정정보도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말미에 “본지는 동 보도로 인하여 이특보는 물론 이특보가 소속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죄광고문의 게재를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인바, 헌법 제19조가 불가침의 기본적 자유로서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는 가해자에 대한 사죄광고 명령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죄광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금전으로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중간 부분에 『이특보 “명예회복 시기 음해하려는 얘기”』라는 소제목을 달고 기사 말미 부분에 상당 부분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도 게재한 점, 즉 『이에 대해 이특보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포항시절 포스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골프는 작년에야 배웠다. 한마디로 나를 음해하는 얘기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노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인연을 갖게 됐을 뿐이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에 들어와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곤욕을 치러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데에는 원고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하여 중앙일보 2004. 2. 20.자로 게재된 별지 2 신문기사 기재 기사가 그 한 원인이 된 점,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신분에서 있던 원고가 정치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정책특보라는 지위에 임명된 것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이미 이 사건이 독자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고 보이는 점, 손해배상의 액수, 현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의 게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불법행위일인 2004. 3. 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준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7. 20.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별지 1,2〉 기사 생략

〈별지 3〉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2가합5296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혜섭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12일 전 국군의무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 신기남과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오연호, 김대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 신기남은 500만원, 피고 오연호는 1,000만원, 피고 김대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신기남의 발언 내용, 오마이뉴스의 보도 내용, 김대업의 제보 내용은 모두 국군의무사령관으로서 고위공직자로 볼 수 있는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 김대업이 피고 신기남,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내용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나아가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여겨지므로, 제보 내용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신기남의 발언 역시 다른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회성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은폐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고, 국군 춘천병원에 신검부표를 파괴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 오연호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피고 오연호 등의 한나라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피고 신기남의 대정부 질의내용, 피고 김대업을 상대로 한 확인 취재 및 그밖에 다른 여러 관련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보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사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 요지를 객관적으로 인용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보도형태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보도는 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보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기한 의혹이 모두 진실함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원고가 한나라당 인사들의 병역비리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한 그 상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김대업의 제보를 받아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이회창의 아들들이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와 이를 국회 대정부 질문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신기남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합52966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 호 일, 이 유 경

피 고 : 1. 오 연 호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복합동 505호

2. 신 기 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41호

3. 김 대 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 지 은, 신 동 선

변론종결 : 2005. 7. 8.

판결선고 : 2005. 8. 12.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기남은 금5,000,000원,

나. 피고 오연호는 금10,000,000원,

다. 피고 김대업은 금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0. 5.부터 2005. 8.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1년경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국군 강릉, 원주, 마산 병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1995. 12.경부터는 국군의무사령관으로 복무하다가 1997. 11.경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사람이다.

(2) 피고 신기남은 1997년경 당시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피고 오연호는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오마이뉴스'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오마이뉴스가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 및 오프라인 주간신문 '오마이뉴스 2002'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김대업은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 등에게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이회창의 아들들이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보한 사람이다.

나. 1997년도 제15회 대통령 선거 당시의 상황

(1) 신한국당(1997. 11. 24. 한나라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한나라당이라 한다)이 1997. 12. 18.로 예정된 제15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97. 7.경 이회창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무렵부터 이회창 후보의 장남 이정연과 차남 이수연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입영시 정밀신체검사에서 체중미달로 5급 면제판정을 받고 귀향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비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이정연, 이수연의 귀향자처리관계문서(병적기록표·진단서·병역증·귀향자명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1997. 7. 21. 이정연, 이수연의 귀향자처

리 관계문서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3년 동안 보존된 후 파기되었다는 요지의 서면답변을 하였다가, 이를 반복하고 1997. 7. 31. 국회에 병적기록표 원본을 공개하였다.

(2)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장관이 공개한 병적기록표가 사후에 위·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낙선하였다.

다. 피고 김대업의 제보

(1) 피고 김대업은 국군 대구병원 소속 중사로 재직하던 1985년경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20명의 방위병을 불법 전역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1. 3. 30.경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01. 4. 6.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있던 중 2001. 8.경부터 2002. 2.경까지 군검 합동으로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정하여 병무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병무비리사범 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는데, 2002. 1. 4.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온 전 병무청장 김○○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검찰청 수사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김○○에게 자백을 회유하면서 정치인 아들들 병역비리 여부에 관하여도 질문하였다.

(2) 피고 김대업은 2002. 5.경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들인 김□□ 등에게 ① ‘김○○로부터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이정연, 이수연 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병무청에 남아 있던 이정연, 이수연의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되었고, 국군 춘천병원에 남아 있던 병역판정부표가 파기되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인 원고가 인사처장 김모 대령을 통해 예하부대인 국군춘천병원의 담당자로 하여금 1991. 2.경 입대하였다가 신체검사 결과 귀향조치된 이정연에 관한 병역판정부표(정밀검사의뢰결과서 또는 신검부표)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제보를 하였다.

라.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제1차 보도

(1) 오마이뉴스는 위와 같이 피고 김대업으로부터 받은 제보내용 등을 토대로, 2002. 5.경부터 6.경에 걸쳐 주간신문 ‘오마이뉴스 2002’을 통해, ① 전 병무청장 김○○가 2002. 1. 4.경 서울지검 111호 검사실에 체포되어 병역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김대업에게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정연의 불법병역면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병무청 간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측근 사이에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에 따라 병역판정부표를 파기되었고, 병적기록부 원본이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부인하였다. ② 병적기록부가 국회에 공개되기 직전에 국군 춘천병원에 보관중이던 이정연의 병역

판정부표가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춘천병원의 담당자가 5년 보존연한의 병역판정부표를 미리 파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③ 김〇〇가 이정연의 병적기록부를 국회에 공개될 때까지 사적으로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공개된 병적기록부에 변조 흔적이 나타나고 병적기록표 공개시점에 병역판정부표가 폐기된 것이 이회창 후보의 측근 인사들과 병무청 고위관계자들 사이의 대책회의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정연의 병적기록부를 손에 넣은 김〇〇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조한 뒤 국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2) 다만, 오마이뉴스는 피고 김대업의 제보 내용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에 관련되어 있고, 국군 춘천병원에 병역판정부표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보도를 미루었다.

마. 피고 신기남의 원고에 관한 발언내용 및 그 경위

(1) 2002. 12.로 예정된 제16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되었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기업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국세청을 이용하여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하였다는 이른바 '세풍'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상목이 1997. 9.경 자신과 친분이 있고 고등학교 동창인 국세청 차장 이〇〇에게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모집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이〇〇는 서상목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당시 국세청장이던 임〇〇를 설득하고 조사국장이던 주〇〇에게 지시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대선자금 모금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도 평소 친분이 있던 이〇〇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〇〇의 요청으로 임〇〇의 대선자금 모금을 격려하는 한편, 일부 기업관계자에게는 직접 대선자금을 부탁하는 등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위 '세풍'과 관련된 서상목, 이〇〇, 임〇〇, 이회성 등은 그 후 위와 같은 '세풍'의혹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2) 위와 같은 세풍 의혹과 관련하여, 서상목, 이〇〇, 이회성 등이 1997. 10.경부터 롯데호텔 1510호실 및 1512호실 등을 공동사용하면서 대선자금 모금 등 대통령선거 전반에 관한 상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세풍'과 관련된 민주당측의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 롯데호텔 객실은 이회성씨가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사용한 장소가 아니라, 단지 원고와 같은 고위 공직자를 이〇〇씨의 소개를 만날 때 사용한 장소일 뿐이다'는 취지의 내부 대응문건(이하 '세풍 대응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피고 신기남은 보좌관을 통해 피고 김대업의 앞서 본 제보 내용을 전달받고, 한나라당의 세풍 대응문건을 입수한 후, 2002. 7. 24. 오전 무렵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그 질의 내용을 기재한 원고를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세풍 대응문건을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회성이 당시 국군의무사령관이었던 원고를 수차례 만나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공모하였고, 원고는 신검판정 관련 군의관에게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합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신검부표를 파기할 것과 관련자는 합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는 구 여권(한나라당) 정치인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고 군 장성인사의 실력자로 불렸으며, 병무비리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 신기남은 위와 같은 대정부질의 내용이 논란이 되자, 2002. 7. 24. 오후 민주당 당사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통해, '1997년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뜨거운 논란이 되던 시기에 이회성씨가 국군의무사령관을 만나 사실 자체가 비리은폐기도의 정황증거다', '신검부표는 1998년까지 보관되었다가 뒤늦게 파기했고, 행정처리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담당자들이 시말서를 썼으며 시말서가 남아있다는 제보도 있다'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5) 피고 신기남은 2002. 7. 26.경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문화방송(MBC) 라디오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997년 당시 병역면제 의혹이 있던 시기에 군병원 통수권자와 후보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동생이 만나서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일이 아닌가', '병역비리은폐사건은 재탕이 아니다, 과거는 면제였지만 이것은 은폐, 그것도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은폐했다는 국기문란사건이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사건입니다', '1997. 7.경 63빌딩 식당에서 이회성과 원고가 만나 이정연의 병역비리를 의논한 다음, 같은 달 롯데호텔에서 이회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군사기록에 남아있다. 춘천병원에 1998년까지 실수로 신검부표가 보존되어 있다'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제2차 보도

(1) 오마이뉴스 소속 김□□ 기자는 2002. 7. 19.경 피고 신기남으로부터 한나라당의 세풍 대응문건을 입수하고, 피고 신기남의 보좌관을 통해 피고 신기남이 국회에서 세풍 대응문건과 관련된 대정부질의를 할 예정임을 알게되자, 피고 김대업을 찾아가 원고와 관련된 당초의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친 다음, 피고 신기남의 이 사건

제1 발언을 전후하여 '오마이뉴스가 최초 보도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장남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의혹이 여야의 격렬한 성명전에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식 거론되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병무청 고위 간부들과의 은폐대책회의에 이어 이후보 친인척과 병무청 고위간부가 회합한 제2의 대책회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그 실체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에는 이 후보 친인척과 당시 국군 의무사령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 만났던 또 다른 대책회의 의혹을 보도합니다' 라는 편집자주를 단 후, <제1신> "이회창 아들 병역관정부표 파기, 국군 의무사령관이 지시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기사는 오마이뉴스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하였다.

(2) 그 후 오마이뉴스는 2002. 8. 1.자 주간신문 '오마이뉴스 2002'를 통해 "국군의무사령관이 이후보 아들 병역관정부표 파기지시"라는 제목하에 별지 제1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3) 한편, 피고 신기남의 이 사건 제1 발언 이후, 원고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회성 씨를 처음 만난 것은 1997. 10. 말경이고, 이정연의 신검부표는 보존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1996. 2.경에 파기되었다. 이회성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대선 후보 동생에 대한 호기심 차원에서 만났을 뿐, 병역비리 은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고, 이에 오마이뉴스는 2002. 8. 8.자 주간신문 '오마이뉴스 2002'를 통해 "병역비리 은폐사건 수사 착수하지 않는 건 검찰보신주의의 발로"라는 제목으로 피고 신기남이 원고의 위와 같은 해명을 반박하는 내용의 별지 제2 기재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

사.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은 2002. 8. 병무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이정연 등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준비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02. 10. 25. 수사를 종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병적기록표와 관련된 의혹의 대부분은 병역관계 법령, 신검규정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병적기록표 상의 단순 오기, 날인·사진 및 철인 누락 등의 하자는 대량·반복적인 작성과정에서 업무처리의 불철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감정결과 이정연 병적기록표 사진란에 철인이 압날된 흔적은 없으나 어떤 것이 부착되었다가 탈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정연의 사진이 보관중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됨), 작성자가 확인되었거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른 병적기록표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특히 이정연의 병적기록표가 작성된 1981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적령이 20세에서 19

세로 하향됨에 따라 1962년생과 1963년생 병역의무 대상자의 병적기록표를 한꺼번에 작성하게 되어 오기 가능성이 높았다고 함), 그 하자가 1972년부터 시행되던 특수층 병역관리제도상 병역특별관리대상자임을 은폐하고 5급 면제판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면제판정 후 일괄적으로 위·변조된 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정연 등의 한자성명을 정정하거나, 이수연 병적기록표 가족관계란 중 백부모 다음에 이회창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대법원판사라고 기재한 것이 누구인지와 그 경위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이 이정연 등 병적기록표가 포함된 귀향자처리 관계문서의 공개를 요구받고 1997. 7. 21. 국회에 위 문서들이 3년 보존후 파기되었다는 서면답변을 한 것은 답변자료 작성과정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2) 1991. 2. 입영시에 작성된 이정연의 신검부표는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1997. 7.경 이전인 1996. 11.경 국군춘천병원 이전을 계기로 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장○○ 원사에 의하여 5년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다른 신검부표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소각·파기되었다.

(3) 은폐대책회의에 대하여는 피고 김대업이 김○○로부터 전문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의혹이 증폭되고 국회에서 병적기록표 공개 문제가 거론되자 1997. 7. 내지 8.경 병무청 간부들이 병적기록표 공개여부, 국회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회 대책회의를 가졌고, 고○○ 특보가 병무청장을 방문하였으며, 김○○ 병무청장이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정연 등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여○○ 정모국장에게 당사자인 이정연 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여○○이 고○○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여 고○○, 성명불상 변호사, 황모 의원, 김○○, 여○○이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1회 만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모임에서 은폐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6, 19, 32, 42, 48,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9, 15, 16,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제1, 2, 3 발언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발언들이 비록 ‘...하였

다고 한다', '..하였다는 제보가 있다', '... 비리은폐기도의 정황증거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응 전문한 내용 또는 그에 기초한 추측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듯하나, 위 각 발언들의 배경, 위 각 발언들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위 각 발언들은 원고가 구 여권(한나라당) 정치인들과 깊은 교분이 있는 사람으로 병무비리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1997. 7.경부터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논란이 되던 시기에 이회창의 동생인 이회성씨를 만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신검판정 관련 군의관에게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함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신검부표를 파기할 것과 관련자는 함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제2차 보도 역시, 비록 전반적인 보도의 형식은 의혹의 제기이나, 이 사건 제2차 보도의 배경, 별지 제1, 2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특히 2002. 8. 1. 자 주간신문 '오마이뉴스 2002'에 게재된 별지 제1 기사에서 그 제목으로 '원고가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판정부표 파기를 지시'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일반 독자들에게 이회창 후보의 측근 인사들과 병무청 고위관계자들 사이의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은폐대책회의와는 별도로 이회창 후보의 친동생과 원고 사이에도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하급기관인 춘천 병원이 보관중인 병역판정부표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여겨지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오연호는 오마이뉴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이 사건 제2차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된 데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피고 오연호는 이 사건 제2차 보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발행인 겸 편집인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4) 한편, 피고 김대업은 피고 신기남,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 김□□ 등에게 이 사건 제1, 2, 3 발언 및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제2차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여부

가. 판단기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 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에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게 있는 것이고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나. 공공성

피고 신기남의 이 사건 제1, 2, 3 발언의 각 내용,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제2차 보도의 내용, 피고 김대업의 제보 내용은 모두 국군 의무사령관으로서 고위공직자로 볼 수 있는 원고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피고 김대업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

피고 김대업은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하여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지득한 사실들을 피고 신기남, 오마이뉴스 측에 제보한 것이므로, 그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0, 35, 36, 37,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 김대업을 고소하여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피고 김대업은 원고가 국군 춘천병원 담당자로 하여금 이정연의 신검부표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2000. 가을경 의정장교 박○○의 진술을 들었고, 2000. 12.경 국군춘천병원에 출장을 간 기회에 위 병원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국군 춘천병원에서 만난 사람은 위 병원 소속 김○○ 상사이고 달리 위 병원 관계자 가운데 피고인을 만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병적조회결과, 국군 의정장교 가운데 ‘박○○’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 위 김○○은 당시 병무관련 자료를 복사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피고 김대업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고 김대업에게 원고 또는 신검부표파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피

고 김대업의 출장에 동행한 오○○ 중사 역시 위 김○○이 원고 또는 신검부표파기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 김대업이 피고 신기남,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내용은 그 신빙성이 극히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나아가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여겨지므로,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제1, 2, 3 발언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피고 신기남은, 한나라당의 세풍대응 문건에서 드러나듯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의 아들들에 관한 병역비리 의혹이 뜨거운 논란이 되던 시기에 국군 춘천병원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회창의 동생인 이회성을 비밀리에 만난 것은 사실이고, 한편 병무비리 수사의 전문가인 김대업의 제보, 그밖에 검찰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병무관련 수사관계자, 여러 정치인 등을 통해 원고는 정치권에서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1997. 7.경 무렵부터 이회성을 만났고, 그 후 국군 춘천병원이 보관 중이던 이정연의 신검부표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는 한나라당 인사들과 접촉을 해오면서 많은 병무비리사건에 연루되었고 한나라당 모 의원 아들의 병역면제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3 발언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는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의 소개로 롯데호텔 1510호실 및 1512호실에서 이회성을 만난 시점은 1997. 10. 이후로 볼 것이라는 점(이회성, 이○○ 등이 롯데호텔 객실을 공동 사용하면서 대선자금 모금 등 대통령선거 전반에 관한 상의한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10.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위 롯데호텔 객실에서 이회성을 만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국군 춘천병원이 보관중이던 이정연의 신검부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회성을 만나기 이전인 1996. 11.경 국군 춘천병원 이전을 계기로 장○○ 원사에 의해 5년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다른 신검부표들과 함께 일괄 소각·파기되었다는 점(앞서 본 검찰수사 결과 및 갑 제5호증의 28, 29, 3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9, 15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한나라당의 세풍 대책문건은 원고가 이회성과 병역비리 은폐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1, 2, 3 발언은 주로 피고 김대업의 제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김대업이 병무특별수사반의 사실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대업의 제보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그 제보 내용이 사회·정치적으로 파급효과는 막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신기남으로서 피고 김대업이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진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침이 상당함에도, 막연히 제보자가 있다거나 검찰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병무관련 수사관계자, 여러 정치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발언은 다른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1997. 10. 말경 이회성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회성과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은폐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국군 춘천병원에 신검부표를 파기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원고에 대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 신기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오연호의 경우

피고 오연호는, 김○○가 피고 김대업에게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병무청 고위간부 사이에 대책회의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사실로 드러났고, 김○○가 여○○ 정모국장과 함께 한나라당 고○○ 특보 등과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1회 만난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제1차 보도는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오마이뉴스는 피고 신기남의 대정부질문 및 이 사건 제1 발언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병역비리 전문가인 피고 김대업을 상대로 제차 이 사건 제1 발언의 진위 여부를 취재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검찰 및 군 수사관계자, 병무관련 공무원은 물론 심지어 다른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취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보도의 내용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제1차 보도의 진실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이 사건 제1차 보도가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오연호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2가합40574호로 이 사건 제1차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피고 오연호 등의 한나라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2004나14422호로 이 사건 제1차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차 보도는 관련 판결의 확정으로 진실에 반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도 없음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마이뉴스는 피고 신기남의 대정부 질의내용, 피고 김대업을 상대로 한 확인

취재 및 그밖에 다른 여러 관련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제2차 보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언론사가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 요지를 객관적으로 인용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보도 형태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제2차 보도는 피고 신기남의 대정부 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 보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이 모두 진실함을 전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고와 이회성 사이에 또 다른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국군 춘천병원을 지휘하여 이정연의 병역판정부표를 서둘러 파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가 각종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이고, 한나라당 인사들의 병역비리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상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신기남의 이 사건 제1, 2, 3 발언들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무책임한 의혹제기라는 점, 피고 김대업의 제보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오마이뉴스가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검찰 및 군 수사관계자, 병무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이 사건에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신기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차 보도 역시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고를 공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오연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가. 피고 신기남의 책임 범위

(1)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그 표결에 관하여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헌법 제45조),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신기남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한 이 사건 제1 발언 및 그에 부수하여 그 발언 내용을 기재한 원고를 기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에서의 직무상의 발언 및 그에 부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3 발언의 경우에는 그 발언이 국회 외에서 행해진 점, 시간적으로도

대정부 질의와 근접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발언의 대상이 이 사건 제1 발언과는 달리 기자 내지는 기사를 접한 일반 독자(이 사건 제2 발언의 경우) 및 라디오 방송을 듣는 일반 청취자라는 점(이 사건 제3 발언의 경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 또는 그에 부수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신기남은 이 사건 제2, 3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만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현역 육군 장성인 원고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유력 정치인의 친동생을 비밀리에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음은 분명하고, 이러한 비난받아 마땅한 원고의 처사가 드러난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피고 신기남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3 발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의 아들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입영시 정밀신체검사에서 체중미달로 5급 면제판정을 받고 귀향처리된 것과 관련하여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한창 사회·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되던 예민한 시기에 육군 의무사령관의 직책을 가진 원고가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면, 원고 스스로 명예훼손적 언사를 자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부적절한 처사가 이 사건 제2, 3 발언의 빌미를 제공한 점, 이 사건 제2, 3 발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처사를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성이 있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의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사회적 지위 및 피고 신기남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 신기남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수는 금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오연호의 책임범위

앞서 가. (2)에서 본 원고에 관한 제반 사정 외에도, 피고 오연호의 언론인으로서의 신분과 그에 따른 책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오연호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수는 금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김대업의 책임범위

앞서 가.(2)에서 본 원고에 관한 제반 사정 외에도, 이 사건 제2, 3 발언 및 이 사건 제2차 보도에 기여한 피고 김대업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김대업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수는 금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신기남은 금5,000,000원, 피고 오연호는 금10,000,000원, 피고 김대업은 금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2. 10.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8.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별지 1, 2〉 기사 생략 - 편집자 주

□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4가합4722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이○○(본명 : 이○○) 전 ○○ 대표이사가 일요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일요신문사가 2004년 6월 6일자 『처녀 갑부 이○○ △△ 대표의 과거』, 『이○○은 누구』 제하의 기사와 2004년 6월 13일자 『이○○ “사기 결혼”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아들을 전 시대에 맡겨 둔 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경영관,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등이 이미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라 할 것이고,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가 된 경위, 언론매체들과 행한 원고의 인터뷰 내용, 그로 인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언론매체,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부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각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한 것은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보도 등의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4722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일명: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이 도 형, 박 진 식 , 김 재 용

피 고 : 1. 장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갈 복 성

2.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대표이사 신 상 철

3. 이 ○ ○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4. 감 ○ ○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피고 2, 3,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 영 주

변론종결 : 2005. 7. 8.

판결선고 : 2005. 8. 12.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1984년 ○○대학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을 전공하고 1994년 미국 ○○대에서 ○○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까지 10여 년 동안 발레리나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로, 2000. 5.경 온라인 게임개발 업체인 ○○을 창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2. 11.경 부터는 여성 포털사이트 ○○클럽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원고가 최대주주인 ○○이 2003. 5.경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 주식이 협회중개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기 시작하자, 원고는 ○○의 최대주주로서 수백억 원대의 주식평가 차익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매체를 통해 발레리나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30대 독신의 여성 벤처기업가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처녀갑부', '벤처 신데렐라', '30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이하 '피고 일요신문사'라 한다)는 주간신문인 '일요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이○○은 피고 일요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감○○은 피고 일요신문사 사회부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 경위

(1) 원고는 2004. 초경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뉴욕시 부장검사가 되어 화제가 된 정○○과 결혼할 계획을 전격 발표하여 또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2004. 3. 22. 경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위성방송인 KBS코리아의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지만, 정○○ 검사로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는 취지로 정○○과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대학교 재학 시절 임○○(1994. 1. 경 사망)을 만나 연애를 한 끝에 1986. 9.경 임○○과 혼인을 하였고, 이듬해 4.경 아들 임△△을 출산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과거 결혼 및 출산전력을 잘 알고 있던 피고 장○○은 2004. 5. 4.경 위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벤처 신데렐라 이○○ 씨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경위

(1) 피고 감○○은 이 사건 게시물을 읽어 본 후 피고 장○○을 찾아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한 경위를 취재하게 되었고, 2004. 5. 27.경 피고 장○○의 소개로 임○○의 부친인 임□□을 만나 원고가 임○○과 혼인한 사실, 임○○과의 사이에 임△△이 태어났다는 사실 및 임△△의 현재 부양관계 등을 취재하였다.

(2) 피고 감○○은 2004. 5. 28.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 장○○ 및 임□□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장○○을 잘 알지 못하며 자세한 대답은 이 사건 게시물을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 곧 자신의 자서전이 출간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자서전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피고 감○○은 원고로부터의 연락이 오지 않자, 원고에게 수차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는 등 원고와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위로 그쳤고, 2004. 5. 31. 당일 발간된 원고의 자서전 '나는 이기는 게임만 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결혼한 사실이나 아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자, "처녀감부 이○○ △△대표의 과거"라는 제목의 별지 제1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및 "이○○은 누구"라는 제목의

별지 제2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4) 피고 일요신문사의 편집국장인 피고 이○○은 편집회의를 주재하여 이 사건 제1, 2 기사를 각 보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일요신문사는 2004. 6. 6.자 일요신문을 통해 이 사건 제1, 2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5) 이 사건 제1, 2 기사가 보도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에 피고 감○○은 원고의 반박 내용과 임□□의 재반박 내용을 담은 별지 제3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3 기사는 2004. 6. 13.자 일요신문 제12면에 보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가 1호증의 1,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처녀갑부' 등으로 유명해진 원고가 사실은 이미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전 남편인 임○○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아들을 전 시택에 맡겨 둔 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 3기사는 위와 같은 주된 내용 외에도, 전 남편인 망 임○○과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망 임○○과의 미국에서의 결혼생활, 망 임○○과 이혼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혼 후의 경과 등과 관련하여서도 임□□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예컨대 원고는 망 임○○의 기망으로 결혼을 한 후, 미국에서 합의이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원고와 망 임○○이 뜨겁게 연애를 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하고, 이 사건 제3기사는 협의이혼 사실은 간과한 채 원고가 망 임○○과 사별한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혼인과 이혼 경위에 관하여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에 부수한 정황적 사실에 불과하고 그것과 독립된 사실의 적시로서 별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와 같은 주된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1) 공공성

사업가의 경우 비록 자신의 업계에서 빼어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사업가의 결혼, 자식 양육 등과 같은 사생활은 일반적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사업가 중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일부의 경우에는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어느 사업가의 사업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사생활이 다른 어느 사업가들과는 구별되는 남다른 점이 있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거나, 사업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업 활동, 사생활 등을 언론을 통해 선전·공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로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의 사업 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이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수백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기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발레리나 출신으로 30대의 독신 여성이라는 자신의 특이한 경력이 특히 주목을 받아 언론매체를 통해 '처녀갑부', '벤처 신데렐라', '30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널리 알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벤처사업가로 성공한 후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수많은 언론매체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배경에 관한 내용, ○○대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사실, 예술가로 활동한 내용, ○○학 대학교수로의 안정된 길을 버리고 벤처기업 ○○을 창업하게 된 경위 및 그밖에 자신의 의, 식, 주와 취미생활 등 사생활 영역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사실, 더욱이 결혼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에 미쳐 일과 결혼했다', '능력이 없어 혼자 산다' 등으로 대답하여 자신을 미혼으로 묘사한 사실, 2004. 초경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상형이 정○○ 검사라고 밝히고, 그 후 정○○ 검사와 결혼 계획까지 발표하여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실, 2004. 5. 31.에는 자신의 인생관, 경영관, 결혼관, 연애관, 가족관 등을 자세히 저술한 자서전을 출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여성기업인에 대한 많은 장벽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재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적인 환경에서 원고가 일구어 낸 기업가로서의 성공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원고가 널리 알려졌다면 원고를 사회 저명인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서전까지 출간하고, 그 이전에 언론매체와의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의 상당 부분을 노출시켰다는 점, 언론매체의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단순히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여성기업인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배경, 학력, 발레리나로서의 특이한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남다른 자신의 경영철학 및 기업가로서의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된 것으로 설명한 점, 더욱이 원고는 30대의 독신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 기자들의 결혼에 관한 질문에 우회적으로나마 자신이 결혼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대외적 사업 활동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생활 중 상당부분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저명인사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고, 또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인생관, 가족관, 사업관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은 일반 독자들서는 원고가 과거 결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들의 공공성은 인정된다.

(2)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발간한 자서전 서문에 임△△의 존재를 명시하는 등 과거 결혼 전력이나 아들의 존재를 감춘 사실이 없고, 한편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에게 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더구나 임□□은 임△△으로 하여금 고모를 엄마로 부르게 하고, 임△△이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던 2000.경 가출하여 임□□의 집으로 갔을 때에도 임△△을 돌려보내지 아니한 채 원고 몰래 임△△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와 임△△의 접촉을 막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원고는 아들을 양육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일 뿐, 아들의 양육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처녀갑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소개되었고, 또한 원고 자신도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가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과거의 결혼 전력이나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음이 분명하고, 임□□이 원고가 미국유학 후 귀국한 무렵 임△△을 원고에게 곧바로 보내지 아니한 것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수입이 없는 원고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임△△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1999.경 원고에게 임△△을 보내었고, 임△△이 원고의 집에서 나와 임□□의 집으로 왔을 때에도 임□□은 원고에게 임△△을 데려갈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임△△을 데려가지 않았으며, 이에 임□□은 임△△의 장

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전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① 원고는 1986. 9.경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 당시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준비 중이던 임○○과 혼인하였고, 이듬해 4.경 아들인 임△△을 출산하였다.

② 임○○은 1990.경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사회 신문사에 취직을 하였고, 원고도 곧이어 임△△을 시부모인 임□□ 등에게 맡긴 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미국에서의 임○○과 원고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임○○은 1992. 7.경 미국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③ 임○○은 1993. 말경 위암말기 진단을 받고 귀국하여 이듬해 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2.경 미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1995.경 귀국하였다.

④ 원고의 전 시부모인 임□□ 등은 원고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임△△을 양육하다가, 1999. 1.경 임△△을 서울 잠원동 소재 원고의 집으로 보내었는데, 임△△은 2000.경 원고로부터 성인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가출하여 다시 원고의 전 시댁인 임□□의 서울 구로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⑤ 임□□은 원고에게 임△△을 다시 데려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을 다시 데려 오지 않았고, 이에 임□□은 임△△이 서울 구로동에서 서울 잠원동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임△△을 구로동 근처의 중학교로 전학시켰다.

⑥ 임□□은 2003. 3.경 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 무렵 원고가 성공한 미혼의 여성 벤처사업가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자, 임△△의 양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2003. 8.경 원고의 남동생인 이△△을 만나 논의한 끝에 임△△을 마산에 살고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임□□은 원고가 직접 임□□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갈 것을 요구하였다.

⑦ 원고는 임□□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임□□의 집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임□□은 2003. 10. 4.경 재차 원고에게 직접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 갈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같은 해 11. 3.경 임△△의 외할아버지에게 원고가 직접 임□□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도 원고 또는 임△△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⑧ 임□□은 원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2004. 초경 원고가 정○○과

곧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2004. 3. 22.경에는 원고가 한국방송공사 위성 방송인 KBS코리아의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임△△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4. 4. 10.경 원고에게 그동안 임△△을 양육한 데에 따른 양육비, 왜곡 보도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었다.

⑨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가 게재되고 보도된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편 피고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중 임△△은 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임□□ 등이 자신이 원고에게 가는 것을 막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가 1호증의 1, 을 나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나 제6호증, 을 나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아들을 출산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아들을 전 시대에 방치한 채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과거의 결혼 전력 및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다는 취지의 표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처녀 갑부’ 등으로 소개되어 왔고, 더구나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에 미쳐 일과 결혼했다’, ‘능력이 없어 혼자 산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미혼임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정○○과의 재혼을 앞두고 방송에 출연하여서는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은 그동안 미혼이었고, 따라서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가족도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오래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혼인하여 아이를 낳은 과거를 언론매체를 통해 세세히 밝힐 의무는 없고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를 접한 일반 독자나 청취자들로서는 원고를 처녀 또는 미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에게 고등학생인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나 청취자들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가 과거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아들을 출산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감추어 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고, 다만 원고의 태도를 두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일부

표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이러한 의견 내지 평가는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는 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과거의 결혼 전력 및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아들을 사실상 방치하여 양육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1년 동안만 임△△을 양육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기간은 물론 지금도 원고의 전 시부모인 임□□이 임△△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을 전 시대에 맡긴 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것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한편 임□□이 2003. 8.경부터 원고 측에 수차 임△△을 데려갈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아니한 채 임△△을 데려가지 아니한 점, 임△△이 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을 나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임□□ 등이 원고와 임△△의 접촉을 막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들을 사실상 방치하였다거나 양육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표현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보도내용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부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결혼과 이혼의 전력, 결혼 생활, 그리고 출산과 자식의 양육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 의문이 없고, 한편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이 사건 각 기사들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 의문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은 이미 다른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원고 스스로

공개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3기사는 이 사건 제1, 2기사에 대한 원고의 반박 또는 해명 내용을 임□□의 재반박 내용과 함께 보도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 기사와 비교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 기사만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어떤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 상 수인할 만한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살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전 남편의 거짓말과 무능력으로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주로 전 시댁의 보호 아래 자랐으며, 원고가 아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은 아들이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이후의 불과 1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전 시댁 부모님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회피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나 함께 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아들과 속 깊은 정을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모성애만을 강조하여 다른 보통의 부모와 동일한 잣대로 원고의 가족관계를 함부로 파헤치고,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는 전 시댁 부모님들의 진심을 오해하여 필요 이상의 감정 대립을 일삼아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전 시댁 부모님들의 경우 역시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여 원고가 손자에게, 손자가 원고에게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워야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에 대한 불신과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로 인해 원고와 손자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이 원고와 전 시댁 부모들 사이의 대화부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는바,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 불행했던 과거사 그리고 원고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재의 왜곡된 가족관계가 일일이 외부에 밝혀지는 것은 원고로서는 결코 바라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고, 일반 독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특수한 개인사를 속속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자신의 경영관,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등이 이미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라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가 된 경위, 언론매체들과 행한 원고의 인터뷰 내용, 그로 인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언론매체,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이는바,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 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주된 내용 중 원고가 과거 결혼한 전력이 있고, 사망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으며, 아들은 현재 전 시댁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표현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도 보건대,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목적으로 원고의 과거 결혼 경력과 아들이 존재함을 전 시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밝히고,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고의 전 남편과의 혼인 경위, 미국 유학 생활 중의 혼인생활, 전 남편의 사망 경위, 귀국 후의 아들의 부양관계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달리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 기사는 피고들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된 내용을 상당한 방법으로 게재 또는 보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한 것은 원고가 수인하여

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보도 등의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별지 1, 2〉 기사생략 - 편집자 주

□

원고인 언론사에 대한 평가나 논평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피고의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4가합7289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사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양정철 청와대 국내언론담당 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도이전계획 자체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대비와 검토라는 실질적이고 정책평가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를 많이 게재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양정철이 작성하여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 태도가 종전에는 비판은 하되 행정수도 이

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도 긍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던 반면,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왜 현 정부 아래에서는 균형성을 상실하고 비판 일변도의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 양정철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사(修辭)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양정철 등이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내 ‘청와대 브리핑’에 2004년 7월 9일 『조선-동아는 저주의 굶판을 당장 집어치워라』 제하의 기사와 2004년 7월 14일 『‘당보(黨報)’ 인지 ‘신문’ 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 동아에 답한다』라는 제목, ‘동아여, 자기 기록마저 왜곡하는가’, ‘표변의 진수’, ‘확인하고 싶거든 눈을 들어 동아를 보라’ 등의 소제목의 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원고의 기사를 논평하면서 원고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내용의 실제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 ‘저주의 굶판’, ‘입장을 수시로 바뀌가며 줄타기’, ‘낯부끄러울 정도의 적극적 지지입장’, ‘표변의 진수’, ‘한나라당의 구렁에 맞춘 청기·백기 게임’ 등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한 악의적인 비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72896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피 고 : 1. 김 우 식

2. 이 병 완

3. 양 정 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 태 구

변론종결 : 2005. 7. 8.

판결선고 : 2005. 8. 12.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의 1, 2, 강제2호증의 1, 2, 강제6호증의 1, 3, 강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강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10, 을제5호증의 4, 을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김우식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수석비서관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자, 피고 이병완은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으로서 휴일을 제외하고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매일 게재되는 '청와대브리핑'의 총괄책임자, 피고 양정철은 홍보수석 휘하의 국내언론담당비서관으로서 2004. 7.경 별지 1, 2의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위 '청와대브리핑'란에 게재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된 당시는 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추진으로 각계각층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던 상황이었는데, 특히 원고는 기사나 사설

등을 통하여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대하여 비용의 과다, 외국의 사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 양정철은 2004. 7. 9. '청와대브리핑' 기사의 하나로 『조선·동아는 저주의 굵관을 당장 집어치워라』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과거에 동아일보를 통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보도한 내용을 분석한 다음, '균형성 포기...비관일변도...1977년 이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적극 지지, 반대, 암묵적 동의, 적극 반대 입장을 수시로 바꿔가며 줄타기를 해 온 것...행정수도 건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 역대 정권이 늘상 거론하던 해묵은 과제였다...김영삼·이회창 후보에겐 들이대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만의 검증이 뒤늦게 시작됐다... 똑같은 대선공약인데 누가 하면 찬성하거나 침묵하고 누가 하면 반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별지1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라. 피고 양정철의 별지1의 기사가 게재된 이후 원고는 2004. 7. 10.자 동아일보 A4면에 「청와대 '동아—조선은 저주의 굵관 걸어치워라' 수도이전반대 확산—輿지지울 하락, '언론과 전쟁'으로 국면전환 노리나」라는 소제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어왔고 이에 의도적으로 원고를 표적삼아 별지1의 기사를 피고들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그 바로 옆에 「청와대 주장과 본보 '수도이전' 보도내용 비교」라는 소제목으로 원고의 1977년도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태도와 2004년도의 보도태도에 관하여 스스로 비교·분석하면서 피고들의 별지1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나아가 2004. 7. 12.자 동아일보 A2면 사설란에 「노 정권, 이성 되찾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피고들의 별지1 기사를 '특정신문 때리기'로 규정하면서 '노 정권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집단에 더는 대립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체제는 불구화(不具化)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라는 취지의 비평 기사를, A6면 「기자의 눈」란에 「'청와대 브리핑'의 선동적 독설」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사를 '정부기관 매체의 선동적인 독설', '논리의 비약, 반지성적인 태도' 라고 지적하는 등의 반박 기사를 게재하였고, 다시 2004. 7. 13.자 동아일보 A5면에 「청 '저주의 굵관' 주장 사실왜곡, 본보 1977년 보도내용 — 박정희 '백지계획' 때도 수도이전 조목조목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별지1 기사 내용에 대한 각 항목별 반박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이에 피고 양정철은 다시 2004. 7. 14.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브리핑'란에 『'당보(黨報)'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동아에 답한다』라는 제목으로, '동아여, 자기 기록마저 왜곡하는가' '표변의 진수' 확인하고 싶거든 눈을 들어 동아를 보라' 등의 소제목

하에 행정수도 건설, 국민적 의견수렴, 대통령 결정, 서울과밀, 서울의 미래, 외국사례, 충청권 반응 등의 항목별로 동아일보의 1977년도 보도태도와 2004년도의 보도태도를 그 기사문언을 따와서 비교하여 양 시점의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치부를 둘러싼 검증은 부당한 전쟁이고, 자신들이 벌이는 편파적인 공격과 시비는 언론자유라는 논리는 오만이고 독선일 뿐이다...구여권 혹은 한나라당이 찬성할 때엔 동조하거나 침묵하면서 유독 참여정부가 같은 사안을 추진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특정정당의 당보(黨報)라는 오해를 계속 살 것인지, 정도를 걷는 신문인지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재반박하는 별지2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2004. 7. 16.자 동아일보에서 「청와대브리핑 — 과거수도이전 공약 땀 침묵의 허구 — 양김(兩金)은 '일부기관 이전' 공약 '사실상 천도' 와 비교는 억지」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없었다...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내용이 다른 만큼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신문기사도 박-노 대통령의 행정수도에 대한 기사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김영삼 후보의 일부 외청 이전과 사실상 천도 개념인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은 같은 비중으로 다를 수 없는 사안이다' 라는 취지로 별지1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재차 게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내용의 실제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보도태도를 비평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그 표현의 정도 역시 공적인 존재인 원고가 수인할 한도 내의 비평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비평의 기초가 되는 1977년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와 2004년 현재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을 왜곡한 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

지 아니하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 사실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언론기관이 국가권력이나 사회 제 세력에 대해 비판자의 역할을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언론기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편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고,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2.경 기획성 기사 '새서울 예진'을 7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게재하면서 수도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수도가 이전된 이후에도 서울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고('수위도시 기능은 불변'), 그러나 수도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울의 교통지옥은 면하기 어려우며 중앙권력과 거리감 때문에 범죄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강원 영동, 춘천 지역주민들은 수도이전계획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표출하였으나 충청권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위 기획성 기사의 마지막회에 수도이전에 따른 여러 장·단점 및 부작용을 종합·정리하면서도 결국에는 '시행착오 있어선 안 될 백년대계'로서 '민심저류 깊이 파악을'이라는 당부성 문구로 위 시리즈를 마무리하였던 사실, 또 하나의 기획성 기사인 '인공수도 브라질리아' 시리즈에서는 '건설3년의 대역사'

‘구상에서 착공까지, 오랜 찬반논쟁…쿠비체크가 이전결단’, ‘인플레이·경제파탄 들어 거센 반발’ 등의 기사에 이어 ‘황무지에 선 기적—천도 후도 한동안 수도 기능 못해, 수도권투자로 92%의 물가상승’ ‘그러나 결국 새로운 수도건설은 리오와 사옹파울루 중심의 경제권에서 탈피, 지방과의 격차를 줄였고 아마존 횡단도로를 건설, 이 지역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해 목축 쌀 콩의 생산을 증대시켰다’는 기사로 시리즈를 마무리 하였던 사실, ‘행정수도—전문가들의 좌담회(1977. 2. 12.)’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새행정수도건설 구상 발표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줘, 국민들의 호기심·궁금증을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좌담을 게재’ 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면에서 ‘투자재원, 시설이동 서울의 공소화 등 난제 — 천문학적인 재원마련문제, 관련공무원의 집단이동문제, 기존 서울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마스터플랜만 작성되면 건설은 3년 안에(1977. 2. 12.)’ 라는 등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평가를 제시하였던 사실, 반면 2003년, 2004년경 원고의 사실 제목이나 기사의 소재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수도 개발 밑그림 정부부담 11조…당초예산액 2배로(2003. 11. 17.)’ ‘서울 50만 명 줄이려 수도이전 45조 쓰나 원로학자 74명 반대 서명(2003. 11. 20.)’ 등 구체적인 정책비판 영역에서는 비용부담의 증가가 주로 강조되었고, 기타 ‘서울시 행정수도 이전 원점서 재검토(2003. 11. 1.)’ ‘천도,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2004. 6. 12.)’ ‘수도이전, 국회가 전면 재검토하라(2004. 6. 19.)’ ‘수도이전, 국회열고 재론하라(2004. 6. 22.)’ ‘노 정권, 이성 되찾아야 한다(2004. 7. 12.)’ ‘수도 이전하자고 아무 말이나 하나(2004. 8. 6.)’ ‘참여정부, 여론 밟고 수도이전 할 건가(2004. 8. 12.)’ 등 수도이전계획 자체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대비와 검토라는 실질적이고 정책평가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범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양정철이 작성하여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아일보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 태도가 종전에는 비판은 하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도 긍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던 반면,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왜 현 정부 아래에서는 균형성을 상실하고 비판 일변도의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 양정철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 ‘저주의 굿관’ ‘입장을 수시로 바꿔가며 줄타기’ ‘낮부끄러울 정도의 적극적 지지입장’ ‘표변의 진수’ ‘한나라당의 구령에 맞춘 청기·백기 게임’ 등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사(修辭)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그러한 논평의 전제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보도 태도에 대한 입장변화를 지적하는데 있어 세부(細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양정철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한 행위는 그 일부 표현방법이 국정의 최고기관에서 공표하는 자료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언론기관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 양정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별지 1, 2〉 기사 생략 - 편집자 주

□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방송내용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16.자 판결 (2005나10977)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김○○이 한 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기획, 제작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또한 방송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고, 다만 방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과 관련하여 피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서울시의 징세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원고의 체납사실과 재산상황 등 기초적인 사실을 제공받아 위 프로그램을 기획, 취재, 방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취재활동으로서 기획의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위 방송들의 공익성, 그 취재·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인 한국방송공사가 2001년 6월 24일 「추적 60분」프로그램과 2002년 8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좋은나라 운동본부」프로그램 ‘최재원의 양심추적-고액체납과의 전쟁’에서 원고를 악덕체납자로 방송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도 2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 325~33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5나10977 위자료

원고, 항소인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오 세 창

피고, 피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언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희정

제1심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가단2254 판결

변론종결 : 2005. 6. 28.

판결선고 : 2005. 8. 16.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의 '좋은나라운동본부(서울시 38세금기동팀)' 최초의 방영시간에 "본 방송국에서 2003. 11. 23.자 고액의 악덕채납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부과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동인이 그의 소유재산 등을 도피시켰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확인결과 위 보도내용과는 상이하므로 위 방송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3쪽 이하의 "3. 판단" 부분을 아래 2.항에서 새로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3.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추적 60분' 방송에서는, 원고를 "김씨"라고만 지칭하여 그 실명이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음성이 방송내용 중 변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되었고, 더욱이 원고의 명함이 화면에 확대되어 방영되었는데 당시 "(株)○○ : 서울 特別市 ○○區, TEL : ○○○-○○○○ ~ ○" 부분이 선명히 보였을 뿐만 아니라 종로에 있는 원고의 회사 사무실 내부와 사후이 그대로 방영되었으며, "1973년 설립된 ○○○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해설과 함께 원고의 ○○○ 공장 내부 역시 그대로 방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위 방송에 나오는 “김씨”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방송을 통하여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최재원의 양심추적’을 방송하면서는, 원고의 얼굴전체와 원고가 이용한 승용차의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원고가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부분에 일부 음성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외에 원고의 음성을 모두 변조한 상태로 방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택의 대문, 차고와 정원, 거실의 모습이 비춰진 것만으로는 앞서 방영된 ‘추적 60분’과 관련지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기 전에는 방송의 고액채납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방송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최재원의 양심추적’의 방송에 관하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이 부분 방송에 관하여도 ‘추적 60분’ 방송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이 조각됨은 마찬가지이다).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나아가 위 ‘추적 60분’의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추적 60분’에서 “수십 억 부자, 그러나 세금 낼 돈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승용차에 전용기사까지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을 실제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위 ○○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처를 등재하고,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의 처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지방세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여 일반 시청자들에게 원고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일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어떤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공익성

위 ‘추적 60분’ 방송 당시는 지방세 체납실태가 언론의 주요뉴스로 보도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때로, 담세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부유층 인사들을 고발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대하여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위 방송이 기획, 제작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방송은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원고가 '추적 60분' 이 방송될 당시에 지방세 4,4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주택과 대지를 그의 처인 최○○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자신이 소유하던 ○○의 주식을 그의 처와 자녀들에게, 이○○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최□□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1999. 6월 이후부터는 체납한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방송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위 방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에서 인정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지방세를 체납하였다고 추론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생활환경이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변동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추론에 대한 전제사실인 위 방송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내용 및 그 진실성과 피고가 서울시의 징세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원고의 체납사실과 재산상황 등 기초적인 사실을 제공받아 위 프로그램을 기획, 취재, 방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할 것이다(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위 방송이후인 2002. 5. 31. 원고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세체납에 대한 원고의 형사책임이 성립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서 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생활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추적 60분' 방송의 제작진이 원고의 주택을 찾아가 그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차고에서 나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뒤따라간 사실, ○○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과 ○○에 있는 원고

의 공장을 찾아가 그 내부를 촬영한 사실, 위 '최재원의 양심추적' 방송의 제작진이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 과 함께 원고의 주택 앞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원고를 만나 원고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거나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고자 주거관계 및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원고가 이용하는 승용차,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장 및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활동으로서 위 방송들의 기획의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취재 및 촬영이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일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위 방송들의 공익성, 그 취재·촬영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3일간 원고의 주택 주변에 심부름센터의 직원을 동원하여 대기 중인 자동차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원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은밀하게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가 사생활침해도 인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재원의 양심추적' 방송에서는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적 60분'의 방송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박 인 식

판사 김 경 호

□

원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7.자 판결 (2004가합7907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17일 2004총선시민연대 외 18개 시민단체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디지털조선일보,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1,5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인 조선일보가 2004년 9월 1일 및 2일 『정부, 565개 시민단체(NGO)에 지난해 411억 뺐다』등 6차례에 걸쳐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및 사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져만 가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그 도덕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이른바 낙선운동 활동을 전개한 사실,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피고 조선일보와 사이에 언론사에 대한 정부정책 등에 있어 서로 심한 의견차이를 보여 오면서 피고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선일보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위 두 사실 외에도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

계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정황이 취재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조선일보나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김○○이 그와 같은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사를 작성한 피고 김○○과 이를 보도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이 기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79071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2004총선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대표자 박 상 중

2.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빌딩 908호

대표자 강 병 기

3.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시 중동 1550-5, 3층

대표자 양 신 태

4.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 서구 화정동 134-8, 2층

대표자 정 인 경

5. 녹색연합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34

대표자 박 영 신

6.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과학공원 시네마센터 208호

대표자 김 용 우

7. 문화연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서일빌딩 2층

대표자 이 동 연

8.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 기사연빌딩 1층

대표자 이 명 순

9.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대표자 김 영 호

10.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대표자 박 인 혜, 한 우 섭

11. 여수 기독교청년회

여수시 광무동 916-12

대표자 오 광 중

12.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1-9, 2층

공동대표자 유 중 순, 이 승 규

13.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3-10, 2층

대표자 김 동 민

14.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08

대표자 이 강 실

15.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209

대표자 박 경 양

16. 참여자치21

광주 북구 북동 236-2

대표자 민 형 배

17.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호빌딩 5층

대표자 황 수 영

18.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대표자 정 강 자

19. 환경운동연합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공동대표자 최 열, 임 길 진, 신 인 령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범 석, 정 연 순, 유 기 성, 백 승 현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 찬

3. 주 ○ ○

4. 이 ○ ○

5. 김 ○ ○

6. 정 ○ ○

7. 박 ○ ○

피고 3 내지 7의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5. 7. 6.

판결선고 : 2005. 8. 17.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은 각자 원고 2004 총선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5억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내지 4, 8, 9호증, 을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주민자치 생활화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단체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고, 남녀평등·여성복지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녹색자치의 실현 등을 목표로 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모니터, 언론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문화연대는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비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여수기독교청년회는 청소년·시민문화·사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언론 감시·비판·대안제시를 위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 여성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참여자치21은 지역사회·지방자치·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민족예술의 창작을 위한 지원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권익신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 원고 환경운동연합은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환경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위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제17대 총선'이라 한다)를 앞두고 2004. 1. 12.경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하여 그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2. 3.경 총 32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 총선시민연대'라 하고,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지 '조선일보' 등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이라 한다)는 피고 조선일보가 게재·보도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이며, 피고 주○○, 이○○, 김○○, 정○○, 박○○은 각 피고 조선일보 소속의 기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1)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1. '조선일보' A1면의 좌측 상단 면에 "정부, 565개 시민단체(NGO)에 지난해 411억원 줬다"라는 제목과 "행자부 150억·복지부 85억·국방부 29억, 낙선운동단체들도 돈 받아... 정당성 논란"이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주○○, 이○○ 작성한 별지 1-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 이 사건 1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부처별 시민단체 지원현황'으로, 정부의 어느 부처가 몇 개의 시민단체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사 내용 우측에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1-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좌측 상단 면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원~1억 3,000만원까지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각 부제목으로 피고 김○○이 작성한 별지 2-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한다. 이 사건 2 기사에는 기사내용과 함께 기사 내용 좌측에 '정부지원 단체 중 중앙본부 혹은 지방조직이 총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라는 제목으로 어떤 시민단체가 정부의 어느 부처로부터 어떤 사업목적으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를 표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 표는 별지 2-2와 같다)를, 같은 날 A3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어떤 질문에도 답 못해' 민연련 등 일부 관련단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이 작성한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3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2면 우측 상단 면에 박스기사로 "정권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 선 시민단체 2곳 정부가 수억 집중지원"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주○○이 작성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4 기

사'라 한다)를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조선일보는 2004. 9. 2. '조선일보' A1면 좌측 상단 면에 "시민단체에 411억 ... 야낌없이 퍼주는 혈세"라는 제목과 "기준·용도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정 OO, 박OO이 작성한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5 기사'라 한다)를, 같은 날 A31면 좌측 상단면 사설란에 "시민단체, 옥석을 가려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각각 게재·보도하였다.

(2) 피고 디지털조선도 이 사건 각 기사와 동일한 기사를 2004. 9. 1. 및 2004. 9.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보도하였다.

2.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판단의 기준·범위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각 참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및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 3, 4 기사

(가) ① 이 사건 1 기사는, 정부가 2003년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과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총 411억원을 565개 시민단체에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 정부 언론 정책을 앞장 서 지원해 온 언론단체들도 정부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 각 부처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는 사실을, ② 이 사건은 3 기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에 대해 그와 관련된 취재를 시도하였는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취재를 거부하면서, 그 관계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다른 시민단체들의 답변 내용 등을, ③ 이 사건 4 기사는,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고, 정부의 언론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의 각 부처(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방송위원회, 언론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로부터 선거보도 모니터 백서출간, 신문고시 개정방안 토론회 등의 명목으로 언론지원예산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1 기사 중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정부기구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라는 부분, “이들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만 한해 수십 억원에 이르는데 예산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은 모두 앞서 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조선일보 등의 논평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사실과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1, 3, 4 기사가 일반 독자들에게 정부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사실’과 ‘낙선운동’이 대가관계에 있거나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 3, 4 기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결국 이 사건 1, 3, 4 기사는 “정부가 2003년 시민단체들에게 411억원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낙선운동을 한 단체도 있으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문을 비판하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언론관련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실의 경우

(가) 이 사건 사실은, 먼저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총 411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전국 단위의 25개 단체 중 8개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친여(親與) 선거운동이란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기본적 사실로 적시하면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치단체가 주류를 이룬다”는 피고 조선일보의 평가에 대한 근거로 “선거 때나 지난 탄핵사건처럼 여야의 정쟁이 격

화될 때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고, “이번 국회 자료로 그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돈을 얻어쓰면서 선거 때나 정쟁이 격화될 때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게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 또는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권력이 먼저 돈으로 유혹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정부 지원을 맞바꿨는지 애매할 정도로 깊고도 어두컴컴한 관계다”,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권력 예비군(豫備軍)의 중간집결지나 이권(利權) 추구자의 잠복 장소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빗나간 풍토도 이런 배경에서 빚어진 것이다”, “등뒤로 권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외곽단체나 관변단체들을 골라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설은 또한,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 위 원고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신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주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위 원고들이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신문시장 점유율 조정이나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의 주주 지분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부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이런 여론을 따라가는 척하는 위장(僞裝)수법을 써왔다”라거나, “이들이 비판신문에 대한 비방과 법적 탄압에는 선봉대 노릇을 해온 배경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라는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설에서의 적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언론정책에 대해 정부와 같은 의견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2 기사

(가) 이 사건 2 기사는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원~1억 3,000만원

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문구를 중간제목으로 하고 있고, 그 본문 서두에서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 당할 수밖에 없는데, 2003년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올해 4월 총선에서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아래의 문단에 원고 총선연대에 가입한 개별 원고들이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등으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구체적 방식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원은 중앙본부가 받고, 총선연대엔 지방 조직이 참여하는 경우”와(원고 한국여성의 전화연합과 원고 한국여성민우회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지방조직이 직접 재정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한 경우”(원고 여수기독교청년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21(광주)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는 당적별로 야당에 집중되어 있어, 야당으로부터 ‘총선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산하직능단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고, 제17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더불어 시민운동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시민운동가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후보자 정보공개’를 주도했던 경실련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 조선일보가 이 사건 2 기사에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각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위해 얼마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표로서 함께 기재하고 있고, 신문기사의 제목이란 통상적으로 압축적이거나 강조적인 표현을 위해 문장의 구성부분을 생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도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 기사 내용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표명(“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권력 멀리 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라는 부제목 및 그 부제목 바로 아래의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원~1억 3,000만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라는 또 다른 부제목의 배치, 제목의 크기, 제목과 중간제목 문구의 내용과 구조(‘권력 멀리 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문장의 구조와 이 사건 사실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도 정치활동 또는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문장의 구조는 엄연히 다르다), 더구나 '낙선운동' 부분을 작은 따옴표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제목과 부제목으로부터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이나 그 표는 대강 읽어 넘어가기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 본다 하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과 각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목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과 시민단체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참여한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내용이라든가, "낙선운동과 더불어 제17대 총선 당시 시민운동의 흐름을 형성했던 '당선운동'은 개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다른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 없이 제17대 총선에서 '후보자 정보공개'라는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대비되는 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2 기사를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5 기사

한편, 이 사건 5 기사는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대해 411억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 그 지원되는 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원금 중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중도사업포기로 환수·반납된 금액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인지의 여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관계자가 그러한 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감시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현재 행정 각 부처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절차 등을 적시하고 있다.

다. 명예훼손적 표현인지의 여부

(1) 이 사건 1, 2, 3, 4 기사 및 사실이 그 내용에서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여 활동한 나머지 원고들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은 위 각 기사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2)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실의 경우, 앞서 본 각 사실적시 부분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각 내용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

지 원고들이 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거나(이 사건 1 기사 및 사설의 위 (가) 부분),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인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부로부터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른 언론기관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3, 4 기사 및 사설의 위 (나) 부분), 이는 결국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도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부비판신문에 대한 비판에 주도적이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이 정부가 시민단체들에게 퍼주기 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거나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적인 것이고, 권력과의 유착의 대가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각 기사 및 사설이 앞서 본 적시사실과는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더라도 이는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따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한편,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시민단체인 원고들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및 시민단체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4) 다만, 이 사건 5 기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 그 배분의 기준이나 사용용도의 정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아낌없이 퍼는 혈세’라는 제목 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5 기사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검증절차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피고 조선일보 등의 의견표명일 뿐이고, 그 의견표명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된 사실 및 그와 관련된 의견표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적시된 시민단체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은 물론 그 원고들이 참여하여 활동한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5 기사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피고 정○○, 박○○에 대한 청구 및 이 사건 5 기사에 관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원고들이 제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사실과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보도 또는 논평이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강제1호증의 1, 강제8호증의 1, 2, 강제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2004. 2. 5. 낙천대상자명단을, 2004. 4. 6. 낙선대상자 명단을 각각 발표하였고, 그 각 시기마다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부패정치·돈선거를 반대하는 홍보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제17대 총선에 즈음한 2004. 2. 5. 발표한 총 66명의 낙천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0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4. 4. 6. 발표한 총 108명의 낙선대상자에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9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10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19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 총선시민연대는 2004. 3. 12.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에 찬성한 국회의원 100명을 일률적으로 낙선대상자 명단에 선정하였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소속이 68명, 새천년민주당 소속이 23명,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3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그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자, 몇몇의 언론들은

“낙선운동의 생명은 공정성”(문화일보 2004. 1. 13.자 사설), “공천반대 66명/시민-네티즌 반응 - 형평성 잃어 혼란스럽다”(2004. 2. 6.자 국민일보 기사), “시민단체 낙선명단 공감 못한다”(문화일보 2004. 4. 7.자 사설), “시민단체가 당선·낙선 다 정하나”(동아일보 2004. 4. 8.자 사설), “낙선·당선운동 설득력 약하다”(서울신문 2004. 4. 8.자 사설)라는 등의 제목으로 원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은 ‘특정정치 세력에 편중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중립성이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4) 정부는 2003년 각 부처를 통해 565개 시민단체들에 대해 41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정부가 2004. 8. 31.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결산 보고서와 상세내역서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였던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5)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 언론사들은 “NGO, 정부 돈 받아도 되나”(중앙일보 2004. 9. 1.자 사설), “시민단체 ‘정부 돈’ 받아선 안 된다”(문화일보 2004. 9. 1.자 사설), “‘권력유착 시민단체’ 존재 이유 없다”(동아일보 2004. 9. 2.자 사설) 등으로 비판적인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6)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2001년 1월경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두기자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국세청이 피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추징하였고, 피고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언론사의 대표이사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우리 사회 여론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탄압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당시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그에 관한 후속조치를 지지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사 등은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검찰수사는 언론탄압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면서 강하게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001. 7월경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에 대해 찬성하며 언론사 대표이사의 비리 등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이 정당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세무조사를 찬성한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2001. 7. 9.부터 같은 달 30.까지 각 방송사들은 거의 매일 고발된 언론사

의 대표이사 및 그의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도하는 한편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성명서 발표 및 시위사실과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7)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001. 8. 28. 및 2001. 11. 15. 각 “왜 조선일보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2. 11. 11. “한반도 위기와 조선일보”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0. 24.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의 ‘KBS 흔들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3. 11. 20. “최근 조선일보의 정치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토론회”, 2003. 12. 12. “안티조선운동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의 토론회, 2004. 5. 24. “안티조선과 진보진영”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기도 하는 등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원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대체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한편,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들도 여러 명 당선되었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1)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도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라. 공익성

이 사건 1 내지 4 기사 및 사설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실과 그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는 원고 총선시민연대예외의 가입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한 나머지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져만 가는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그 도덕성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마. 진실성 내지 상당성

(1)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경우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그 원고들이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여 이른바 낙선운동 활동을 전개한 사실,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및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피고 조선일보와 사이에 언론사에 대한 정부정책 등에 있어 서로 심한 의견차이를 보여 오면서 피고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선일보가 행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낙선운동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설에서 적시한 사실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현재 우리 사회는 시민단체가 정치, 문화, 언론, 인권, 여성문제, 환경 등 사회 여러 각 분야에서 정부나 정당 못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단체는 정부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전통적인 국가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영리법인, 더 나아가 비영리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비판하는 반면 그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기관이나 법률적인 견제장치

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당해 시민단체 스스로 도덕성이나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권력기관과 유착되어 권력기관의 요구나 의사에 부합하는 쪽으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시민단체의 존립근거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안에 관련된 것 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라도 폭넓게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의 가치관이나 정치성향의 다양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시민단체들도 각기 개별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등으로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대비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제기나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그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도덕성·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7대 총선이 실시되기 바로 전해인 2003년에 원고 총선시민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사실과 그러한 원고들이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낙선대상자에 대한 선정절차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차치한다면, 사실상 현 집권 여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가장 적게 선정되었고, 야당과 관련된 인물들이 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선정된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와 현 정권측에 더 우호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조선일보는 정치적 성향 등에 있어서 원고들과는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 중 여러 명이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점,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피고 조선일보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비판을 하여 온 점, 실령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단체가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였던 낙선운동에 참가하였다면 그러한 교부금의 지급과 그와 같은 원고들의 정치적 활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사설에서의 의견표명은 사설이라는 보도의 특성상 비유적 표현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피고 조선일보의 의견표명인 점,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치적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 사안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이나 문제제기

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사설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또는 논평이나 문제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1, 3, 4 기사 및 이 사건 사설에서의 사실 적시 및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기사 및 사설에서의 의견표명 내지 문제제기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3, 4 기사를 각각 작성한 피고 주○○, 이○○ 및 위 기사 및 사설과 관련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2 기사의 경우

(가) 살피건대, 이 사건 2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은 “원고들 등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2 기사가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나머지 각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한 사실’과 ‘각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는 시민단체들의 정당성과 도덕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비판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은 이 사건 2 기사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원고들의 낙선운동’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읽혀 이 사건 2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위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3의 마.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행한 낙선운동의 대상자에는 정부여당 관련 인물들은 소수만 포함되어 있고, 야당 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낙선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하게 보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공적 사안이나 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와 관련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는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관련되거나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혹제기에 그쳐야지 그 보도에서 전

제가 되는 사실과는 별개의 또 다른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2 기사에서와 같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또는 “원고들이 낙선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실 외에도 위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취재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조선일보나 이 사건 2 기사의 작성자인 피고 김○○이 그와 같은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 김○○,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에게 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한 피고 김○○ 및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한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2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2 기사의 보도가 시민단체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이 사건 2 기사의 작성·보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김○○,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은 각자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의 지위, 원고들과 위 피고들의 관계, 원고 총선시민연대 및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위치, 이 사건 2 기사 내용,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총선시민연대에 대하여는 1,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만원씩으로 각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결국,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은 각자 원고 총선시민연대에게 1,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4.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위 기간 동안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당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 이○○, 정○○,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별지 1~6〉 기사 생략 - 편집자 주

□

**원고가 북한군과의 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피고가 기울인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자료나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5. 8. 30.자 판결 (2004나65338)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30일 전 육군 중사 김○○과 그의 가족들이 ‘김훈 중위 타살의혹사건’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기사의 진실성 여부는 그 기사를 보도한 언론기관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제기한 문제점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김훈이 부대 내부자에 의하여 타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갖게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대북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김훈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 상관을 살해하였다는 기사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고, 김훈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나름대로의 조사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군수사당국의 1차 및 2차 수사결과와 합조단의 수사결과에 일부 미비된 점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함으로써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피고 등이 지적한 김훈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종합하면 김훈이 과연 공적기관의 수사결과와 같이 자살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문점들이 원고가 김훈을 살해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로서는 이미 1차와 2차에 걸친 수사결과가 김훈의 사인을 자살로 발표하였고 그 후 원고의 대북접촉사실이 확인되어 타살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그에 따른 후속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고, 주간지인 시사저널의 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보도의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주관적 심증이 들더라도 헌법이 천명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언론기관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자 다른 언론사들과의 특종경쟁을 의식했음인지 원고의 대북접촉사실을 김훈의 살해동기로 단정하고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군과의 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관인 김훈을 살해하였다’라는 취지의 단정적 내용인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피고 및 소속기자가 그 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 기울인 취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김○○과 가족들은 시사저널이 지난 1998년 12월 17일자 『“판문점 경기 한국군 일부, 북측과 몰래 접촉』 제하의 기사를 포함 총 4건의 기사에서 원고 김○○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군의 지령을 받았거나, 이적행위가 탄로나자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북한 지역으로 잠입·탈출하거나 북한군을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저질러왔고, 이러한 접촉 사실은 김훈 살해의 주요한 동기가 될 여지가 있어 원고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김훈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분은 피고로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 187~203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4나6533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1. 김 ○ ○

2. 김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 덕 남

피고, 피항소인 :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8-1

대표자 이사 임 영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 병 규, 정 원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5. 선고 2001가합8887 판결

변 론 종 결 : 2005. 7. 12.

판 결 선 고 : 2005. 8. 30.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에게 30,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3,000,000원, 원고 김◇◇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2005.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제10쪽 5행의 ‘기부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 김○○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김○○이 복한의 지령을 받아 김훈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인상을 주어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김○○의 실명(實名)을 거론한 바 없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1, 2차에 걸친 군수사당국의 수사결과 발표 및 김훈의 유족들과 정○○이 조사·취재한 결과를 전제사실이나 기초로 삼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그에 대해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김○○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김아무개 중사’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나, 기사의 내용 중에 ‘김훈과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특전사 출신’ 등 원고 김○○의 군대내 직책, 출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김훈의 사망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그에 관한 수차례 보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혹은 적어도 원고 김○○과 같이 근무하였던 군인들이나 원고 김○○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 중사’가 원고 김○○을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 김○○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구체적 사실의 적시

(가) 이 사건 기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피고는 먼저 “관문점 경비 한국군 일부, 복측과 몰래 접촉”, “시사저널 추적 확인/김훈 중위 의문사와 깊은 관련.. 월북

등 이적행위 해온 부소대장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큰 제목 아래, ‘시사저널’ 등이 9개월여 동안 김훈 사망 사건을 취재한 결과 군수사당국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달리 ‘김훈의 사인은 권총에 의한 타살’ 이고, ‘범행동기는 이적행위가 탄로난 부하가 적(북한)의 지령을 받아 상관을 살해한 것’이며, ‘살인 용의자는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김아무개 중사’ 라고 나름대로 결론지은 다음, 그와 같은 ‘상관살해용의자’인 김아무개 중사가 국군 기무사령부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여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김훈을 살해하였고 그러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고, 이어 김훈 사망 당시 2소대에 근무하였던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김아무개 중사가 1997년경부터 북한군과 접촉해 왔는데 변용관의 귀순 등으로 극히 긴장된 상황이었던 1998. 2. 16.경 다시 한차례 월북하였다 돌아온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김훈이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여 원고 김○○의 북한군 접촉과 김훈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김아무개 중사가 ‘모종의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게재하였다. 나아가 “용의자 김중사, 사건 현장 장악하고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김훈 사망 당일 김아무개 중사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알리바이 진술의 모순점 등을 열거하는 한편 노여수 박사가 법의학적으로 김훈의 사인은 명백한 타살이라고 밝혔음을 강조하면서 김훈의 사망현장에서 발견된 권총 역시 김아무개 중사가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게재하여 그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거쳐 결국 김훈의 사망 원인을 ‘이적행위자에 의한 타살’ 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군 수사 발표와 ‘시사 저널’ 추적결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큰 제목 아래, 2차 수사결과와 ‘시사저널’ 등의 추적결과를 자살동기, 타살동기, 알리바이, 법의학적 소견과 수사 및 조사결론으로 항목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그 결론으로 ‘상관 살해 용의자는 특전사 출신으로 대테러·암살 특수 훈련을 받은 자로서 상관 살해 후 교묘히 자살로 위장하고 부대 상황 및 알리바이를 장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은 사고사나 자살이 아니라 소대 내 이적행위자에 의한 타살로 판단된다’고 보도하는 한편, “술·시계 주고 한국 병사 포섭했다”라는 큰 제목으로 2소대 20여 명의 병사들이 북한군과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후 국회 국방소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군 정보기관의 변용관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을 보도하였고, 끝으로 “판문점 한국군 병력 숙련된 장교로 바뀌야”라는 큰 제목 아래 하경근 의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김아무개 중사의 이적행위가 김훈 살해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나) 결국, 피고는 1, 2차에 걸친 군수사당국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취재하거나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원고 김○○이 북한군의 지령을 받거나 대북접촉사실이 탄로나자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공익성

김훈 사망사건은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에 배치된 1991년 이래 최초로 발생한 장교 사망사건으로서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어 있던 1998. 2. 24에 일어났고, 그 사인을 둘러싸고 군수사당국과 유족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사인에 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건의 진상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김훈의 사망이후 원고 김○○ 등의 대북접촉 및 군기문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군 내 의문사에 관한 일반적 관심이 증폭되어 가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국민에게 안보에 관한 경각심을 고양하고 이 사건의 진말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의 필요성이나 내용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진실성

나아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기사의 진실성 여부는 그 기사를 보도한 언론기관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제기한 문제점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김훈이 부대 내부자에 의하여 타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을 갖게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대북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김훈이 부대에 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김훈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 상관을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기사내용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김훈의 사인과 관련된 군수사당국의 공식적인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둘러싼 일부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기초하여 취재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에 의하여 원고 김○○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4) 상당성

(가)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의 기자인 정○○이 9개월여에 걸친 기간 김훈의 유족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국회 국방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들과 함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만나 사실확인 작업을 하는 등의 취재노력을 다하였고 그와 같은 취재와 사실확인 작업의 결과 밝혀진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언론매체가 기사를 작성, 보도함에 있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 기사의 내용이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상당성의 존재여부에 관한 판단은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고 언론사나 직접 기사를 취재, 작성한 기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그 판단은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후에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한편, 언론매체의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는 일반적으로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여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알림으로써, 일반 대중의 준법의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밝혀 그에 따른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익명보도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보도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억측 등의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한 범죄사건과 관련된 언론매체의 보도는 비교적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언론매체의 범죄보도 중에서도 단순히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 소극적인 보도를 넘어 기자 등 언론매체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사회비리나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폭로하거나, 때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더 나아가 공적기관에 의한 수사나 재판이 완결되어 개인의 형사책임의 유무나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된 사

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거나 사건을 재구성 내지 재조명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공적기관의 판단결과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보도와 관련된 언론매체의 위와 같은 적극적 보도 형태가 과거 군부독재정권하에서 권력에 의하여 은폐되어 온 범죄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적기관이 간과해 온 사회비리와 부조리를 이슈화하거나 그에 관한 수사의 단서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민주사회에서 수사나 재판과정 역시 언론과 국민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보도와 관련된 언론매체의 위와 같은 적극적 역할은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기관의 보조적 내지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적기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규모나 전문성에 있어 언론매체가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적기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범죄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소극적인 범죄보도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사실규명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언론매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거 없이 주관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공적기관의 판단을 부정한다면 언론이 가진 영향력으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적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어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제도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제적 진실이 왜곡되고 언론매체의 힘을 빈 무고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매체가 아직 사건화 되지 않은 사회비리 등을 조사·추적하여 폭로하거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혹은 이미 완결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적기관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범죄보도에 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그와 같은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 범죄보도와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훈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고와 그 소속기자인 정〇〇이 국회 국방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의 단체와 더불어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이 사건 기사를 포함하여 나름대로의 조사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군수사당국의 1차 및 2차 수사결과와 합조단의 수사결과에 일부 미비된 점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함으로써 수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피고 등이 지적한 김훈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종합하면 일면 김훈이 과연 공적기관의 수사결과와 같이 자살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혹을 가질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등이 지적한 김훈의 사망과 관련된 의문점들이 김훈의 사인에 관하여 의혹을 품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의문점들이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보도에 앞서 이 사건 사고의 수사책임을 지고 있는 헌병 및 미군범죄수사대, 군검찰 등 공적기관이 1차와 2차에 걸쳐 김훈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발표하였으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김훈의 유족들과 피고 등이 원고 김○○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합조단이 비록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대북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김훈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강도높은 수사를 하였고, 피고 등이 제기한 의문점을 재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국내외의 법의학자들을 망라한 법의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이 30여회에 걸쳐 명령을 어기고 북한군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김훈의 사망에 대한 원고 김○○의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피고 등이 제시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김훈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미 1차와 2차에 걸친 수사결과가 김훈의 사인을 자살로 발표하였고 그 후 원고 김○○의 대북접촉사실이 확인되어 타살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그에 따른 후속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고, 주간지인 시사저널의 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보도의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주관적 심증이 들더라도 헌법이 천명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언론기관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김훈의 사망에 원고 김○○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향후 진행되는 수사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그 동안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동수사의 미숙 등 군수사당국의 수사결과 의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위와 같은 문제점과 피고가 취재과정에서 발견한 의문점 등을 토대로 김훈의 타살가능성을 보도하고 부가적으로 부대내부자의 관련가능성을 언급함에 그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2. 4. 원고 김○○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자 다른 언론사들과의 특종경쟁을 의식했음인지 원고 김○○의 대북접

측사실을 김훈의 살해동기로 단정하고 '원고 김○○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군과의 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관인 김훈을 살해하였다' 라는 취지의 단정적 내용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이 사건에서, 피고 및 정○○이 그 동안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기울인 취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 김○○과 그 가족들인 원고 김△△, 김□□, 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사의 내용, 피고가 언론매체로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향력,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사실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피해자인 원고들의 나이, 재산, 학력과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원고 김○○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 김△△, 김□□에 대하여 각 3,000,0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30,000,000원, 원고 김△△, 김□□에게 각 3,000,000원, 원고 김◇◇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12. 18.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5. 8.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할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박 인 식

판사 김 경 호

□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피고 회사광고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자 판결 (2004가합8495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2005년 9월 7일 연극배우 전○
○이 주식회사 국가영상예술원○○○○아카데미와 그 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
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피고 회사의 광고
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불
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연극배우 전○○은 피고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84950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 ○

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한 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 창 회

피 고 : 1. 국가영상예술원○○○○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2. 은○○ (이명 하○○)

변론종결 : 2005. 6. 22.(피고 1에 대하여)

2005. 8. 24.(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 2005. 9. 7.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국가영상예술원○○○○아카데미 주식회사는 2005. 4. 20.부터, 피고 은○○은 2005.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다수의 연극, TV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한 연극배우이고, 피고 국가영상예술원○○○○아카데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학원업, 연예인 대리, 영상·음반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은○○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다(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박○○은 피고 은○○과 1983. 8. 1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7. 8. 2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부천시 ○○구 ○동 ○○○-○ 소재 ○○○○타운Ⅲ ○층 내지 ○층의 4개 층에 '국가영상예술원 부천○○○○○원'(이하, 부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전단지(강제2호증의 1)를 배포하였는데, 그 광고전단지에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그 광고전단지에는 피고 은○○의 이명인 '하○○'이 부천○○○○○원의 설립이사장이자 영화감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4. 9. 16. 중앙일보 제20면(강제5호증의 1)에 부천○○○○○원의 투자자 모집을 위한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광고에 원고를 부천○○○○○원의 원장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04. 9. 17.경 피고 은○○에게 '원고가 위 광고에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사용하는데 동의한 바 없으므로 2004. 9. 22.까지 중앙일보에 진상을 해명하는 광고를 게재할 것과 앞으로 원고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4. 10. 12. 동아일보 B9면(갑제5호증의 2) 및 2004. 10. 14. 조선일보 A32면(갑제5호증의 3)에 각각 무단으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함과 아울러 원고를 부천 〇〇〇〇원의 설립위원장으로 표시한 광고를 각각 게재하게 하였다(위 조선일보 광고에서는 원고를 부천 〇〇〇〇원의 설립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바로 아래 피고 은〇〇의 이명인 하〇〇이 설립이사회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상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피고 회사의 광고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〇〇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초상을 광고에 사용하는데에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은〇〇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액수

위와 같이 원고가 초상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극배우로서의 지위 및 사회적 저명성, 피고 회사의 규모, 피고 은〇〇의 지위,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초상을 사용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유형의 초상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즉 피고 회사는 2005. 4. 20.부터, 피고

은○○은 2005.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9.자 판결 (2004가합19990)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2005년 9월 9일 정당신부 윤○○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3월 내지 5월경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성당의 2층 사제관 옥실, 이 사건 아파트 등에서 성당 부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피해 아동들을 쇠막대 등으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의 성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성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원고와 공모하여 피해아동을 2층 사제관이나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원고와

함께 성추행을 하였다거나 혹은 원고와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성당 2층 사제관 욕실에 피해아동들이 '쇠로 된 큰 통 혹은 쇠로 된 욕조'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욕조가 존재한다는 정황만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한 후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서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는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고 전제한 후 "피고 홍○○은 비록 피해아동들을 진단하였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피해아동들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원고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있었던 이상, 이 의견을 신뢰할 수 없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항문의상, 스테인레스의 욕조 및 ○○아파트 등과 이 사건 성추행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취재를 다하지 못하였고, 피해아동들에 의하여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에 대한 취재조차 아니 한 채 원고가 피해아동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인 KBS가 2003년 7월 26일 「추적60분」 프로그램 "신의 이름을 더럽히다 - 교회내 성폭력" 제하로 목사들이 신앙을 매개로 신도를 성폭행하였던 다른 사례들과 함께, 원고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방영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19990 손해배상(기)

원 고 : 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 상 교

피 고 : 1. 홍 ○ ○

2.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 수 근

변론종결 : 2005. 8. 12.

판결선고 : 2005. 9. 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27.부터 2005.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추적60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부산 M성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정방송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방송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방송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만일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가'항 기재 시기에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문 제2항(단, '가'항의 '이 판결이 확정된 후' 대신 '이 판결 선고 후'로, '정정방송문' 대신 '정정방송요구문'을 구하고 있음)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검증결과와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1.경 부산 소재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의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홍○○은 피고 공사 소속의 방송 프로듀서로서 소외 이○○과 함께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취재와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나. '추적 60분'의 성격

피고 공사의 '추적 60분'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한 후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이다.

다. 원고와 관련된 성추행논란(이하 이 사건 성추행논란이라 한다)

(1) 원고가 위 성당에 주임신부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4. 14.경 위 성당 부설유치원의 사랑반 원생인 최○○(여, 당시 만 3세) 및 그의 모 김○○은 '원고가 2003. 3. 6.경부터 4. 6.경 사이에 최○○을 위 성당의 신부방과 2층 사제관으로 유인하여 동물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성기 등을 만지거나 쇠막대를 향문에 삽입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경찰에 고소하였다(울산지방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피의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부산남부지방경찰서로 이송됨).

(2) 경찰은 최○○이 지목하는 동물가면 및 쇠막대 등을 압수하기 위하여 2004. 5. 14.경 고소인 최○○과 김○○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 성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최○○이 코뿔소 가면이라고 주장하면서 2층 사제관 서랍장 내에서 꺼낸 적색 체크무늬 삼각수건 1점만을 압수하였을 뿐 쇠막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이후 경찰은 2003. 5.중순경까지 고소인 최○○ 및 그의 부모인 최□□, 김○○, 그 밖에 최○○을 상담하였던 울산성폭력상담소장 김□□, 피의자인 원고, 최○○을 맡고 있던 사랑반(5세미만 원생으로 구성) 정담임교사 설○○, 사랑반 부담임교사 이□□ 등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19.경부터 부산 성폭력상담소, 부산 여성의 전화, 울산 성폭력상담소 등 부산과 울산 지역 여성단체들이 '유치원 원아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3.에는 부산일보에 이 사건 성추행논란이 보도되었다(이후 부산일보는 계속하여 이 사건 성추행논란을 보도하였다).

(4) 위 대책위원회는 2003. 5. 23.경 ○○성당을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울산성폭력상담소장 김□□가 1층 사제관옆 공구창고에서 쇠막대(30cm)를 발견하여 성추행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하여 달라면서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5) 이후 경찰은 유치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수녀(이하 원장수녀) 신□□, 위 성당의 사무장인 신○○, 소망반(7세미만) 정담임교사 김○○, 믿음반(6세미만) 정담임교사 김○○, 원고의 남동생의 처로서 원고의 식사 및 2층 사제관의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 및 기타

성당의 경비원, 조리사, 유치원차량의 운전기사인 방○○ 등 성당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최○○ 및 위 사랑반 원아 중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 유○○, 문○○ 등을 상담하였던 부산성폭력상담소장 이△△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때 이△△는 문○○이 상담과정에서 신부방에 쇠로 된 욕조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6) 위 유○○(당시 4세), 문○○(당시 4세), 박○○(당시 3세) 등의 부모들은 2003. 6. 2.경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욕탕, 신부방 및 아파트 등에서 손이나 쇠막대를 사용하여 위 아동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그 무렵 최○○의 모 김○○도 3회 조사에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수녀 및 유치원교사들이 원고와 함께 최○○을 성추행하고, 최○○이 보는 앞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맺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경찰은 피해아동들이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였다, 괴물차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아파트에 갔다, 도깨비방은 3층에 있다(유○○), 쇠로 된 큰 통에서 목욕을 하였다(박○○), ○○가 신부님집에서 목욕하고 있었다, 욕조는 반짝 반짝 빛나는 쇠로 되어 있다, 신부님 집은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 신부가 운전하는 노란버스를 타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갔다(문○○)'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5. 현장 재연을 시도하였는바, 이때 유○○, 박○○ 등은 유치원 내의 화장실을, 문○○은 수도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재료실을 각 목욕탕으로 지목하였고, 신부방을 찾는 과정에서는 피해아동들이 성당의 본관 2층 계단만을 왕복하였을 뿐 별관 2층의 사제관이나 1층 사제관을 지목하지는 못하였다.

(7) 이후, 경찰은 2003. 7. 4.경 수사를 마친 후,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결과 최○○의 성기나 항문에 상처가 없고, 쇠막대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 머리에 쓰는 삼각수건을 코뿔소 가면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 아동들이 공범으로 지목한 유치원교사들 및 수녀가 원고와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사제관으로 데려가거나 성추행 등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위 유치원교사들 및 수녀 사이에 전화통화 내역도 전혀 없는 점, 원고가 피해아동들을 차에 태워 아파트나 놀이공원 등에 갔다는 피해아동들의 진술과는 달리 원고는 운전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운전도 하지 않는 점, ○○아파트의 거주자가 원고 및 ○○성당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점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에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경남지역 20여개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성추행논란의 취재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1) 피고 홍○○을 비롯한 피고 공사의 '추적60분' 제작팀은 그 무렵 성직자들에 의한 교회내 성폭력 사건의 실상 등을 보도하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성추행논란에 관한 제보를 받고 부산일보의 기사들을 확인한 후 2003. 7. 8.경부터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 피해아동들을 가장 먼저 상담했던 울산성폭력상담소장, 피해아동들을 직접 치료하고 있던 의사, ○○성당의 원장수녀 및 사무자,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을 취재하였다.

(2) 피고 공사는 2003. 7. 26. 21:50부터 22:50경까지 'KBS-2TV'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의 이름을 더럽히다 - 교회내 성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들이 신앙을 매개로 신도를 성폭행하였던 다른 사례들과 함께, 이 사건 성추행 논란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방송내용이라 한다)을 약 15분 50초 가량 방영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해 아동측에 대한 취재 부분: 피해 아동들이 인형놀이나 상담과정에서 원고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는 장면

(나) 원고측에 대한 취재 부분: 부산 M성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멀리서 성당 전경을 보여준 후, 가해자로 지목된 신부가 성당에 없었다는 해설과 함께, 성당 수녀가 유치원 및 유치원 화장실 등을 보여주면서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설명하는 장면

(다) 수사담당형사에 대한 취재 부분: 담당 형사가 피해 아동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장면

(라) 사제관 2층 스텐레스 욕조 취재 부분: 제작진이 피해 아동의 엄마로부터 피해아동들이 '쇠로 된 욕조'를 성추행장소로 지목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성당을 찾아가 2층 사제관 안의 욕실에 스텐레스 욕조가 있음을 확인하는 장면

(마) 아파트에 대한 취재 부분: 피해 아동이 도깨비 신부, 망태 아저씨, 망태 할머니, 망태 누나가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 또 다른 성추행 장소로 지목한 ○○아파트로 취재진을 안내하는 장면 및 아파트 주인이 6월 중순 이후에 이사를 왔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

(바) 쇠막대에 대한 취재 부분: 한 아이의 항문에 큰 물건에 의한 외상의 흔적이 있다는 의사의 인터뷰내용과 모든 아이들이 성추행 도구로 지목한 쇠막대(이하 이 사건 쇠막대라 한다)를 보여주는 장면

(사) 정리 부분: 피고 홍○○이 소외 이○○과 마주 앉아 '2층 사제관의 복잡한 구조상 아이들이 스텐레스 욕조를 지목한 것 자체가 놀랍고, 이 문제는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으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다'라는 취지의 정리 발언을 하는 장면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이후의 정황

(1) 피고 홍○○의 추가 취재

피고 홍○○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틀 후인 2003. 7. 28.경 이 사건 성추행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가와 함께 다시 부산에 내려갔는데, 위 작가는 피해아동의 집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유치원교사 2인을 만났고, 이후 피고 홍○○은 위 유치원교사 중 1인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취재를 하였다.

(2) 검찰의 불기소처분

(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해아동들에 의하여 성추행에 가담한 다른 신부로 지목된 □□성당 주임신부 조○○, 역시 피해아동들에 의하여 성추행에 가담한 수녀로 지목된 ○○성당 수녀 박□□, 원고의 주변인물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신△△, 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3. 6.경까지 거주하였던 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나) 검찰수사결과, 우선 김△△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이 사건 성추행논란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아동들로부터 성추행에 가담한 수녀로 지목된 박□□는 이 사건 성추행논란이 있기 직전인 2003. 2. 25. ○○성당에 발령받으면서 비로소 원고를 알게 되었고, 유치원 일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김◇◇은 고등학교교사로서 2003. 3. 29.(토요일) 1회 병가를 한 경우 이외에 이 사건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03. 3. 3.부터 2003. 5. 31.까지 조퇴나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고, 초등학교 교사인 신△△ 역시 위 기간 동안에 조퇴나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어 피해아동들이 성당유치원에서 지내는 낮 동안에는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주변인물과의 통화내역조회결과에서도, 피해아동들로부터 성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성당 주임신부 조○○은 이 사건 성추행이 발생할 무렵을 전후하여 ○○성당 부근에서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여성들 중 김△△은 원고와 매월 3~4회 정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간이 피해아동들의 수업이 끝난 17:00 이후이거나 휴일이고, 나머지 여성들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거주자였던 김○○은 불교신자로서 원고나 ○○성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다) 이후 검찰은 2004. 1. 31.경 ‘원고가 “바보”라고 불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최초 가해자로 지목되게 된 경위나 다른 신부, 수녀, 유치원교사, 원고의 주변인물 등의 진술, 원고와 위 주변인물들 사이의 통화내역조회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달리 원고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피해아동들의 항고(2004. 5. 27.), 재항고(2004. 10. 18.) 등이 모두 기각되자, 피해 아동들은 2004. 11. 20.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책임의 발생

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범인으로 예단하여, 원고측의 반론 및 수사결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성당의 유치원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장면들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성명이나 성당의 명칭 대신 ‘ㅇ신부’, ‘부산 M성당’ 등으로 표기하여 원고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하였고,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특성상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취재장면을 먼저 배치한 것일 뿐 원고가 피해 아동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식의 직접적인 설명을 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실제 방송 진행자였던 피고 홍○○도 ‘이 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시청자가 성추행사건의 범인을 원고로 예단하지 않도록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원고가 피해 아동들을 성추행한 범인임을 단정하거나 확정된 부분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인한 피해자인지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 아동들이 성추행범으로 지목하였다는 사람에 관하여 ㅇ신부로 표시하였고, 그 신부가 주임신부로 재직 중인 성당을 부산 M성당으로 표시하였으며, 신부의 사진 및 성당 모습 등을 일부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이름 및 성당의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이전에 이미 부산일보의 보도 등을 통하여 원고의 성추행 논란이 많이 알려진 상태였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성당까지 방문한 상황에서, ‘신부’라는 신분, ‘부산 M성당’이라는 성당의 소재지 및 이니셜 뿐만 아니라, 성당의 전경

모습까지 방영된 것이라면, 위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중 적어도 ○○성당의 신자나 혹은 원고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신부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은 원고에 대한 보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 구성의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성추행 논란을 수사했던 경찰이 무혐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점,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람이 신부, 즉 원고일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방송하였고,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문제제기 차원에서 피해아동들의 주장을 먼저 방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원고가 아이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식으로 방송한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방송제목에 관하여 보건대, 제목이 “신의 이름을 더럽히다 -교회내 성폭력”으로 되어 있어 성당신부인 원고가 피해아동들을 성추행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또한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아동들이 자기가 다니던 성당유치원의 신부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장면, 성당을 찾아갔을 때 신부는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는 멘트와 함께, 원장수녀가 유치원 내부를 공개하면서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장면에 곧 이어 갑자기 피해아동들이 ‘쇠로 된 욕조’를 성추행장소로 지적한다는 내용과 함께 성당측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소가 있을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 이에 다시 성당을 찾아가 처음 취재 당시 성당측에서 공개하지 않은 2층 사제관 내부에,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욕실이 있고, 그 곳의 욕조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장면, 그후 피해 아동의 안내로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 아동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를 찾아가는 장면 및 6월 중순경에 이사를 왔다는 아파트 주인의 인터뷰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성추행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3월 내지 5월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장면, 피해아동 중 한 아이의 항문에 외상이 있는 사진과 피해아동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성추행 도구로 지목한 쇠파대를 클로즈업 하는 장면 등을 진행자의 해설과 함께 순차로 방영하여, 마치 피해아동들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가 고의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하고 있고, 원장수녀가 원고의 성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발각된 것처럼 처리하였는바,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송제목, 원고측 반론의 배치 방법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3월 내지 5월경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성당의 부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피해아동들을 2층 사제관 욕실 및 아파트 등에 데려와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홍○○은 경찰의 취재거부로 취재가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 및 피해아동들을 상담 혹은 진단했던 전문가, 성당관계자 등을 모두 취재한 후 전문가의 의견, 피해아동의 항문사진, 피해아동들이 구조가 복잡한 2층 사제관 욕실의 욕조의 재질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3월 내지 5월경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성당의 2층 사제관 욕실, 이 사건 아파트 등에서 성당 부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피해 아

동들을 쇠막대 등으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산성폭력상담소장이 성추행의 증거로 압수하여 달라며 제출하였던 쇠막대에서 피해아동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성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들로부터 성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치원 교사들, 원장수녀, □□성당 주임신부 조○○, ○○성당 수녀 박□□, 원고의 주변인물 중 아파트(이 사건 프로그램에 방영된 ○○아파트의 거주자는 원고와의 연관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에 거주하는 여성인 김△△, 신△△, 김◇◇ 등이 원고와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2층 사제관이나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원고와 함께 성추행을 하였다거나 혹은 원고와 성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피해아동들을 2층 사제관이나 아파트 등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자체를 목격한 사람조차 없는 점, 원고가 ‘바보’라고 불린 적이 있어서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추행과 관련된 피해아동들의 여러 진술 중 원고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진술이 있고,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성당 2층 사제관 욕실에 피해아동들이 ‘쇠로 된 큰 통 혹은 쇠로 된 욕조’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욕조가 존재한다는 정황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아동들을 성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홍○○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상당성의 판단기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더구나, 방송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한 후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서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는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 홍○○의 취재과정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74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이 2004. 7.초경 이 사건 성추행 논란을 제보받은 후 이 사건 성추행논란에 대한 부산일보의 기사 등 당시까지의 정황을 확인한 사실, 이후 같은 달 8. ○○성당을 찾아가서 성당 사무장인 증인 신○○과 원장수녀의 안내로 성추행장소로 지목된 유치원 내부 화장실, 다용도실, 유치원건물 2층의 예배당, 유치원 옆 건물에 있는 2층 사제관의 현관 등을 확인하고 성추행논란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된 사실, 이후 피해아동들에 대한 상담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피해아동들이 성추행당하였을 때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해자로 원고를 지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한 사실,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들이 쇠로 된 옥조가 있는 2층 사제관 내부의 옥실 및 아파트를 성추행장소로 지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성당을 찾아가 2층 사제관 옥실에 스테인레스로 된 옥조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가게 된 사실, 한편, 경찰이 성추행도구로 지적된 쇠막대기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아동을 진료했던 병원을 방문하여 최○○이 2003. 6. 27. 회음열상 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한 사실, 위와 같은 취재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이 성추행당하였음을 확신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방송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홍○○은 피해아동들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2층 사제관이 구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이 그 옥조의 재질을 기억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정확하게 지목하는 점 등 성추행장소와 관련된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아동의 항문외상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

고 이를 방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피해아동들을 진단하였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피해아동들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원고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있었던 이상, 피고 홍○○로서는 경찰이 간과한 증거관계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 자체 및 그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경찰의 무혐의의견을 신뢰할 수 없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선, 최○○의 회음열상의 경우, 위 회음열상이 원고의 성추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적어도 이 사건 성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쇠막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쇠막대에 의한 성추행의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산부인과에 최○○의 항문 등을 진단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진단결과 최○○의 생식기 주변에 상처나 염증이 보이지 않았던 점, 최○○이 회음열상 진단을 받은 위 2003. 6. 27.은 위와 같은 진단이 나온 이후로서 이 사건 성추행논란에 대한 경찰수사가 거의 종결되어 가는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음열상은 위 진단일 무렵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 홍○○로서는 위 회음열상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의 항문 등에 관한 진단은 없었는지에 대한 추가취재를 통하여 위 회음열상과 이 사건 성추행과의 연관성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노력 없이 위 최○○의 회음열상을 '원고'의 성추행가해사실에 대한 근거로 속단한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2층 사제관 옥조의 경우에도, 피해아동인 최○○ 및 그의 모 김○○이 2003. 5. 14.경 성당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참석하여 2층 사제관에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은 2층 사제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제관 내부의 옥실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 2003. 6. 5.자 현장재연 당시 다른 피해아동들도 2층 사제관 옥실을 지목하지 못한 점, 원고가 2층 사제관으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만일 피고 홍○○이 피해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쇠로 된 옥조'에 관한 얘기를 듣고 원고를 의심하게 된 것이라면, 단순히 2층 사제관 옥실에 스테인레스 옥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가해사실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원고 및 피해아동측 관계자들을 취재하여 경찰의 수사내용을 확인하거나 혹은 피고 홍○○ 스스로 성당관계자들을 만나 적어도 원고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몰래 피해아동들을 2층 사제관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자와 원고 혹은 ○○성당 사이에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홍○○은 피해아동이 이 사건 ○○아파트로 안내하는 과정을 그대로 촬영하여 마치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이 이 사건 성추행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이사한 것처럼 방송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위 아파트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위 아파트의 거주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홍○○으로서는 원고측 관계자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들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위 ○○아파트의 거주자와 원고 혹은 성당이 어떤 관계인지, 원고가 피해아동들을 언제 어떻게 위 ○○아파트로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 등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의 성추행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 없이 위 취재과정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방송한 결과에 이르렀고, ④ 나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방영된 것처럼, 피해아동들은 원고 이외에 공범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이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실, 수사결과 피해아동들로부터 성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수녀, 신부,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특별히 성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홍○○으로서도 취재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의 공범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당연히 피해아동들 및 원고측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아동들이 공범으로 지목한 자에 대한 경찰수사결과를 확인하고 스스로 그 공범들을 직접 만나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타당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경찰이 취재에 불응하여 이 사건 성추행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홍○○이 항문외상, 스테인레스의 육조 및 ○○아파트 등과 이 사건 성추행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취재를 다하지 못하였고, 피해아동들에 의하여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에 대한 취재조차 아니 한 채 원고가 피해아동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 이상, 피고 홍○○이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

가.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원고는, 성직자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및 편파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금 5억원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홍○○이 이 사건 성추행논란을 취재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일보 등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성추행논란이 널리 알려져 있던 점, 피해아동들이 원고를 성추행가해자로 지목하고, 피해아동들을 상담하였던 전문가들 역시 피해아동의 성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 홍○○으로서는 원고의 가해사실을 믿을 여지가 많았던 점, 피고 홍○○이 처음 성당을 방문할 당시, 원고측이 '쇠로 된 욕조'가 있는 2층 사제관 욕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머지 장소만 공개함으로써 피고 홍○○으로 하여금 원고측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 점, 실제로 피고 홍○○이 2차 방문에서 '쇠로 된 욕조'를 발견할 당시에도 원고측이 위 욕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 홍○○의 취재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피고 홍○○의 취재에 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성추행논란을 둘러싸고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금 3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다음날인 2003.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9.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1) 정정보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공사에게 정정방송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정방송문의 내용 및 방송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별지 정정방송요구문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 및 비중,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처음 방송되는 '추적 60분' 프로그

램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 과 같은 글자 크기로 '부산 M성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정방송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방송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방송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 공사가 위 '(1)' 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공사가 위 '(1)' 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위 '(1)' 항의 '추적 60분' 방송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의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동 영

판사 최 철 민

판사 이 의 영

〈별지〉 정정방송문

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2003. 7. 26. KBS-2TV를 통하여 방송된 '추적60분'에서 "신의 이름을 더럽히다 - 교회내 성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M성당 신부가 부설 유치원생 4명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 한국방송공사는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여 부산 M성당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이 정정방송문을 방송합니다. 끝. □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했던 본래 의미의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자 판결 (2005가합2739)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강○○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다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의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데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난 1992년 자신의 사연을 담은 “여자를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이후에,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들이 모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 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여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으로 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한 모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2739 손해배상(기)

원 고 : 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선 룡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2.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

대표이사 김 지 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규

변론종결 : 2005. 8. 18.

판결선고 : 2005. 9. 22.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0.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15.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7. 6.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그러한 사연을 내용으로 한 원고의 시집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문학수첩, 1994)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이하 피고 프로덕션이라 한다)은 원고의 삶을 소재로 하고 직접 원고를 출연시킨 “여자는 말한다”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였고, 피고 문화방송은 1996. 12. 14. 이를 방영하였다.

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문화방송 측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래보다 짧은 시간의 분량으로 편집하여 자사의 보험모집인들을 교육하거나 연수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보험사들의 보험모집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CD-ROM을 휴대하고 있던 노트북을 통하여 상영함으로써 생명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실제로 고객을 상대로 하여 자사의 보험상품 모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3. 12. 10.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PCA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630초 분량을 2,56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회사내부에서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프로덕션은 1997. 10. 16.부터 2004. 6.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이하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라 한다) 개인 및 회사들에게 635개를 14,857,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여 왔고, 그 중 보험사들에게는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재로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를 기획하여 배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 9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먼저 피고들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국내 30여 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다음으로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측의 인터넷사이트인 imbc 등에 게시하고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는 책자를 기획하여 원고의 불행한 가정사를 소재로 무단으로 판매, 유포시키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 및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 더 나아가 PCA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프로덕션으로부터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 동의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판매한 행위는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험영업에 이용한 보험사들이지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여기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해야 하는바,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되기 위하여는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 자체에 기여를 하여야 하고,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거나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한 데 불과한 자 등은 저작자로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하여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소재를 제공하여 피고 프로덕션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의 대상이 곧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프로덕션이고, 원고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원고와 피고 프로덕션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들이 국내 30여개에 달하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PCA 생명보험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PCA 생명보험 외의 보험사들이 구입한 것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이다), 또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 허락한 것은 피고 프로덕션이 아니라 피고 문화방송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 프로덕션이 피고 측 인터넷사이트인 imbc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장기간 게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원교육용으로 사용을 허락한 부분,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보험사들에 직원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까지 해 준 부분 및 이를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로까지 만들어 배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허락한 방송 외에 원고의 초상을 타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행위는 원고가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판매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사적 또는 가정용 이용을 위한 시청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소정의 대가를 받고 방송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복

제, 판매하는 것은 제작,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거나, 영리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영하는 데에 제공하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촬영 동의 외에 원고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직원교육용으로 630초 분량의 콘텐츠 사용 허락을 한 사실,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보험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여 이를 보험사들에 공급한 사실,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재로 출판사 한민사를 통하여 '여자를 말한다'라는 책자를 기획하여 판매, 유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초상은 어디까지나 1996. 12. 14. 당시의 방송과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방송, 예를 들어 통상적인 재방송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등의 사정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정도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보험사들에게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의 사연을 소재로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은 원고가 처음에 동의를 한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를 소재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책자로 제작한 부분도 또한 같다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을 소재로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보험회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책자로까지 만드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이 보험사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보험사에게 허락하거나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피고 문화방송이나, 다수의 개인, 법인들, 특히 보험사들에게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피고 프로덕션이 위 보험사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보험영업에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피고들은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원고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던 것이지만, 보험사들은 원고의 남편이 사망 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유족인 원고가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다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왜곡하여 보험영업활동에 사용하였는바, 피고 프로덕션이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하고, 피고 문화방송이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것과 보험사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 사이에는 보험사들이 보험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가 개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라 할 것이고, 이 부분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방조하였다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3호증, 갑 5 내지 10호증, 갑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손해액에 관하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원고의 초상이 촬영된 경위와 방송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된 경위, 태양, 정도와 그 공개범위 및 그로 인한 피고들의 영업적 이익 등이 사건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5,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은 PCA 생명보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2003. 12. 10.부터, 피고 프로덕션은 보험사에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마지막으로 판매한 2003. 4.(갑 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중 2003. 4.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지막으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였다) 이후인 2003. 5.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9. 2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 명 중

판사 이 흥 주

판사 이 수 민

□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코미디언으로서의 대중적 지명도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자 판결 (2004가단23532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백웅철 판사)는 2005년 9월 27일 코미디언 정OO가 주식회사 OOO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코미디언 정○○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자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 건 : 2004가단235324 손해배상

원 고 : 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문 건 영

피 고 :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창 국

변론종결 : 2005. 9. 15.

판결선고 : 2005. 9. 2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5. 9. 27.까지 연 5%, 2005.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8,18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코미디언으로서 MBC ‘코미디 하우스-노브레인 서바이벌’,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좋은 친구들', SBS '장길산', SBS '황태자의 첫사랑'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2003년 문화방송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코미디·시트콤 부문 최우수상,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남자 연예인이다.

(2) 피고는 캐릭터 디자인 및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제작과 공급을 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고 한다)를 제작한 후, 2003년 12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캐릭터를 이동통신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프리텔(KTF), LG텔레콤(LGT)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이 사건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만들어서 유행시킨 유행어인 "...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여 놓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4) 그런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자신이 원고에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측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캐릭터의 삭제를 요구하자, 2003년 12월 말경 피고는 이동통신회사의 위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 사건 캐릭터를 사용한 콘텐츠를 삭제하고, 2003. 12. 31. 소외회사에게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데 대하여 사과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이용한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이 사건 캐릭터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총 18,180,570원(=SKT 17,061,320원+KTF 881,600원+LGT 237,650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18,180,5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갑 9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19. 소외회사와 사이에 디지털 콘텐츠 사용 및 공급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가 유,무선 인터넷, ARS, 디지털 TV 등에서 원고의 초상권, 음성권, 동영상, 캐리커처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재가공 및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선금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원고와 소외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02년 1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사이에 장나라, 안재모, 하지원 등 유명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와 사이에, 피고가 각 연예인의 초상을 이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무선통신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그 대가로 판매 수익의 50 내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기획사에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멈 개런티(수익배분금을 위 미니멈 개런티에서 공제하되, 계약종료시까지의 수익배분금이 위 미니멈 개런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음)로 4,000,000원 내

지 5,000,000원을 피고가 소속 기획사에게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피고가 SKT, KTF, LGT 등 3개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매출액이 총 2,417,880원(=SKT 1,298,630원+KTF 881,600원+LGT 237,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4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6호증, 갑 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기간이 한달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점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총 18,180,570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캐릭터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매출액이 총 2,417,880원에 불과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3.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하여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소외회사에게 원고의 초상권, 음성권, 동영상, 캐리커처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재가공 및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0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5. 9.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05. 9.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 응 철

□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다루어진다면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자 판결 (2004가합4676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남○○(예명 : 유△△)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4년 6월 11일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 하에 제작한 프로그램이 원고에 관한 허상을 밝혀 비방하는 것을 주된 보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원고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래 알려진 원고의 모든 경력과 재능이 사실은 허위였던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 피디(PD)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제작·보도함에 있어 원고와 그 소속 회사 사이의 내부적 갈등문제를 주된 소재로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취재에 협조한 원고를 속이고 원고 개인의 허상만을 드러내는 방송만을 제작함으로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위반하고,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취재방향의 변화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전반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언론사들의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한 보도 태도

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한 경우에도 그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취지나 보도 목적을 속이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적극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서만 방송을 제작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피고 기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자 등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라든가 피고가 기존에 제작해 온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방송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이 원고가 처음에 의도한 것 역시 밝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취재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46767 손해배상(기)

원 고 : 남 ○ ○ (예명: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우

담당변호사 이 정 호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김 혜 라

변론종결 : 2005. 9. 2.

판결선고 : 2005. 10. 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오후 9시 피고 제작의 뉴스 프로그램 방영 후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 보도를 방송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라는 예명으로 의류패션 등의 홍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경에 서울 강남구 ○○동 소재 ○○○몰에 원고의 이름을 딴 '유△△ 공화국'이라는 의류매장이 개설되면서부터 각종 언론매체에 의하여 대중들에게 '20대 젊은 여성 사업가', '○○대학교를 자퇴하고 홀로 미국 유학 중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국내 독점수입계약 따낸 당찬 신세대 여성' '20대 여자 이사' 등으로 널리 알려지고, 특히 2004. 3. 1. KBS 2TV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300억 원의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했다'고 발언하였다(위 프로그램에서는 '○○대 박차고 1,300억원 투자유치 성공한 유△△'라는 자막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나. 피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매주 금요일마다 '신강균의 사실은'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왔는데, 2004. 6. 11.자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매스컴이 키운 신데렐라의 환상"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 및 기존에 원고에 관하여 다루었던 각종 언론사의 보도 내용 등에 대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측의 제보로 기획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기획사인 '△△21'과의 내부 갈등(부당계약 문제, 계속되는 월급 연체 등)을 폭로하고, 한편 '△△21'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원고가 더 이상 '유△△ 공화국'이라는 프랜차이즈 의류판매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계속하여 원고의 이름을 신뢰하고 '유△△ 공화

국'의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취재에 응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방송은 '공인의 책임이 이렇게 큰 건지 미처 몰랐어요.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원고의 발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종래 원고에 관하여 다루었던 신문, 잡지나 방송 등의 기사 및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원고가 오늘날의 유명 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고, 특히 위 '이홍렬, 박주미의 여유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300억 원의 해외자본유치에 성공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 방송 당시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현재는 모두 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결국 신문과 방송이 사실 확인 없이 경쟁하며 서로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그 소속 기획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획사와 연예인 약정을 맺고 있으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부당계약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마. 이 사건 방송에서 내보낸 인터뷰 장면 중 원고 스스로 '이사'의 직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가거나, 1,300억 원의 해외자본유치가 문서상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관계자들의 요구로 언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해외자본의 유치가 성사되지는 않았고 원고가 독점 수입했다는 미국의 패션브랜드는 이미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 관한 허상을 밝혀 비방하는 것을 주된 보도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원고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래 알려진 원고의 모든 경력과 재능이 사실은 허위였던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 작업조차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고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설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이 사건 방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주된 목적이 그 동안 언론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20대에 사업가로 성공한 신세대 스타라는 점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하는 보도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주로 공적 존재인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 영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전제된 사실관계인 '원고의 해외자본 1,300억 원 유치여부' '원고의 이사로서의 역할' 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표현의 정도에 있어서도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은 전반적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언론사들의 성급하고 센세이션에만 치중한 보도 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부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 피디(PD)들이 이 사건 방송을 제작·보도함에 있어 원고와 그 소속 회사 사이의 내부적 갈등문제를 주된 소재로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취재에 협조한 원고를 속이고 원고 개인의 허상만을 드러내는 방송만을 제작함으로써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위반하고,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취재방향의 변화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승낙한 경우에도 그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생활의 영역이 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방송이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은 원고 측의 제보로 기획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속 회사와의 내부갈등 문제를 폭로하고 더 이상 '유△△ 공화국' 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보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방송 제작을 위하여 원고, 원고의 매니저 소의 김□□, 원고가 소속된 기획사인 '△△21'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취재해 나감에 따라 원고가 '△△21'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의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원고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통역 등 실무적인 업무에만 종사하였으며, 위 '△△21'과 소위 '연예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등 등 종래 언론에 의해 알려져 있던 '신세대 경영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실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종전까지 언론사들에 의하여 왜곡 전달된 정보가 있다면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방송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원고나 '△△21'과 그간의 사업 내용의 실상(특히 해외자본 1,300억 원 유치부분)과 왜곡정보 형성에 대한 언론의 기여도 등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인터뷰 방향을 유도하고 취재를 집중하였던 사실, 나아가 피고의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성상 취재원의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대로만 방송이 기획될 수는 없고 사태의 진실을 파헤쳐서 이를 대중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원고에게 미리 고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방송의 말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와 '△△21'간의 부당계약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21' 관계자의 반박 발언 역시 방송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취지나 보도 목적을 속이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적극 요청하였다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서만 방송을 제작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는 피고 기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기자 등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라든가 피고가 기존에 제작해 온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앞으로 제작될 이 사건 방송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였을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이 원고가 처음에 의도한 것(원고와 기획사 간의 부당계약 문제, 원고가 '△△21'과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점 등) 역시 밝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취재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취재와 보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제작·방송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상의 신용, 성명권, 초상권, 브랜드 가치를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 가,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취재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기사에 제시된 사실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자 판결 (2004나84063)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18일 현대자동차노동

조합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조선일보사는 원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각 기사의 위법성 존재 여부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정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한 제1, 2기사와 제6, 7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인 피고가 원고의 정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1, 2기사에서의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그 기사에서의 의견 표명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으나 “제6, 7기사의 경우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사가 2003년 7월 28일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제하의 사실 및 8월 1일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제하의 기사 등 총 7건의 기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가·휴일일수가 165~177일이며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임금 구조가 자동차 가격 상승, 협력업체 납품가 하락 및 도산, 국제 경쟁력

하락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닌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 305 ~ 318면 참조.)

판결문

사 건 : 2004나8406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된 명칭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울산 북구 양정동 700

대표자 위원장 이 현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동 우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3. 선고 2003가합66450 판결

변론종결 : 2005. 9. 20.

판결선고 : 2005. 10. 18.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5.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

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 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2003년 7월경에는 약 39,000명의 조합원과 90명 정도의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현대자동차는 종업원 5만여 명을 거느리고 승용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장점유율, 수출액 등에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1위 기업이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1)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2003. 3.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양측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이 조정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2003. 6. 2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4.8%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7월 말경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마저 겹쳐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 7. 30.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부분파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2003. 8. 5.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었다.

(2) 합의 내용(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협약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다)

(가) 임금에 관련된 내용

기본급을 98,000원 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을, 2003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다만 200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도 경영목표 성과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150만 원이 각 지급되었으므로, 위 각 금액이 그대로 모두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이다)는 2003. 9. 1.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경영참여에 관련된 내용

현대자동차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원고와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다시 2003. 8. 1.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2003. 8. 5.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피고는 2003. 8. 7. 조선일보 A1면 하단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 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4면 하단에 “현대차 1인 연 1,000만 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 원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4-1 기재와 같은 기사(위 기사에는 구체적인 상승 내역을 나타낸 별지 4-2 표가 그려져 있다, 이하 위 표를 합하여 ‘제4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A26면 하단 ‘만물상’란에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6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으며, 다음날인 2003. 8. 9. 조선일보 A27면 ‘오피니언’란에 그 소속 이○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별지 7 기재와 같은 의견 기사(이하 ‘제7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2)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등 참조).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4)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

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1) 제1, 2기사

제1, 2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원고의 투쟁방향이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수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부분

피고는 제1기사에서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예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해행위’라고 평가한 데 이어,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원고가 임금협상보다도 주 5일제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

피고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도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제1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연 5,400만 원(제2기사에서는 같은 금액을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라고 하였다)」이라고 하고, 제2기사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고 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는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는

행위라거나 그로써 고임금을 쟁취하는 대가를 그들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종사자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2) 제3, 4기사

제3, 4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직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3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따른 휴일의 수 증가에 관하여,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남자 165일, 여자 17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휴일의 수는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산한 것(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를 추가 합산)'으로, 피고는 위 설명에서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4기사에서 임금인상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로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증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가액수인 1,000만 원의 내역을 '기본급 연간 약 120만 원(98,000원 × 12개월), 성과급 4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200%),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3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100%와 현금 100만 원),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따라 증가되는 휴일근무에 따른 특근수당 약 180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다(한편 피고는 위 기사 말미에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4,600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하여 두어 단체협약 타결 이전의 제1, 2기사의 보도에서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5,400만 원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2002년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는 위 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제5기사

피고는 제5기사에서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주 5일 근무에 합의하면서 1년에 남자 근로자

는 165일, 여자 근로자는 177일까지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충분히 놀면서 충분히 월급을 받는 지상천국을 우리 근로자라고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세계 자동차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현대자동차 노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거나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근로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근로의욕도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제6, 7기사

피고는 제6기사에서,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 아래 「노사협상 결과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이다. 평균 연봉도 5,000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단체협약에 따른 휴일의 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관하여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질편한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이는 소비자들과 하도급 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가 그 전철을 밟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제7기사에서는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 아래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로 임단협을 끝낸 현대자동차’ 라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지위를 ‘공무원을 능가하는 철밥통’으로 비유하고 「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정년보장까지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 이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많은 휴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결국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게 돌리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7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기사에서 사실로 적시된 휴일의 수와 임금수준에 관하여 보면, ① 휴일의 수와 연봉액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그에 관하여 ‘질편한 잔칫상’ 또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적시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가) 제1, 2기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구성된 원고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을 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3, 4기사는 주 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 등 2003년도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5기사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으나 이로써 그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6, 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보도에 따라 각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제3, 4, 5기사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의 존재 여부

앞서 2의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

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쟁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익성

위 각 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한 원고의 부분파업이 막바지에 이른 2003. 7. 28.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3. 8. 9.까지 사이에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는바, 신문사인 피고가 원고의 쟁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제1, 2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①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예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한다는 사실, ②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 ③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또는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연 5,400만 원이라는 사실, ④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 및 원고의 전임자 수에 비추어 위 ①, ②의 각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들이 2003년 8월 초경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3. 10. 20.경 위 각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와 반론보도를 합의함에 있어 “현대자동차의 14년(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이다) 근속 생산직의 평균적인 연봉은 4,288만 원이고, 위와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평일 10시간 근무 외에 휴일 근무까지 하여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며, 연 5,400만 원은 위 연봉에 복리후생비, 퇴직금 적립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다”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고 연 5,400만 원은 인건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시한 위 ③의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

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이원화하여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들 스스로 납품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기사 내용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 상승 요구로 증가된 비용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로 적시된 위 ④의 사실도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 2기사에서의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그 기사에서의 의견 표명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6, 7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되기 전인 2003년 2월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부장 이하)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월 3,224,394원이고, 생산직 근로자(25,338명으로, 그 중 95% 정도가 시급제이다)의 평균 근속연수인 14.1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346,628원(하루 10시간씩 1년 중 약 300일 동안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①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월 2,250,786원에다가 ②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을 합한 금액이다)인 사실,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된 후 평균 근속연수인 14.4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기본급에 평일 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하면 연 4,288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성과금과 격려금을 더하면 연 4,827만 원 정도인데, 위와 같은 임금을 얻기 위한 근무시간은 평일 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 4회(각 10시간 근무)에 의하여 '1년 중 302일 동안 하루 10시간씩'으로 연간 휴일 수는 63일(= 365일 - 302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제6, 7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제1, 2기사는 그 사실 적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는 제6, 7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의 보도 경위, 그 적시 내용과 표현방법, 조선일보의 영향력,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가 그 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박 인 식

판사 김 경 호

□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일 경우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1.자 판결 (2004가합1285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KBS가 2003년 12월 13일 「미디어 포커스」프로그램 “추적 발굴 한국 언론의 빅브라더 미국” 제하의 방송과 2004년 1월 10일 같은 프로그램 “시대의 특종인가, 희대의 오보인가” 제하의 방송을 통해 1971년 텍소 별장 모임과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신탁통치관련 보도, 경성일보 노조의 동아일보 복간 거부 이유 등을 보도하면서 허위로 또는 원고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해석해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친미세력 또는 친일세력, 독재권력과 야합하는 세력으로서 굴절된 역할을 해왔다는 인상을 주는 등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모욕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고,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국이 공개한 보고서, 역사학자와 언론학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각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언론이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한국의 유력언론들이 역사적으로 대미 편향적인 보도태도를 취하여 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원인과 배경을 따져보고, 특히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피고들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 그러한 논평의 전제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보도 태도를 발췌, 인용하는 과정에서 세부(細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12856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김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보도제작국 제작1부

3. 김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보도제작국 제작1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기 준

변론종결 : 2005. 9. 23.

판결선고 : 2005. 10. 21.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의 본방송 시작 직후 또는 “9시 뉴스” 프로그램의 종료 직후 화면 상단 부분에 통상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크기로 “미디어포커스의 동아일보사 관련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그 하단 부분에 통상 프로그램 자막글자와 같은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표시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하여금 원래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문의 발행, 판매,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방송사의 보도제작국 제작 1부 부주간으로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책임프로듀서인 사람이고, 피고 김□□은 피고 방송사의 기자로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취재, 방영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방송 및 그 내용

(1) 피고 방송사는 2003. 12. 13. KBS 1TV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에서 <추적발굴 한국 언론의 빅브라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도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 목록의 방송(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전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고 김상만 회장이 1971년경 주최한 덕소별장모임에 당시 미 대사였던 윌리엄 포터,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등이 참석했다. 미국의 영향이 셋기 때문에 친미정권이었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하여

우리 정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자주 편집권을 침해하는 기관원 출입금지 선언, 자유 언론 수호를 위한 투쟁 선포, 일선 기자들이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을 때 신문사 사주는 권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뒤로 손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측이 자유언론 운동을 벌이는 기자나 논설위원과는 다르게 미국 측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정권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활로를 모색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동아일보는 1945. 12. 27.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이 조선의 즉각 독립을 주장한 반면 소련은 신탁통치를 제안했다는 기사를 제1면에 실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반대로 오히려 미국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 갖고 간 원안이 신탁 통치안이었고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역제안을 했다.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국민들의 반탁운동을 자극하여 결국 남북분단으로 이어지게 했다.

- 동아일보가 광복 후에 복간을 하면서 인쇄시설이 없어서 총독부 기관지였던 경성일보의 인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회사의 노조원들이 동아일보는 친일 언론이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 군정이 강력하게 중용하여 경성일보 매일신보 인쇄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복간호를 내었다. 미 군정의 비호아래 다시 득세하게 된 친일 경력의 신문이다.

(2)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방송 중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관련 보도에 대해 반박 기사를 내보내자, 다시 2004. 1. 10. 같은 프로그램에서 <시대의 특종인가, 희대의 오보인가>라는 제목으로 “미디어포커스는 1945년 12월27일자 신탁통치 보도사례를 통해 당시 우파 언론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반박기사에서 자신들의 과거 기사가 나온 배경과 함께 전문가 기고를 통해 그 기사가 시대적 특종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 왜곡 기사를 시대적 특종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합동통신이 유포한 이 기사는 우파언론 대부분이 같은 날 보도했다. 민족의 자주독립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정파의 선전에만 치우쳤던 해방공간의 우리 언론들. 일제 잔재뿐 아니라 그 당시 굳어진 우리 언론의 병폐도 청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2목록의 방송(이하 “이 사건 제2방송”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덕소별장모임은 당시 귀국하는 윌리엄 포터 주한 미 대사에 대한 환송모임으로서 선거 후 여야의 갈등을 치유하고 초당적 정치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였고, 동아일보의 신탁통치관련 보도로 반탁운동 및 남북의 분단사태가 초래된 것이 아니며, 경성일보 인쇄노조

가 동아일보의 복간을 거부한 이유는 경성일보 노조가 좌익계열이었기 때문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파 민족주의 계열의 신문을 친일신문으로 매도하여 인쇄를 거부한 것이었는데, 피고들은 허위로 또는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 내용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해석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인 원고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친미세력 또는 친일세력, 독재권력과 야합하는 세력으로서 굴절된 역할을 해왔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적어도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모욕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방송은 원고의 균형성을 결여한 보도태도를 비평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그 표현의 정도 역시 공적인 존재인 원고가 수인할 한도 내의 비평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비평의 기초가 되는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을 왜곡한 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거나, 또한 언론 보도의 대미 편향성의 지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 사실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한편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

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고,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쉽사리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고, 특히 언론매체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평의 활성화는 언론의 부패를 막는 안전판이자 국민의 정보선택권을 넓혀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년 12월경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언론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해 왔으며, 그것이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음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 공보처(USIS)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각 지사에 내린 국가별 계획 및 평가보고서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각종 한국 언론인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이익과 이미지를 개선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언론 동향이나 언론인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왔었다는 사실, 윌리엄 포터는 동향보고서 전문에서 당시 김상만 회장이 자신에게 중앙정보부로부터 편집국장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우려하는 취지를 전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2003. 12. 22.자 동아일보기사를 통해 덕소별장모임을 권력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스스로의 자구 움직임이라고 평가한 사실, 반탁운동 및 남북분단에 관하여 비록 다른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이 모스크바3상회의 결과를 최초로 보도한 동아일보가 당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정반대로 보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반탁운동을 확산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방송 후 2003. 12. 24.자 동아일보에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한 김○○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는데, 김○○ 교수는 위 기고문에서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출판노조가 박헌영과 여운형이 이끄는 건준(建準)의 충직한 하부조직이었다. 그들은 좌파적 시각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친일보수반동의 기관지로 몰아붙였다. 사실 탁치문제는 국제정세에 조금만 덜 무지했던들 쉽게 알아차리고 좌우파가 공동의 대응책까지도 내세울 수 있는 사안이었다. 만약 좌파신문들이 소련에 사실 여부를 캐고 들었다면 소련의 탁치 추진설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보도는 그 시대의 최고의 특종이 되었다. 탁치를 추진하는 세력이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좌파가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해방공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보완하여 설명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동아일보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방송에 대한 반박 기사를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각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언론이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한국의 유력언론들이 역사적으로 대미 편향적인 보도태도를 취하여 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원인과 배경을 따져보고, 특히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들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 그러한 논평의 전제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보도 태도를 발췌, 인용하는 과정에서 세부(細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을 보도한 행위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 문제는 보다 풍부하고 성숙한 학문적 탐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언론기관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1, 2〉 방송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일부 보도 내용 중에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자 판결 (2004나8503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들이 일부 보도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여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2001년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정치권력 못지않은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언론권력’이 성역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란 제하의 시리즈 기획 기사를 연일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 262 ~ 292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4나85035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원고, 항소인 :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대표자 이사장 현 승 중

원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태 기

2. 최 ○ ○

3. 정 ○ ○

4. 고 ○ ○

5. 김 ○ ○

피고, 피항소인 : 6. 조 ○ ○

7. 고 □ □

8. 김 □ □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 영 환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1가합59144 판결

변 론 증 결 : 2005. 10. 18.

판 결 선 고 : 2005. 11. 29.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최○○, 정○○, 고○○, 김○○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최○○, 정○○, 고○○, 김○○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조○○, 고□□, 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피고 한겨
레신문 주식회사, 최○○, 정○○, 고○○, 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

로 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게 5억 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제1심 공동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에게 연대로 3억 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에 연대로 2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4.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8일 이내에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신문 ‘한겨레’에 별지 제1 내지 6 정정보도문을 같은 별지의 각 말미에 적은 게재일자, 게재위치, 활자크기 및 모양에 맞추어 각 게재하라.

3. 만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제2항 기재의 게재일자에 같은 항 기재 각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항 기재 정정보도문 1건마다 그 게재일자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제1심 공동원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은 당초 피고들이 일간신문 ‘한겨레’의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라는 시리즈 기획기사에서 마라톤 전용 훈련코스나 연수원 등의 건립과 관련된 위 재단법인의 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보도하여(‘한겨레’ 2001. 3. 6.자 및 같은 해 3. 10.자 각 1, 3면 기사) 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제1항의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이다) 및 별지 제5, 6 정정보도문의 각 게재와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 소 취 지 : 1.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최○○, 고○○, 김□□, 고□□, 김○○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게 1억 5천만 원,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최○○, 조○○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천만 원,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최○○, 조○○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게 5천만 원,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최○○, 정○○, 고○○, 김○○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게 2천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4. 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8일 이내에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간신문 ‘한겨레’에 별지 제1 내지 4 정정보도문을 같은 별지의 각 말미에 적은 게재일자, 게재위치, 활자크기 및 모양에 맞추어

각 게재하라. 만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위 게재일자에 위 각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정정보도문 1건마다 그 게재일자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최○○, 정○○, 고○○, 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5, 을 제4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원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신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하 '원고 인촌기념회'라 한다)는 망 김성수의 유지를 기리는 장학사업과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1966. 5월경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겨레신문사'라 한다)는 일간신문 '한겨레'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한겨레신문사가 별지 제1 내지 7 목록 기재 각 기사 및 사설과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만평을 보도할 당시에 피고 최○○는 대표이사, 피고 정○○는 이사 겸 논설주간, 피고 고○○와 조○○는 각 편집위원장, 피고 고□□은 사회부장, 피고 김□□은 사회부차장, 피고 김○○은 편집국 소속 직원(만평 담당)으로 피고 한겨레신문사에 각 재직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및 만평의 보도

(1)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 1. 11.경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전후하여 언론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세무조사, 소유구조 개선,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등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의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국세청은 같은 달 30.경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중앙일간신문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전격 발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2) 당시 야당 및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일부 유력 일간 신문사들은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조사가 언론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2001. 3. 6.부터

같은 해 4. 26.까지 그 동안 성역에 감춰진 언론권력의 일그러진 모습을 파헤침으로써 언론 개혁의 정당성을 제시한다는 의도 하에<심층해부 언론권력>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획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한겨레’를 통해 연일 게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언론개혁에 대한 정치권, 언론사, 시민단체 사이의 찬반논쟁이 가열되었다.

(3)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위 시리즈 기획 기사를 제1부 “무한권력 횡포”라는 주제 하에 10회에 걸쳐, 제2부 “추악한 과거”라는 주제 하에 9회에 걸쳐, 제3부 “언론개혁 해법”이라는 주제 하에 6회에 걸쳐 각 보도하였는바, 이 중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기사 및 만평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동아일보사 사옥에 관한 보도

위 시리즈 기획 기사 제1부 “무한권력 횡포” 중 2번째 기사는 “언론사 사옥은 성역?”이란 주제로 게재되었는바, 소주제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종로 광장 건설 문제 :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사 중 일부, 별지 제2 목록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제1 보도’라 한다)

② 지하철 1호선 노선변경 문제 : 별지 제1 목록 기재 기사 중 일부, 별지 제3 목록 기재 기사, 별지 제1 목록 기재 만평(이하 ‘이 사건 제2 보도 및 만평’이라 한다)

(나) 동아일보 친일 곡필에 관한 보도

위 시리즈 기획 기사 제2부 “추악한 과거”의 2번째 기사로 ‘동아일보의 친일 곡필’이란 주제로 게재된 별지 제4, 5 목록 기재 각 기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제3 보도’라 한다)

(다) 기타 보도

① 한겨레 뒷조사 의혹 관련 보도 : 별지 제6 목록 기재 기사(사설)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만평(이하 ‘이 사건 제4 보도 및 만평’이라 한다)

② 권·언 유착 관련 보도 : 별지 제7 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5 보도’라 한다)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

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는바, 단순한 의견만을 개진한 경우 이는 개인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져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어떤 의견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한편 한 두 컷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원고들이 문제삼는 기사의 요지

(1) 이 사건 제1 보도

(가) 서울시는, 1952년 3월경 발표된 '황토현 광장 고시안'에 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토지소유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1962년 '세종로 광장 고시안'으로 이를 변경하면서 위 광장의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으나, 위 '세종로 광장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부지는 여전히 광장 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 동아일보는 이를 무시한 채 1970년경 창간 50돌을 맞아 광화문에 새 사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 광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유의 여의도 1등급 노른자위 땅을 원고 동아일보사에게 불하해 주기로 하고, 원고 동아일보사로부터 광화문사옥의 여의도 이전을 약속 받았으나, 원고 동아일보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1999년 광화문에 새 사옥을 완공하였는바, 결국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만 없었다

면 세종로에 넓은 시민광장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2) 이 사건 제2 보도 및 만평

(가) 서울시는 1971년 종각에서 세종로 네거리를 거쳐 서울시청 앞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면서 당초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을 관통하는 노선안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옥을 허물 수 없다'고 버티는 원고 동아일보사의 주장을 꺾지 못하여 결국 노선을 수정하기로 했고, 따라서 이 구간은 현재와 같이 일반노선의 곡선반경(지름 250m)에 비하여 훨씬 급격한 지름 141m(청량리 방향의 상행선), 136m(하행선)의 곡선으로 변경되어, 시민들이 지하철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잦은 레일 교체로 열세가 낭비되고 있다.

(나) 별지 제1 목록 기재 만평은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을,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을 피하여 지하철이 거의 직각에 가까운 선로를 따라 "끼익" 소리를 내며 시청에서 종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위 지하철 승객의 "선로를 왜 이렇게 휘어 놔여. 이 위에 대통령이라도 사는 거야?"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암~ 밤의 대통령"이라고 대답하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3 보도

(가) 이길용 기자가 1936년 8월 25일 월계관을 쓴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수상 사진에서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내보낸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장이었던 송진우는 "성냥개비로 고무거각을 태워버렸다"고 이길용 기자를 크게 꾸짖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사주였던 김성수 역시 일장기 말소는 몰지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며 노여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동아일보는 이를 이유로 이길용 기자와 관련자들을 쫓아내었다.

(나) 김성수는 1943년 11월 매일신보의 연속물인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에 '대의에 죽을 때 - 황민 됄의 책무 크다'를 기고하는 등 여러 편의 극렬한 친일논설을 기고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다.

(4) 이 사건 제4 보도 및 만평

(가) 족벌신문들은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치부가 드러나자 그동안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괴롭혀온 수법대로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피고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뒷조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만평은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을, '족벌신문'이라고 이름을 적은 두 남자가 검은 색안경을 쓴 채 망원경으로 피고 한겨레신문사 건물을 정찰하고 있고, 그 옆에 '옛 안기부직원'이라고 지칭된 남자가 "오, 또 저것들 뒷조사해? 예전에 우리도 광고

탄압하고 별 수 다 써봤는데... 잘해봐. 파이팅!”이라고 말하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5) 이 사건 제5보도

(가)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이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선 뒤 동아일보에 유신반대 집회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하자, 박정희 정권이 기업들에게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동아일보 광고주들은 1974년 12월 16일부터 동아일보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하였다.

(나) 동아일보의 기자들은 광고란에 민주시민들의 광고게재를 부탁하는 ‘동아일보 신문 광고 피아르’를 신는 등 적극적으로 유신정권의 광고탄압에 맞서 싸우려 하였으나 당시 사장인 김상만은 위 광고탄압에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으며, 위와 같이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펼치며 유신정권에 맞서 싸운 기자들은 정권과 결탁한 사주에 의해 해직되어 동아일보를 떠났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보도, 제2 보도 및 만평에 관한 판단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과 관련된 이 사건 제1 보도, 제2 보도 및 만평의 내용은 서울시의 세종로 광장계획이 원고 동아일보사의 저항과 사옥 이전에 대한 약속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끝내 무산되었고, 원고 동아일보사의 압력으로 지하철 1호선이 사옥을 비껴가는 것으로 그 노선의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는 원고 동아일보사가 언론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결과라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3, 5 보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 보도는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주였던 김성수 등의 친일 의식이나 친일행적에 관한 사실을, 이 사건 제5 보도는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장 등이 유신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각 적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위 김성수는 친일파로, 일제 시대 민족의 대변자임을 자처해온 동아일보는 사실은 곡필아세한 친일신문이고, 원고 동아일보사의 경영진은 반민주적인 인사라는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와 원고 인촌기념회(이 사건 제3 보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이 인정된다(다만 망 김성수의 친일행적에 관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록 김성수가 동아일보의 창간을 주도하였을망정 동아일보는 창간된 순간부터 김성수의 의

지와는 무관하게 언론매체로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었고, 동아일보가 김성수나 그 후손들의 개인적인 소유물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고 동아일보는 동아일보를 발간하고 있는 주식회사인데, 현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주식을 김성수의 후손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인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적시, 비판한 것이 주식회사로서 법인인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박약하다. 그러나 원고 동아일보는 김성수에 대한 명예훼손이 곧 자신의 명예훼손으로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은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회적 평가도 저하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제4 보도 및 만평

(가) 이 사건 제4 보도 및 만평 중 별지 제6 목록 기재 사설은 ‘언론권력 극복과 한겨레’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서 언론권력의 횡포와 왜곡 등에 관하여 집중 보도한 ‘심층해부 언론권력’으로 인하여 족벌신문 사주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치부가 드러나자 족벌신문들이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한겨레에 대한 뒷조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한겨레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진정한 언론개혁이 이루어져 참된 언론이 탄생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만평의 내용은 위 2. 나. 의 (4)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보도와 만평이 원고 동아일보사를 특정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위 보도 및 만평에서 한겨레에 대한 뒷조사와 소송제기의 주체를 ‘족벌신문들’ 또는 ‘족벌신문’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족벌신문’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신문사의 소유와 신문의 편집, 발간이 분리되지 않아 소유자의 주관적인 견해나 가치관이 발간되는 신문의 보도 방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문사들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통상 독자들이 ‘족벌신문’이라고 하면 원고 동아일보사를 포함한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등의 주요 신문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동아일보사를 직접 지칭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련하여 위 사설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족벌신문 사주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치부가 드러나자 족벌신문들이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한겨레에 대한 뒷조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것인바, 위 내용 중 ‘소송을 제기한다’는 부분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사실의 적시

라고 보기 어렵고,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한겨레에 대한 뒷조사를 한다'는 부분은 비록 '뒷조사' 등의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위 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들의 이 사건 시리즈 기획기사에 대응하여 족벌신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피고 한겨레신문사나 그 소속기자들의 비리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를 보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족벌신문들의 대응에 피고 한겨레신문사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보도태도를 견지하겠다는 의견의 표명 내지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만평 역시 이 사건 각 보도의 대상이 된 신문사들을 과거 안기 부직원에 비유하는 등의 다소 부적절한 용어구사와 묘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의 전체적 의미 및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그 내용이 회화적인 묘사나 풍자를 속성으로 하는 만평의 표현한계를 일탈하거나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4 보도 및 만평은 원고 동아일보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동아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동아일보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보도, 제2 보도 및 만평, 제3, 5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위법성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보도, 제2 보도 및 만평, 제3, 5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고, 위 보도 및 만평의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취재 및 보도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기준

(1)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그것이 공적인 인물에 관한 사항이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바,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언론사간에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 자신 역시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며, 또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인하는 범위도 넓어야 할 것이고, 게다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어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이러한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기준을 심하게 이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공공성

이 사건 제1 보도, 제2 보도 및 만평, 제3, 5 보도는 동아일보의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이나 논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당초의 기획의도에서도 다소 벗어난 감이 없지 않으나, 위 각 보도 및 만평은 국내 중요 언론사의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비대화되는 언론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통하여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원고 동아일보사 경영진의 권력과의 유착관계 및 그 사주의 친일행적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위 각 보도 및 만평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이 사건 제1 보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시는 1952. 3. 25. 서울시내 전역에 걸친 도로계획을 고시하면서 32곳의 교통광장에 관한 계

획을 변경·고시하였는데, 이때 고시된 ‘황토현 광장 고시안’에 의하면 현 세종로 일대에 반지름 약 150m, 면적 70,700(150×150×3.14)㎡ 크기의 원형광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위 원형광장에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위 ‘황토현 광장 고시안’은 1962. 12. 8. 건설부 고시 제77호로 그 명칭이 ‘세종로 광장 고시안’으로 변경되면서 광장의 면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33,228㎡로 축소되었고, 이후 1978. 5. 8. 옛 중부 소방서 앞 부지 1,300㎡가 각각정리되어 위 ‘세종로 광장 고시안’의 광장계획에 포함된 사실 ③ 1980. 3. 7. ‘신문로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설부 고시안에 따라 세종로 일대의 기존 고시안이 모두 폐지된 사실, ④ 한편 원고 동아일보는 1970. 4. 2. 동아일보 창간 50돌을 맞아 광화문에 새 사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1971. 7. 20. 서울시에서 실시한 여의도 택지(현재 원고 동아일보사 문화센터 부지) 3,689평의 공개입찰에 응찰해 197,543,230원에 낙찰받았으며, 이후 1999년 구 동아일보사 사옥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의 동아미디어센터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보도의 핵심은 원고 동아일보사가 서울시에 언론권력의 압력을 행사하여 당초 계획된 광장건설계획을 수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서울시와 체결한 사옥 이전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광장건설계획이 무산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동아일보사가 서울시에 광장건설계획과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서울시와 여의도 택지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사옥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보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들은 이 사건 제1 보도에 앞서 1970년경 서울시 기획관리관과 1973년경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각 역임하여 당시의 광장건설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손○○을 찾아가 ‘황토현 광장 고시안’의 변경과 원고 동아일보사의 관련성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는바, 손○○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자신은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서울시의 기획관리관,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하여 당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1952년경 발표된 ‘황토현 광장 고시안’이 원고 동아일보사를 비롯한 지주들의 반대로 ‘세종로 광장 고시안’으로 변경됨으로써 광장의 면적이 절반 정도 줄었으나,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부지는 여전히 광장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1970년경 발표된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신축계획에 관하

여 위 광장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그 건축허가를 계속 보류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1970. 7. 20. 서울시 기획관리관으로 부임한 이후 원고 동아일보사로부터 위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고, 이에 원고 동아일보사에게 서울시 소유의 여의도 땅의 불하를 약속하면서 사옥이전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원고 동아일보사도 이러한 권유에 대체로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던 사실, 손〇〇은 월간 ‘국토정보(이후 그 이름이 ‘국토’로 변경되었다)’지의 1996년 11월호에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7 ‘전쟁복구계획(하)’라는 제목의 글을, 월간 ‘국토’지의 1997년 12월호에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20 ‘여의도 건설과 시가지가 형성되는 과정(하)’라는 제목의 글을 각 기고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손〇〇이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여 확인해준 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실, ‘황토현 광장 고시안’의 원형 광장 면적 70,700㎡을 그 중심점을 그대로 둔 채 ‘세종로 광장 고시안’ 광장 면적인 33,228㎡으로 줄여보면(반지름 150m의 원형 광장을 반지름 102m의 원형 광장으로 축소한 면적에 해당한다) 여전히 그 광장계획선에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부지가 포함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과 아직까지 변경된 세종로 광장의 고시안에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장건설계획이 무산된 후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직접 광장건설계획 등 도시계획을 담당한 실무자의 기고문 등을 참조하고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취재를 거쳐 보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독자들에게 원고 동아일보사가 자신의 소유인 사옥의 이전을 거부하며 광장건설계획에 반대한 사실을 마치 언론권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계획을 무산시킨 듯한 느낌을 주는 등의 일부 표현상의 잘못은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로 인하여 광장건설계획이 좌절되었다는 이 사건 제1 보도의 주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보도 및 만평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백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의 9.54km 구간은 1971. 4. 12. 착공된 이래 기존의 도로나 하천, 교량을 따라 개착식 공법(땅을 위에서 파는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 ② 지하철 1호선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곡선 반경은 청량리 방향의 상행선이 141m, 하행선이 136m인데, 이러한 곡선 반경은 현재 서울 지하철 1 내지 8호선 모든 구간을 통틀어 최급곡선 구간에 해당하느바, 이로 인하여 이 구간

에서는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레일의 마모가 심해 자주 레일을 교체해야 하는 사실, ③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기 직전인 1974. 7. 8. 공포된 서울특별시 지하철 1호선 건설규정(대통령령 제7201호)은 지하철 선로의 곡선반경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60m 이상(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35m까지 축소할 수 있다)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지하철 1호선의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곡선 반경을 160m로 할 경우 그 노선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밑을 통과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하철 1호선의 설계기준상 곡선반경은 기술적으로 160m 이상이어야 함에도,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곡선 반경은 약 140m의 급곡선으로 설계되어(지하철 1호선을 설계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곡선반경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될 즈음에 대통령령으로 실제 시공된 곡선반경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1호선이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을 우회하도록 시공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구간에서 과다한 소음이 발생하고 레일을 자주 교체하게 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위 급곡선의 설계 경위에 대한 피고들의 의혹제기는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청역~종각역 구간이 급곡선으로 설계됨에 있어 원고 동아일보사의 압력이 있었다고 위 보도 및 만평에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백○○,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 1989. 12월경에 발행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지'에 지하철 1호선의 선형 결정에 영향을 준 요소로 '광화문에서 동아일보 사옥을 피하기 위해 급곡선 삽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지하철건설 본부장으로서 재임한 김△△은 시청역~종각역 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곡선반경을 크게 그리며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옥 밑을 지나는 방안에 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임원과 수차례 협의를 한 사실,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들은 1977년부터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지하철 설계와 시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백○○을 찾아가 시청역~종각역 구간이 급곡선으로 건설된 경위에 관하여 취재를 하였는데, 위 백○○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설계기준, 지리적 여건, 당시의 기술 수준과 소요 공사비 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곡선반경을 160m로 설계하여 지하철 1호선이 원고 동아일보사 사옥 밑을 지나가는 것이 최적의 노선임에도,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로 인해 현재와 같이 급곡선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청역~종각역 구간의 선형이 당시 서울지하철 1호선의 설계기준(곡선반경 160m 이상)에 못 미치는 급곡선으로 결정된 데

에는 다른 여러 원인도 작용하였겠지만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들이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에 대하여 '압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 동아일보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킨 잘못은 있으나 원고 동아일보사가 지하철 1호선의 노선이 자신의 사육을 관통하는 것을 반대하여 위 노선이 현재와 같이 급곡선으로 설계되었다는 이 사건 제2 보도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가사 위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동아일보사가 지하철 1호선의 노선결정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압력'이라는 표현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국내 우수 언론사로서의 지위를 감안하여 이를 '압력'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하기 곤란한 부분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당시 지하철건설공사를 직접 담당할 실무자 등의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이 사건 보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보도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3 보도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동아일보 체육부 이길용 기자는 1936. 8. 25.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사건을 보도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수상 사진에서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지워 보도한 사실, ② 위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 일본 경찰은 이길용 기자 등 8명을 구속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원고 동아일보사의 책임을 물어 동아일보의 무기정간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 후 이길용 기자 등은 앞으로 언론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구속에서 풀려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 동아일보사에서 퇴직한 사실, ③ 위 무기정간처분을 받은 이후에 원고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장인 송진우는 조선총독부 등을 찾아가 일장기 말소 사건은 기자의 독단으로 저질러진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간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④ 이후 원고 동아일보사는 1937. 6. 2. 동아일보를 속간하면서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고 조선통치의 익찬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속간사고를 게재한 사실, ⑤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주였던 김성수 명의로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 황민 됄의 책무 크다'와 '문약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등의 친일논설이 1943년경 매일신보에 게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제하 손기정의 일장기 말소사건에 대하여 당시 동아일보사의 사주와 경영진들은 부정적인 의

식을 갖고 있었고 원고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주 및 경영진 등이 친일논설을 자주 게재하는 등 친일행각을 일삼은 사실이 있다는 이 사건 제3 보도의 주요한 내용은 대부분 진실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보도에 있어 일부 표현을 특히 문제 삼고 있는바, 보도내용에 일부 잘못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 하에서 그러한 표현의 잘못이 의도적인 것인지,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한 잘못된 표현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보도는 원고 동아일보사가 일제치하에서 민족을 대변하는 신문임을 자처하였고, 그러한 민족지로서의 항일운동으로 일장기 말소 사건을 들고 있으나, 사실상 일장기 말소 사건은 원고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주 김성수나 사장 송진우 등의 경영진과는 무관하게 이길용 기자 등 일선기자의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따라서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경영진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점과 원고 동아일보사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무기정간을 당한 이후에 신문을 다시 속간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속간사고를 내어 스스로 일본 언론임을 서약한 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들이 문제삼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우선 원고 동아일보사가 이길용 기자 등을 쫓아내었다고 한 부분은 피고들이 보도의 목적이나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들이 악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접한 사주 김성수의 생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원고 동아일보사가 1976년 발간한 '인촌 김성수전'을 인용하면서 그 일부 내용만을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위 보도를 함에 있어 친일언론을 다룬 '일제하 민족언론사론'(을 제23호증의 1), '역사와 언론인'(을 제23호증의 2) 등 여러 책자에서 '인촌 김성수전'의 일부를 발췌 인용한 것을 그대로 참조하면서 원전의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발췌 인용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 이상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김성수 명의로 게재된 친일논설은 김병규가 대필한 것으로 김성수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에 의하면 김병규가 친일논설들을 게재하

기에 앞서 김성수에게 글의 내용을 보이고, 김성수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를 매일신보에 게재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경위로 게재된 글은 김성수 자신의 글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들이 김성수가 위 친일논설을 기고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들이 위 보도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이들의 주장 사이의 틈은 이렇게 크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마치 김성수가 변명의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였고 후에 이러한 과거행적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였다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다소간 지나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 부분 보도의 주된 내용은 김성수가 일제 말기에 친일행각을 하였다는 점에 있고 위 표현은 이를 다소 과장하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들에게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제3 보도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제5 보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74. 10. 24. 원고 동아일보사 기자 180여 명이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떤 외부 간섭도 배제한다’는 내용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였고, 그 후 당시 유신정권하에서 금기시되던 유신반대시위 등에 관한 기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사실, ② 1974년 12월경부터 원고 동아일보사의 광고주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사태(이하 ‘광고탄압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동아일보는 광고란이 백지인 상태로 신문을 발행하고, 같은 달 27일경부터는 동아일보의 광고란에 독자들의 광고계재를 부탁하는 ‘동아일보 신문광고 피아르’를 게재하였으며, 이후 독자들로부터 성금기탁과 격려광고 의뢰가 쇄도한 사실, ③ 이러한 독자들의 성금과 격려광고가 줄을 이었으나 원고 동아일보사의 경영상태는 현저히 악화되었고, 이에 원고 동아일보는 경영악화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975. 2.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비 절감을 위해 임원 7명을 사임하도록 하고, 일부 사원들의 거둬진 사유문란 행동을 주시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조속히 사내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며, 불필요한 사업과 기구를 정비하여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④ 위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원고 동아일보는 같은 해 3. 8. 심의실, 편집국 기획부와 과학부, 출판국 출판부 등 3부 1실을 폐지하고 소속사원 18명을 해임한 사실, ⑤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사 분회’(이하 ‘기협분회’라 한다) 및 그 집행부 보좌기관인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은 사원들은 위와 같은 기구축소 및 해임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원고 동아일보사에 집단해고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동아일보는 같은 달 10.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 장윤환 전 기협분회장 등 2명을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해임한 사실, ⑥ 기협분회 소속 일부 기자들은 같은 달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동아일보사 경영진의 이러한 대량해고에 대하여 자유언론을 주장, 실천하는 기자들을 제거하려는 작업으로 비난하는 한편, 해직사원 20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결의한 후, 편집국, 공무국 등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원고 동아일보사의 사원은 크게 제작거부파와 제작참여파로 나누어진 사실, ⑦ 원고 동아일보는 같은 달 12. 밤 11시경 신문 및 방송의 제작이 제작거부파에 의해 파행으로 중단되자 기협분회 간부 전원을 포함한 17명을 추가로 해임하고, 같은 달 13. 동아일보 사고를 통해 '광고탄압'이라는 외우와 사원들이 하극상을 함부로 하는 내환 속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사실, ⑧ 원고 동아일보사가 같은 달 17. 농성중인 사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자, 강제해산 된 다음 날인 같은 달 18. 해임기자들과 제작거부 농성에 가담했던 사원들은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이하 '동아투위'라 한다)를 결성하고 출근을 거부한 채 매일 아침 회사 정문에 도열하여 시위를 벌였고, 이에 원고 동아일보는 같은 달 27. 제작거부파 직원 12명을 추가해임하고, 7명을 무기정직 시키면서 나머지 출근을 거부하는 사원들에게 같은 달 31.까지 출근할 것을 종용하는 서한을 발송한 사실, ⑨ 원고 동아일보는 같은 해 4. 11. 그 때까지 출근을 거부하는 사원 75명, 같은 달 15. 기협회장이던 김병익 기자, 같은 해 5. 1. 임부섭 기자에 대하여 각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원고 동아일보는 1975. 3. 8. 기구축소를 이유로 18명을 해임한 이래 같은 해 5. 1.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49명을 해임하였고, 84명에 대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사원들 대부분은 6개월이 지나도록 복직명령이 없어 해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5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 유신정권하에서 원고 동아일보사의 당시 경영진은 정권의 광고탄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게 한 기자들을 집단해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7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는 1947년에 원고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1972년부터 1977년까지 광고국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 한겨레신문사 소속 기자들은 김◇◇를 찾아가 '광고탄압사태'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는데, 김◇◇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1974년 12월경 광고탄압사태가 발생하여 원고 동아일보사는 광고란이 백지인 상태로 신문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어 동아일보의 광고란에 독자들의 광고게재를 부탁하는 ‘동아일보 신문광고 피아르’를 게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아르 광고가 나간 이후 당시 사장인 김상만은 자신을 불러 위 피아르 광고게재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다음부터는 판매국장의 결재를 받아 피아르 광고를 게재하라고 하였고, 만약 결재를 받지 않는다면 처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던 사실, 원고 동아일보사가 2000. 4. 1. 발행한〈민족과 더불어 80년〉이라는 동아일보 사사(社史)에는 광고탄압사태와 관련하여 “7개월에 걸친 광고 탄압은 자유언론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권의 ‘계획된 테러’였다. 온 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이 음모를 끝내 돌파하기는 했지만 동아일보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마지막 승리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 많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서슬 퍼런 유신 치하에서 햇불을 높이 지켜들었던 자유언론실천이 언론인의 무더기 해직으로 이어진 동아사태는 동아일보 역사, 아니 한국언론사를 통틀어 큰 비극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언론탄압에 저항한다는 대명제는 같으면서도 단지 투쟁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에 비롯된 불행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 2001. 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동아투위’ 관련 해직기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결정을 내린바 있고, ‘동아투위’는 현재까지도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원고 동아일보사의 대량 해고조치를 정권과 결탁하여 자유언론을 탄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광고탄압사태 당시 광고국장으로서 근무하였던 김◇◇는 광고탄압사태를 전후하여 원고 동아일보사의 경영진과 일선 기자 사이의 갈등 등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자라고 판단되는 점, 당시 원고 동아일보사가 광고탄압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초 18명을 해고한 것은 일단 적법한 경영상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2명을 추가로 해고하는 등 원고 동아일보사가 1975. 3. 8. 18명의 사원들을 해고한 이래 한 달여 동안 무려 130여 명의 직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무기정직처분을 내린 일련의 조치들은 광고탄압사태로 빚어진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하고 일부 과격한 사원들의 제작거부, 점거농성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최초의 의도가 변질되어 중국에는 사내 질서와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당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주도하며 유신정권과 긴장관계에 있던 기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결과를 낳게 된 점과 이러한 일련의 해고과정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장인 김상만이 유신정권의 광고탄압에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고, 나아가 원고 동아일보사가 위와 같은 대량 해고 조치를 단행한 것은 단순한 사내분규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5 보도의 주요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들이 일부 보도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다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여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도 및 만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보도 및 만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보도, 제2 보도 및 만평, 제3, 5 보도와 관련하여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 보도 및 만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겨레신문사, 최○○, 정○○, 고○○, 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동아일보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박 인 식
판사 김 경 호

〈별 지〉 기사목록,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

프로그램의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이 방송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조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2006. 1. 18.자 판결 (2004가합2605)

사실개요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건설 대표이사인 이○○과 이□□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 문화방송은 ○○건설에 1,000만 원, 원고 이○○에게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인 문화방송이 지난 2004년 3월 2일 「PD 수첩」프로그램 ‘친일파는 살아있다 3’ 제하의 방송에서 원고 이○○의 조부를 친일파였던 것처럼 보도하고, 원고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조부를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적극 참여한 것처럼 보도 하였으며, 피고 오마이뉴스 역시 원고들의 조부가 반일 항일 투쟁을 한 일이 없음에도 각종 비문에 허위로 기재해 조작하였다고 보도해 망인과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PD 수첩」프로그램 보도 가운데 망 이△△의 구체적인 친일 행위를 언급하거나 망 이△△이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취지는 망 이△△의 항일 운동 경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각종 비문에 그의 항일 운동 경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임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프로그램의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방송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망 이△△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망 이△△과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 이△△이 원고 이○○의 조부일 뿐 원고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문화방송이 굳이 ○○ 건설까지 거론하고 이로 인해 ○○ 건설을 비방하는 항의 메일이 상당

수 접수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 건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역시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각종 문헌자료, 국사학자의 인터뷰, 국가보훈처의 서훈 신청 심사 보류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망 김○○과 망 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오마이뉴스가 두 망인 사이의 관계를 허위로 조작해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2605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2. 이 ○ ○

3. 이 □ □

원고들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주 봉, 명 을 식, 강 병 열, 김 동 환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 긍 회

2.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 연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이 정 희, 윤 영 환, 탁 경 국

변론종결 : 2005. 12. 7.

판결선고 : 2006. 1. 18.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원고 이○○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2006. 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의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건설 명예회장 이○○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PD수첩을 진행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방영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그 다음날부터 이항완료일까지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에게 각 매일 1,0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10%는 위 피고가, 원고 이□□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와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 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의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건설 명예회장 이○○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PD수첩을 진행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4.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까지 「○○건설 명예회장 이○○ 조부 공적비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이△△ 관련 비문의 진상」이라는 부제목 아래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003. 12. 17.자 「독립투사의 공적비가 변조된 사연」의 제목의 글자와 같은 색상 및 크기로, 부제목과 본문은 통상의 글자 크기로 보도하여야 한다.

5. 만약 피고들이 위 제3, 4항의 각 기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들에게 매일 각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는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에게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2 내지 9,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23,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 내지 33호증, 을 제34호증의 1 내지 6, 을 제35, 36호증, 을 제37, 38호증의 각 1, 2,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 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는 1978. 10. 11.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이고, 원고 이○○는 원고 ○○건설의 설립자로서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아울러 망 이△△의 장손으로서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원고 이□□은 망 이△△의 증손으로 원고 이□□의 부인 망 이○○는 대전광역시 ○구청장을 역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오마이뉴스라 한다)는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 (ohmynews, 웹사이트 주소 <http://www.ohmynews.com>)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3) 대전애국지사승모회는 대전 지역 항일 운동가의 발굴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설립 당시부터 대전애국지사승모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이◇◇는 1987.경부터 원고 이○○와 알고 지내면서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해 주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망 김○○, 이△△의 생애 등

(1) 망 ○○ 김○○은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로서, 1892. 대전 서구 원정동에서 태어나 휘문의숙을 마치고 4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보은·공주에서 독립자금을 모으다가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의 경무국원이 되었으며, 귀국 후에는 대동단(大同團)을 조직해 의친왕을 상해로 탈출시키다 실패하기도 했고, 이후 상해와 한국을 드나들며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1934. 43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2) 망 이△△은 1877. 9. 충북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에서 출생하여 1926. 2. 6. 사망 하였던데, 그의 항일운동 경력에 관하여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다가 1994. 2. 28. 대전지역 일간신문인 중도일보에 향리 주민과 대전애국지사승모회의 노력으로 그동안 비밀로 부쳐졌던 망 이△△의 항일운동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가 처음 보도된 이래, 일간신문 등에 망 이△△의 항일운동 경력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를 설립한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한편 망 이△△의 후손들이 2000.경 국가보훈처에 충남대학교 역사·철학과 교수 등 5명의 추천 서명을 받아 망 이△△에 대한 독립유공자로의 서훈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거증자료가 신청인의 주장과 학자들의 추천, 일부 신문의 보도 내용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류하였다.

(3) 한편, 망 김○○과 망 이△△의 관계에 대하여 망 김○○이 망 이△△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또는 망 김○○과 망 이△△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이△△의 독려로 망 김○○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각종 비석의 설립 현황 및 그 내용

(1) 대전광역시는 1990. 12. 1. 대전 서구 원정동 소재 망 김○○의 묘소 옆에 공적비(이하 김○○ 공적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당시 그 비문에는 망 김○○과 망 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후 1997.경 대전애국지사승모회(회장 이◇◇)가 주도하여 망 김○○의 손자인 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다시 설치한 비문에는 “망 김○○이 후곡 의병 모집장 이△△ 선생 문하에서 10년을 수학하고 그 분의 주선으로 휘문의숙을 졸업하였다”, “기미년 3·1 만세운동 당시 대전 인동 지역의 주동자인 스승 망 이△△의 독려로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대전애국지사승모회는 1994. 3. 1. 대전 대덕구 소재 무궁화동산(비래동산)에 “기미 3·1 독립만세운동기념비”(이하 비래동산 3·1 운동 기념비라 한다)와 그 옆에 “기념비 건립기”를 새긴 표지석(이하 비래동산 기념비 건립기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비래동산 3·1 운동 기념비에는 “의병 이△△이 3·1 만세운동을 하였다”는 내용과 그 하단부에 “대전애국지사승모회 고문 이○○, 회장 이◇◇”라고 새겨져 있고, 비래동산 기념비 건립기에는 “이 지역에 만세운동을 지휘주도한 선열로는 의병인 창의군 일대 중군장 이△△ 선생이 있다”, “비룡리 송○○, 사한리 송○○, 송○○ 선생과 산내 양○○, 김○○, 김○○ 선생, 회덕 천도교인과 박○○, 이○○, 장○○ 선생 등이 만세운동의 주도자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의회(이하 한국독립유공자협의회라 한다) 대전·충청지회(회장 이●●)는 1997. 3. 대전 동구 효평동 소재 망 이△△의 묘 옆에 망 이△△의 의병활동과 만세운동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공적비(이하 이△△ 공적비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 비문에는 “대덕구 비래동산에 지금도 그 유적비가 남아 있어 옛시절을 말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청지부장 애국지사 이●● 세움”이라고 새겨져 있다.

(4) 또한 대전애국지사승모회는 2000. 11.경 대전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국비보조금 및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시설자금 지원을 받아 대전 서구 월평동 은평공원에 망 김○○, 이△△의 생애비 및 휘호비(이하 은평공원 생애비 및 휘호비라 한다)를 앞, 뒷면으로 제작하여 건립하였는데, 공원 큰 길에서 바라보면 앞면에 망 김○○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각 그 뒷면에는 망 이△△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위치해 있으나 그 거리가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에서 바라보면 불과2-3m 정도 떨어진 앞면에 망 이△△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각 그 뒷면에 망 김○○의 생애비와 휘호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망 김○○의 생애비와 휘호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벗어나 잔디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며, 망 김○○ 생애비 비문에는 “경술국치를 당하여 효평 의병장 이△△ 선생과 함께 민족계몽 국권회복을 펼쳤다”는 내용이, 망 이

△△ 생애비의 비문에는 “김○○ 선생과 함께 대전지방의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는 내용과 그 하단에 “대전애국지사숭모회”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대전애국지사숭모회는 당초 대전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에 “대전출신 애국지사 김○○ 선생 휘호 및 생애비 건립”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망 이△△의 생애비 및 휘호비 건립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 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의 요지

(1) 피고 오마이뉴스는 2003. 12. 22.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독립투사 이△△ 관련 비문의 진상」이라는 제목 및 “[심층추적] 가짜 독립운동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부제로 심○○ 기자가 2003. 12. 17. 작성한 별지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는 ① 망 김○○의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에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원고 이○○의 조부인 망 이△△의 확인되지 아니한 독립운동 행적이 무리하게 끼워 넣어져 있다는 내용, ② 또한 대전광역시장이 1990. 12. 1.경 대전 서구 원정동 소재 망 김○○의 묘소 옆에 설립한 김○○ 공적비 비문이 통째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 만든 비문에 “김○○이 후곡 의병 모집장 이△△ 선생 문하에서 10년을 수학하고 그 분의 주선으로 휘문의숙을 졸업하였고, 망 김○○이 이△△의 독려로 3·1 만세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에서는 망 이△△의 의병활동 및 만세시위 운동과 관련한 공훈록은 물론 의병참여자 명단에도 그와 같은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는 내용, ③ 망 김○○은 3·1 만세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대전 서구 효평동 소재 이△△ 공적비에 망 김○○이 망 이△△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 ④ 그런데 이△△은 다름 아닌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이○○ 전 국회의원(전 대전애국지사숭모회 고문)의 조부이고, 대전애국지사숭모회 이◇◇ 회장은 이 전 의원과 인척은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최근 몇 년 전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⑤ 이어 망 김○○의 손자인 김△△의 “모든 독립운동에 관한 문헌자료를 다 뒤져보아도 이△△에 대한 이름은 물론 조부(김○○)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후손들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가계를 미화하기 위하여 조부의 이름을 판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과 독립운동사와 김○○ 선생의 항일운동을 연구해 온 충남대 국사학과 김○○ 교수의 “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게 없고, 아직까지 김○○ 선생과 이△△씨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확인된 바 없다”는 인터뷰 내용, ⑥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2000.경 “거증자료는 신청인의 주장과

학자들의 추천, 중도일보 등 일부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전부여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에 대한 서훈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내용 및 ⑦ 은평공원에 설립된 김○○ 선생 생애비 건립사업은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이중 지원을 받았고, 대전광역시가 지원한 휘호비는 건립 절차마저 거치지 아니한 불법조형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의 요지

(1) 피고 문화방송은 2004. 3. 2. 23:05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적인 시사 고발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하여 「친일파는 살아있다. 3」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문화방송 소속의 최○○, 오○○, 조○○ 프로듀서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한 별지 “PD수첩 보도”와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이하 이 사건 PD수첩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PD수첩 보도는 ① 앞 부분에서 프로그램 주진행자인 최○○ 책임 프로듀서가 “PD수첩의 연중기획 「친일파는 살아있다, 제3부」. 오늘은 정리 안 된 역사로 인해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라고 언급한 다음에, ② 2004. 2.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의 극심한 대립 속에 수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표결처리되는 과정을 화면과 함께 보여 주고, ③ 이어 진주시 명석면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한 면사 편찬 과정에서 친일파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④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내용, ⑤ 망 김○○, 이△△의 묘비와 관련하여 망 이△△이 애국지사로서 둔갑하였다는 내용, ⑥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친일파들이 3·1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고 ⑦ 마지막 부분에 주진행자가 “누더기가 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통과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것 저것 떼어버린 이 법이 오히려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고 진상규명을 막는 법이 아니냐는 걱정도 들립니다. 새 법에 따른 역사청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밥그릇을 잘 챙겼다는 16대 국회, 역사는 얼마나 잘 챙겼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는 말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망 김○○, 이△△과 관련된 부분은 위 ④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보도의 끝부분에서 독립유공자 이○○의 증손인 이○○의 “저는 지금 죽어도 땅 한 평 없어요, 문힐 곳도 없습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자살하려고 몇 번도 마음먹었죠. 저희 집 한 대만 일본에 고개 숙여서 잘 살고 외국유학 가고, 뭐 안 하겠습니까? 삼대 중에 한 대만 일본에 고개 숙였으면, 일본 사람한테 고개 숙였으면 …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어쩌면 …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 하도 어려우니까”라는 인터뷰 바로 다음에, 조○○ 프로듀서의 “그나마 단 하나의 보답인 명예마저도 돈과 권력 앞에 위협받고 있습니다”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데, 망 김○○의 손자인 김△△의 “김○○ 생애비 및 휘호비의 앞면에 영똥하게 이△△ 생애비 및 휘호비가 끼어들어 있다”는 인터뷰 내용과 조○○ 프로듀서의 “김○○ 선생을 밀어내고 휘호비와 생애비의 앞면을 차지한 ○○ 이△△은 누구일까? ○○건설 명예회장인 원고 이○○ 전 의원과 은평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 대전 ○구청장 이○○ 형제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는 언급과 함께 망 이○○(2000. 8. 18. 사망)가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화면을 방영한 다음, 이어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원고 이○○와 인터뷰, 각종 비문 설립 및 보수를 주도한 대전애국지사숭모회 회장 이◇◇와 인터뷰, 충남 대학교에서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김○○ 교수와 인터뷰,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이○○과 인터뷰 등을 보도하였으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주진행자인 최○○ 책임프로듀서의 “네, 증인도 없고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고 묘비까지 바뀌서 애국지사로 둔갑시키는 현실,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 피디!, 지금 이런 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는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않죠?”라는 물음과 조○○ 프로듀서의 “예,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었던 관계로 친일 혐의자가 독립유공자로 바뀐 예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훈장 수여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정기를 좌우하는 문화예술계까지 확대되어서 친일 청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는 대답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친일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3·1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내용의 다음 보도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PD수첩 보도의 전체 프로그램 편성 시간 중 망 김○○, 이△△과 관련된 보도는 대략 10분 정도를 차지하였다.

(4) 이 사건 PD수첩 방송 보도 직후부터 원고 ○○건설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비석을 빨리 철거하라는 내용, 원고 이○○를 친일파의 후손이라면서 비방하는 내용, 원고 이○○가 돈으로 친일파를 독립운동가로 변신시켰다는 내용 등 원고 ○○건설, 이○○를 비방하는 항의 메일이 상당수 접수되었다.

2.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

가. 망 이△△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1) 주장

원고 ○○건설, 이○○는, 망 이△△이 반일 항쟁 의병으로 활동하고 3·1 만세운동 당시 대전 인동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총상을 입고 고향의 움막에 숨어 지내다가 사망하

였을 뿐 결코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문화방송은 프로그램의 제목 및 진행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마치 망 이△△이 친일파였던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 또는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 또는 신문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또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및 기사 내용이 시청자 또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PD수첩 보도에서 망 이△△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PD수첩 보도 가운데 망 이△△의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언급하는 내용 또는 망 이△△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망 이△△과 관련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망 이△△의 항일운동경력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각종 비문에 그의 항일운동경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PD수첩 보도의 제목 「친일파는 살아있다, 제3부」 및 앞 부분에서 프로그램 주 진행자의 “오늘은 정리 안 된 역사로 인해 선과 악이 뒤바뀌는 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라는 언급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내용 전부가 과거 친일파들이 오늘날 독립유공자로 뒤바뀌어 있는 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인상을 가지도록 함에 충분하고, 실제로도 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이 친일파들의 행적과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시도한 면사 편찬 과정에서 친일파에 대한 기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 문화·예술 분야에서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망 이△△과 관련된 부분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보도 바로 다음에 방

영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과 망 이△△의 후손들의 삶을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나아가 그 보도 마지막 부분에는 주진행자의 “네, 증인도 없고 모두의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고 묘비까지 바뀌서 애국지사로 둔갑시키는 현실, 역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 피디!, ‘지금 이런 식으로 친일파가’, 심지어는 친일파가 애국지사로 둔갑하는 사례, 적지 않죠?” 라는 물음과 조○○ 프로듀서의 “예,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었던 관계로 친일 혐의자가 독립유공자로 바뀐 예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훈장 수여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정기를 좌우하는 문화예술계까지 확대되어서 친일 청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는 대답으로 그 다음 보도 내용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친일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3·1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으로 독립유공자로 둔갑하였다는 보도로 이어지는데, 주진행자의 위 물음 중에 나오는 ‘이런식으로 친일파’라는 표현은 바로 앞서 보도한 망 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표현은 망 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방영된 내용의 김○○ 화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현 바로 다음의 ‘심지어는 친일파가’라는 부분의 표현은 피고 문화방송의 주장과 같이 바로 뒤에 보도되는 내용과 연결시켜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친일파’라는 표현까지 바로 뒤에 보도되는 내용과 관련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실제 이 사건 PD수첩 보도 직후 원고 ○○건설의 홈페이지에는 원고 이○○를 친일파의 후손이라면서 비방하는 내용의 항의 메일이 상당수 접수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는 그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방송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망 이△△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망 이△△ 및 그 후손인 원고 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자연인인 망 이△△ 및 그 후손인 원고 이○○ 이외에 법인인 원고 ○○건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도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비록 적시된 명예훼손적 사실이 원고 ○○건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 겸 대표이사인 원고 이○○의 조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하지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망 이△△은 원고 이○○의 조부일 뿐 원고 ○○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건설 역시 망 이△△의 공적비 건립을 후원하는 등으로 망 이△△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내

세웠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그럼에도 PD수첩 제작진들은 이 사건 PD수첩 보도에서 망 이△△이 누구인지를 설명함에 있어 그 손자인 원고 이○○가 통상 공인(公人)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을 적시하더라도 전체적인 방영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굳이 망 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 ○○건설을 거론하면서 원고 이○○가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이라고 소개하고, 나아가 원고 이○○가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 내부와 함께 여러 차례 방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PD수첩 보도 직후 원고 ○○건설의 홈페이지에 원고 이○○ 및 원고 ○○건설을 비방하는 취지의 항의 메일이 상당수 접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 ○○건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역시 저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 이○○ 및 망 이○○ 형제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건립에 관여하였다는 부분

(1) 주장

원고 ○○건설, 이○○, 이□□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대전애국지사숭모회 회장 이◇◇와 망 김○○의 후손들이 협의하여 건립하였을 뿐, 원고 ○○건설, 이○○와 망 이○○가 그 건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마치 전직 국회의원이자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원고 이○○와 전직 구청장인 망 이○○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적극 관여한 것처럼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 ○○건설, 이○○ 및 망 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담당 프로듀서가 “김○○ 선생을 밀어내고 휘호비와 생애비의 앞면을 차지한 ○○ 이△△은 누구일까? ○○건설 명예회장인 이○○ 전 의원과 은평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 대전 ○구청장 이○○ 형제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화면으로 망 이○○가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여 준 부분은, 망 이△△의 후손들이 다름 아닌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이자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고 이○○와 대전광역시 ○구청장을 역임한 망 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원고 이○○와 망 이○○가 실제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자신들의 조부인 망 이△△을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다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원고 이○○와 망 이○○ 형제가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을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로써 원고 ○○건설, 이○○ 및 망 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 문화방송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PD수첩 보도 내용은 모두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 문화방송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PD수첩 보도의 주된 취지는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독립운동경력을 허위로 지어낼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는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즉 원고 ○○건설의 명예회장인 원고 이○○와 망 이○○가 실제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자신들의 조부인 망 이△△을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보도가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국가보훈처가 2000.경 망 이△△에 대한 서훈신청에 대하여 자료의 불충분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는 등 망 이△△이 은평공원 생애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항일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실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보도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원고 이○○의 “거기다 비를 세우는데 우리 할아버지 것도 같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시의회에서 승인사항이고 시예산으로 하는 거다. 혹시 모자라면 경주 김씨들이나 서구청에 얘기하겠노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서 내가 끄덕거리 준 것 뿐이에요”라는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이○○는 사전에 이△△의 휘호비 및 생애비가 건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해 주었던 점, ③ 이어 조○○ 프로듀서가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사업주체를 대전애국지사승모회라고 설명하였고, 대전애국지사승모회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내 판단에는 한 사람의 와비를 하는 것보다도 전에 내가 조사해왔던 사항을 해서 …”라고 밝히고 있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사업주체가 원고 이○○나 망 이○○가 아니라 대전애국지사승모회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이○○와 망 이○○가 자신들의 조부인 망 이△△을 독립운동가로 내세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광복회 몰래 이△△의 공적비를 건립하였다는 부분

(1) 주장

원고들은, 대전 동구 효평동 소재 이△△ 공적비는 한국독립유공자협의회 대전·충청지회(회장 이●●)가 1997. 3. 건립한 것이고, 망 이●●은 위 공적비를 건립한 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광복회는 일제에 항거한 광복군 출신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한국독립유공자협의회와는 엄연히 다른 단체이고, 아울러 이△△ 공적비의 제막식에는 다수의 광복회원이 참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막식에 광복회 회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원고들이 광복회 몰래 공적비를 건립한 것처럼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조○○ 프로듀서가 “김○○ 선생의 묘비가 바뀔무렵 대전시 효평동에 독립운동가 이△△ 선생의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지방신문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는데 대전시장과 ○구청장, 원고 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로 다음에, 원고 이○○ : “이●●씨가 세운 겁니다”, 조○○ 프로듀서 : “그 분 혼자서요? 거기 승모회 ...”, 원고 이○○ : “그 사람이 혼자 세운 게 아니라, ‘광복군회 회장 이●●’ 이라고 써 넣으니까 광복군회에서 세운 거죠, 그 분들이 내 신세를 많이 진 건 사실이니까 알아서 세운 겁니다. 내가 돈 한 푼도 낸 일이 없습니다”라고 원고 이○○와 조○○ 프로듀서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당시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회원들은 이△△ 공적비를 세운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내용의 조○○ 프로듀서의 언급과 동일한 취지의 이○○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의 인터뷰가 방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이△△ 공적비는 광복회가 건립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남지부가 건립을 주도한 사실, 그 비문 하단에도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전·충청지부장 애국지사 이●● 세움”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이●●은 위 공적비 설립 이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을 역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원고 이○○가 위 인터뷰 당시 공적비 설립 주체를 혼동하여 광복회가 이△△ 공적비의 설립을 주도한 것처럼 대답하는 바람

에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광복회 대전·충남지부가 이△△ 공적비 건립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을 들어 원고들이 광복회 몰래 이△△ 공적비의 건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각종 비문에 망 김○○, 이△△의 관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부분

(1) 주장

원고들은, 망 김○○은 1892.생으로 휘문의숙에 입학한 1913.에는 만 21세였고, 그 이전에 향리에서 망 이△△이 수학한 망 이석교 선생의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김○○ 선생은 신교육을 받으러 휘문의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10년간 한학을 수학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도하여 마치 원고들이 비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의 점, 즉 ①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조○○ 프로듀서가 “대전 서구 원정동에 있는 김○○ 선생의 묘비에는 이△△의 독립운동 사실이 기록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묘비는 지난 97년 숭모회 이◇◇ 회장이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한 비에는 김○○ 선생이 이△△의 문하에서 10년간 공부를 했고, 3·1 운동 당시 대전 지역의 주동자인 스승 이△△의 독려로 동참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래의 비문에는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어 장손도 모르게 비문이 바뀐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점, ②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김○○ 교수가 망 김○○이 향리에서 10년간 한학을 수학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터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 김○○이 망 이△△과 함께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학을 수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 공적비의 비문에 망 김○○이 망 이△△의 문하에서 10년간 공부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김○○과 망 이△△의 관계에 대하여 망 김○○이 망 이△△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또는 망 이△△과 김○○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이△△의 독려로 망 김○○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허위 사실의 보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망 이△△이 친일파라는 듯한 인상을 준 보도 내용은 망 이△△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위 보도와 관련하여 망 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 ○○건설의 상호가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원고 ○○건설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그로 인하여 원고 ○○건설, 이○○가 입은 사회적 평가에 대한 손상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방송 시점 및 시간, 피고 문화방송이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PD수첩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 이○○의 나이와 경력 및 사회적 지위, 그리고 원고 ○○건설의 규모와 인지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로 원고 ○○건설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 이○○에 대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 ○○건설에게 1,000만 원, 원고 이○○에게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4. 3. 2.부터 피고 문화방송이 이행의무의 준비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건설, 이○○는, 피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 ○○건설, 이○○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건설, 이○○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문화방송에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방송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PD수첩 보도 중 명예훼손의 내용 및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손해배상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 PD수첩의 본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건설 명예회장 이○○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PD수첩을 진행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

으로 방송하도록 정하고, 아울러 원고 ○○건설, 이○○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정정보도문을 방영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 원고들에게 각 매일 10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건설, 이○○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

가. 망 이△△이 반일 항일투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종 비문에 망 김○○, 이△△의 관계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반일 항일투쟁 경력을 조작하였다는 부분

(1) 주장

원고 ○○건설, 이○○는, 망 이△△이 반일 항일투쟁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또한 망 김○○이 망 이△△과 향리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고 이후 3·1 만세운동에도 함께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는 위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울러 위 원고들이 마치 각종 비문에 망 김○○과 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여 망 이△△의 반일 항일투쟁 경력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망 이△△ 및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김△△이 “모든 독립운동에 관한 문헌자료를 다 뒤져보아도 이△△에 대한 이름은 물론 조부(김○○)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후손들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가계를 미화하기 위해 조부의 이름을 판 것”이라고 인터뷰한 내용, 독립운동사와 김○○ 선생의 항일운동을 연구해 온 김○○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가 “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게 없다. 아직까지 김○○ 선생과 이△△씨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고 확인된 바 없다”고 인터뷰한 내용 및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이 독립운동가라는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서훈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망 이△△과 망 김○○ 사이에 함께 한학을 공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고, 나아가 망 이△△이 반일 항일투쟁을 하였다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거증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망 이△△에 대한 서훈신청이 보류된 점 및 망 김○○과 망 이△△의 관

계에 대하여 망 김○○이 망 이△△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거나 또는 망 이△△과 망 김○○이 같은 스승 문하에서 함께 한학을 수학하였다거나, 또는 망 이△△의 독려로 망 김○○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두 인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과 관련한 부분

(1) 주장

원고 ○○건설, 이○○는,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①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원금은 “애국지사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망 김○○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망 이△△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하였다고 허위 보도하였고, ②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앞, 뒷면의 구분이 없고, 대로에서 보면 망 김○○ 선생의 휘호 부분이 전면인데도 망 이△△의 글씨가 앞면에 새겨져 있다고 허위 보도하였으며, ③ 대전애국지사승모회 회장인 이◇◇는 망 김○○의 휘호비 외에 흉상까지 건립해 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는데도, 이◇◇가 위와 같은 약속을 어겼다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 ○○건설, 이○○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애국지사승모회는 2000. 11.경 대전광역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 사실, 그런데 대전애국지사승모회는 당초 대전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그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에 “대전출신 애국지사 김○○ 선생 휘호 및 생애비 건립”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망 이△△의 휘호비 및 생애비 건립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김○○의 휘호비 및 생애비를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어 위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는 앞, 뒷면으로 제작하여 건립되었는데, 공원 큰 길에서는 앞면에 망 김○○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각 그 뒷면에는 망 이△△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보이지만 그 거리가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에서 바라보면 불과 2-

3m 정도 떨어진 앞면에 망 이△△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각 그 뒷면에 망 김○○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망 김○○의 휘호비와 생애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벗어나 잔디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휘호비 및 생애비의 내용을 읽어 볼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망 이△△의 휘호비와 생애비가 전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③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현장에는 대전애국지사승모회 이◇◇ 회장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김○○ 선생의 공적을 기릴 조형물(흉상)을 세운다며 김씨 가족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유적비 건립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그런데 유적비가 서 있던 은평공원에 도착한 김씨 부부는 고개를 갸우뚱해야만 했다. 현장에 김○○ 선생의 흉상이 없었기 때문이다”는 부분은 대전애국지사승모회 이◇◇ 회장이 망 김○○의 휘호비 이외에 흉상까지 건립해 주기로 약속하고 김△△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기사는 은평공원 휘호비 및 생애비의 건립을 주도한 이◇◇와 관련된 보도 내용으로 이로 인해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김○○ 공적비와 관련한 부분

(1) 주장

원고 ○○건설, 이○○는, 대전 서구 원정동 소재 망 김○○의 묘소 옆에 설치된 공적비는 1997.경 대전애국지사승모회 회장 이◇◇와 망 김○○의 손자 김□□이 협의하에 설치한 것인데도, 위 원고들과 이◇◇가 망 김○○의 후손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비문의 내용을 몰래 바꿨다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원고 ○○건설,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 중 “공적비 비문이 누군가에 의해 통째로 뒤바뀌어 있었다. 원래 있던 대전시장이 세운 원판 비문을 떼어 내고 전혀 다른 내용의 비문을 새겨 붙여 놓은 것”이라는 부분, “새 비문에는 이△△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김씨의 조부가 후곡 의병 모집장 이△△ 선생 문하에서 10년을 수학하고 그 분의 주선으로 휘문의숙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부분, “이와 관련 대전애국지사승모회 이 회장

은 지난 1997. 비문 받침대를 높이면서 나와 김△△의 남동생 김□□(2000. 사망)의 합의로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기사의 보도 내용의 주된 취지는 공적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는 것일 뿐, 대전애국지사숭모회 회장 이◇◇가 유족들 몰래 비문을 교체하였다는 보도 내용이라거나 나아가 원고 ○○건설, 이○○가 위와 같이 몰래 비문을 교체하는 데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하여 원고 ○○건설, 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건설, 이○○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건설, 이○○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오마이뉴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 병 렬

판사 김 우 현

판사 김 신

〈별지 1〉 정정보도문

- 제 목 : ○○건설명예회장 이○○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2004. 3. 2.자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라는 고발프로그램에서 ○○건설산업주식회사 명예회장인 전 국회의원 이○○의 조부 이△△이 친일파로서 활동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으나, 이△△ 선생이 친일 활동을 한 사실은 없기에 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 제 목 : ○○건설명예회장 이○○ 조부 관련 '친일파는 살아있다'에 대한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2004. 3. 2.자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라는 고발프로그램에서 ○○건설산업주식회사 명예회장인 전 국회의원 이○○의 조부 이△△이 친일파로서 의병활동이나 3·1 만세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념비나 공적비 등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묘비까지 바꿔 애국지사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이 친일행동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기념비 또는 공적비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의회 대전충남지회장 이●●, 대전애국지사 송모회장 이◇◇ 등이 유족과 주변 사람의 증언을 청취하고 유품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거쳐 확인된 사실을 비문에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생의 휘호비가 세워진 대전 은평공원의 관리자가 대전광역시 ○구청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구청장을 역임한 선생의 손자인 이○○씨는 휘호비가 건립되기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휘호비 건립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대전지역의 독립운동가 김○○ 선생은 21세때인 1913년에 휘문의숙을 입학하였고, 입학하기 전에는 한학을 수학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김○○ 선생이 이△△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배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

〈별지 3〉 정정보도문

- 제 목 : ○○건설 명예회장 이○○ 조부 공적비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보는 2003. 12. 17. 인터넷 뉴스에 '독립투사의 공적비가 변조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건설산업 주식회사 명예회장인 전 국회의원 이○○의 조부 이△△이 의병활동과 3·1 만세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독립운동가 김○○ 선생의 묘비 등에 김○○ 선생의 유족들 몰래 그 사실을 끼워 넣어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묘비와 기념비, 공적비 등에는 사단법인 독립유공자협의회 대전충청지회장 이●●, 대전애국지사송모회장 이◇◇ 등이 증언청취, 현장 및 유품확인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수집된 내용이 기록된 것이고, 김○○ 선생의 묘비와 휘호비도 그 손자 김□□과 협의 하에 내용을 기록하여 세워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대전애국지사송모회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애국지사 휘호 및 생애비' 건립사업이었으므로 김○○ 선생과 이△△ 선생의 휘호비를 건립하는데 사용하여도 무방한 사실도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끝. □

**보도 내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8.자 판결 (2004가단25680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3단독 재판부(판사 염원섭)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출신 김OO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조선일보사,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피고 신문사의 2004. 7. 16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 17일자 ‘김대중 칼럼’의 큰 제목 『국가의 틀을 바꾼다?』와 소제목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등과 피고 박근혜의 2004. 7. 19 전당대회 발언, 2004. 8. 3 기자간담회 발언 등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에 의해 원고의 반국가단체 활동이 조작됐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고 또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원고를 간첩이라 표현하고 조사관인 원고를 위원회 위원이라고 지칭했으며 예비역 장성을 관련법령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을 뿐임에도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하였다고 하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이 간첩이라 칭하는 대상이 원고를 특정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사와 칼럼의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취지, 기사와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각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대상이 공적 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사와 칼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와 칼럼이 특정인, 즉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피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공식적인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러한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이와 같은 정치적 주장을 대부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치인의 정치적 언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각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피고 박근혜가 위 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차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단256802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 승 교

피 고 : 1. 박 근 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 (한나라당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 영 화

2.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3. 김 대 중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변론종결 : 2005. 12. 21.

판결선고 : 2006. 1. 18.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박근혜는 5,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김대중은 각자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구성원 광○○ 등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93고합2199호 국가보안법위반)되어 1994. 2. 28.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4노914)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형을 복역한 후인 1999. 2.경 사면 복권되었으며, 2003. 7.경 계약기간을 2003. 7. 23.경부터 2004. 7. 31.까지로 하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라 한다) 조사관으로 채용되어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4. 7.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라는 제목 하에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조사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 김대중은 다음날인 2004. 7. 17.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국가의 틀’을 바꾼다?』라는 제목과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의 중간제목 하에 “그러나 그가 말한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마. 한나라당의 총재인 피고 박근혜는 2004. 7. 19.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을 하면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2004. 7. 20. 기자회견을 하면서 “간첩을 위원으로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2004. 7. 21. “간첩이 현역 장성을 불러 취조하는 나라라면 볼 장 다 본 나라 아니냐”는 발

언을 하였으며, 2004. 8. 2.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나 미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군 장성을) 취조하는 게 미래로 가는 국가냐”는 발언을 하였고, 2004. 8. 3.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잘못된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야당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는 발언을 하였고, 2004. 8. 5. 자민련 대표 김학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의문사위 활동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박근혜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5. 8. 11. 이 사건 소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되고 야당 대표를 고발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될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 확정 후 안기부 프락치였던 백○○의 양심선언으로 위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간첩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과거의 전력일 뿐이므로 현재의 원고에 대하여 간첩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나, 원고가 예비역 장성을 관련법령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을 뿐인데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하였다고 하였으며, 조사관인 원고를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피고 회사와 피고 김대중에 대해서는 각자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특정 여부

위 각 발표를 전후 하여 중앙일보 등 다른 언론매체에서도 ‘간첩, 사노맹 출신’, ‘의문사위 조사관 K씨’ 등의 언급을 하는 발표를 한 점, 당시 원고가 의문사위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에게 위 국가보안법위반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주위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과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각 표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표현들이 원고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표현은 원고를 특정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 허위의 사실 적시 여부

어떠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도 적시된 내용 전체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간첩’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한 위 각 보도나 언급의 전체적인 취지나 인상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으로 구속되어 형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앞서 본 범죄사실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이 사실이고, 그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양심선언 등이 있다고 하여 그 범죄사실이 조작된 것이라거나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간첩’이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예비역 군사령관이나 장성을 ‘군 사령관’이라고 표현하거나, 조사관인 원고를 염두에 두고 언급하면서 의문사위 ‘위원’으로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피고 회사, 김대중의 위법성 여부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한 경우 그 기사나 칼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나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나 칼럼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신문기사나 칼럼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나 칼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의 취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

니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5. 7. 16.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서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 조사』라는 제목 하에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서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을 소환조사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김대중이 다음날인 2004. 7. 17.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국가의 틀’을 바꾼다?』라는 제목과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의 중간제목 하에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기 전인 2004. 7. 15. 중앙일보에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조서관 K씨는 1993년 일본에서 북한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 검거됐다. 당시 안기부는 K씨가 92년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간첩에게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그 보도는 의문사위가公安기관의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숨진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 3명을 민주화에 기여한 자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한 후에 이어진 사실, 위 중앙일보 보도 다음날인 2005. 7. 16. 피고 회사가 발간하는 조선일보에 위와 같은 보도를 하였지만 그 제목 아래에 『기무사령관도 5차례 소환시도 ... 불응』, 『의문사위, 기무사서만 총 150명 조사』라는 소제목을 붙였고, 본문에서는 위 “지휘관출신 9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예비역)”임을 명시하였으며, “송영근 국방부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김대중이 발표한 위 칼럼은 제목이 『‘국가의 틀’을 바꾼다?』이고 그 중간 제목이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보면, 우선 첫머리에서 제목에 나타난 국가의 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국가의 틀을 바꾼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overlap)될 때 우리는 큰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나라 틀 바꾸기’가 아니라 아예 ‘나라 바꾸기’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후 “국격과 정체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기사와 칼럼의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 내용과 취지, 기사와 칼럼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각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대상이 공적 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사와 칼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와 칼럼이 특정인, 즉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피고 박근혜의 위법성 여부

정치인이 공식적인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러한 표현은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이와 같은 정치적 주장을 대부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치인의 정치적 언급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일부의 표현만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박근혜가 위 기초사실에서 실시한 각 일자에 그와 같은 각 표현이 포함된 언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근혜가 위 각 언급

을 하기 전인 2004. 7.경 의문사위가 공안기관의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숨진 남과 간첩, 빨치산 출신 3명을 민주화에 기여한 자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자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앙일보에서 2004. 7. 15., 조선일보에서 2004. 7. 16. 각 앞서 본 바와 같은 보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박근혜가 전당대회, 기자회견, 상임운영위원회 등에서 기초사실 적시의 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으나, 그 발언의 경위를 보면, 대표최고위원 수락연설에서 현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 외교, 사회질서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하였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던 중 ‘3기 의문사위 구성 및 권한강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보니까 1기에서 결정한 내용을 2기에서 뒤집고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 간첩을 위원으로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자민련 대표 김학원과 면담할 때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참여하였던 간첩출신 조사관들의 사면경위와 임용배경 등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뒤 3기 의문사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의문사위 활동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3기 위원회 출범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각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이 공적기관인 의문사위의 구성과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피고 박근혜가 위 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차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 원 섭

□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자 판결 (2005가합2611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국내 대학생들을 송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리아가 SBS와 ○○○○코리아를 통해 인터넷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와 피고 학생들이 2005년 2월 1일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 ‘우리는 노예였어요’ 제하의 보도에서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편집·방송하고 원고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우며 원고회사를 문제 있는 업체로 묘사하였다는 주장 역시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터넷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최근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터넷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그 보도목적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가 피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해업체가 원고회사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 등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방송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 방송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26111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코리아(대표자 이사 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피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대표이사 안 국 정

2. 김 ○ ○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보도국 뉴스추적팀

3. 윤 ○ ○

4. 서 ○ ○

5. 송 ○ ○

6. 윤 ○ ○

7. 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변론종결 : 2005. 12. 23.

판결선고 : 2006. 1. 2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20:50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 보도문’ 이라는 제목과 ‘[우리는 노예였어요]의 보도비리에 관하여’ 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이 판결 확정 후 15일 이내에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회사는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국내 대학생들을 송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SBS 뉴스추적'이라는 시사교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김○○은 피고 방송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윤○○, 피고 서○○, 피고 송○○, 피고 윤○○, 피고 박○○(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은 국내 대학에서 호텔경영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현재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 학생들의 인턴쉽 프로그램의 참여

(1) 피고 학생들은 미국에 소재한 호텔, 리조트 등이 운영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003. 10.경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알선 대행료로 약 480만 원 상당을 각 지불하고 원고회사에 미국 호텔 인턴쉽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절차와 수속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회사의 해외 담당직원 소○○는 2003. 11.경 피고 학생들에게 미국 현지 인턴쉽 프로그램 알선업체가 보내 온 미국 뉴멕시코주 Ranton 소재 버매조 파크 랜치(VermejoPark Ranch)의 고용제안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5, J-1 Trainee Program offer of Employment) 및 버매조 파크 랜치의 트레이닝 플랜(갑 제2호증의 1 내지 5, Training at Vermejo Ranch)을 각 제시하면서, 피고 학생들에게 '위 버매조 파크 랜치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고급리조트이고, 비록 기간은 기본 12개월보다 짧은 8개월이지만, 프론트 데스크, 고객서비스에 관련된 부서, 식음료부서, 하우스키핑 부서, 소매업 관련 부서 등 여러 부서를 순환근무하면서 리조트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익힐 수 있고, 유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주었다.

(3) 이에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가 알선한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고, 2004. 3. 25.경 미국 현지에 도착하여 같은 달 30.경부터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피고 학생들에게는 잔디관리나 쓰레기처리, 접시 닦기, 주방청소 등과 같은 업무만이 맡겨졌고, 프론트 데스크나 식음료부서 등으로의 업무

순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 학생들은 버매조 파크 랜치의 담당자로부터 위 고용제안서나 트레이닝 플랜의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 학생들이 다른 부서로 순환 배치되어 손님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2004. 6.경 원고회사에게 비자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순환이 가능한 다른 인턴쉽 업체를 알선하여 주거나, 알선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5) 원고회사는 피고 학생들에게 다른 인턴쉽 업체를 소개하여 주었으나, 피고 학생들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여 다른 인턴쉽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은 결국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 학생들이 알선비 중 일부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 방송사의 이 사건 방송 및 그 내용

(1) 피고 학생들은 2005. 1.경 원고회사를 찾아가 피고 학생들이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 업무순환 없이 허드렛일만을 하다가 돌아 온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알선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회사의 담당직원 소〇〇는 ‘피고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리한 내용이었고, 부서의 배치전환은 현지 업체인 버매조 파크 랜치의 고유권한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오〇〇 역시 피고 학생들이 요구한 미국 비자의 연장을 통한 다른 인턴쉽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환불 등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고 방송사 소속 성명불상의 기자는 피고 학생들의 친척이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한 후 원고회사 측과 피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 방송사는 2005. 2. 1. ‘SBS 뉴스추적’을 통해 “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해외 인턴쉽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김정은(가명)이 유치원 교사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로 갔으나, 실제로는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보모로 일하였다는 피해사례 및 피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호텔관광분야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나, 실제로는 잔디관리, 주방보조업무 등 허드렛일만 하고 돌아왔다는 피해사례(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를 각 소개하는 내용

② 김정은의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국내 인력알선업체가 김정은 씨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호주의 현지 알선 업체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

③ 노동부에서는 등록된 업체인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나, 현행법상 직업소개소개업과 노동부 등록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고, 해외 인턴쉽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노동부 등록업체도 등록이 어렵지 않음을 이용하여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어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여 여권을 위조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

④ 해외 인턴쉽의 성공사례로서 서강대학교와 무역협회의 인턴쉽 프로그램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해외 인턴쉽에 성공하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는 원고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회사가 환불도 해주지 아니한 채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묘사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학생들은 원고회사가 업무순환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자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버매조 파크 랜치의 고용제안서 및 트레이닝 플랜에 인턴 학생들의 업무순환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피고 서○○은 2004. 7.경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 레스토랑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순환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다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실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 순환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학생들은, ① 피고 학생들에 뒤이어 버매조 파크 랜치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수차례 원고회사를 비방하면서 원고회사가 주선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② 그밖에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비방전화를 하였으며, ④ 피고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 방송사와 공모하여 원고회사를 몰래 취재하는 등 원고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방송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취재한 사실,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내용 및 일부 해외 인터넷 알선업체의 경우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가며 피해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회사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피고 학생들이 원고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의 경우, 원고회사의 건물의 경, 사무실 입구 등 원고회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원고회사 직원의 얼굴 등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되었고, 원고회사 직원의 음성 역시 변조되어 방영된 사실은 원고회사도 다투지 않고 있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위 방송 부분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원고회사는 이 사건 방송이 원고회사를 환불도 해주지 아니한 채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 있는 업체로 묘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은 김정은(가명)의 피해사례와 피고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차례로 소개한 다음, 그 중 김정은의 피해사례를 특정하여 김정은을 알선한 국내 업체가 그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점, 곧이어 일부 노동부 등록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터넷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그 순서,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말하는 이름만 바꾸어 가며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

(2) 나아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방송은 최근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턴쉽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그 보도목적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학생들이 그 경위가 어떠한 호텔 인턴쉽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 및 피고 학생들이 출국에 앞서 원고회사로부터 들었던 설명과는 달리 미국 현지 업체에서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다가 돌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서○○이 2004. 7.경 레스토랑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 학생들이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이 사건 방송 중 일부 노동부 등록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무등록 업체까지 난무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분의 진실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가 피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해업체가 원고회사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과 원고회사 직원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방송사가 위와 같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피고 방송사 및 피고 김○○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생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가 어떠한 피고 학생들이 호텔 인턴쉽 프로그램의 본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게 미국에서 주로 허드렛일만을 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 학생들이 버매쥬 파크 랜치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위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한 행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행위 등은 타인에게 자신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과 피해사례를 호소한 것이거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버매조 파크 랜치에서의 생활을 수기의 형태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 것일 뿐, 원고회사를 비방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서○○은 위 수기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회사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서○○이 위법하게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 학생들이 원고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 학생들이 피고 방송사와 몰래 원고회사를 취재한 행위 및 피고 방송사에게 자신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방송사가 몰래 취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따라서 피고 방송사가 명예훼손책임 등을 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 학생들에 대한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지면의 제약과 편집기술 상 보도자료에 나온 적발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적발업체만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사들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자 판결 (2005가단17000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만사단독 40부(판사 유지원)는 대구 모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는 장○○이 주식회사 연합뉴스,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언론사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 정기지도 점검에서 적발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식약청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 언론사들에 의해 기사화 되자, 원고는 식약청의 보도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 원고의 병원 실명이 공개돼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으며, 식약청이 원고를 적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적용으로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언론사들이 보도한 이 사건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마약류 취급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마약류취급의 적절성을 통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식약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식약청에서 발표한 적발업체의 모든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고 지면의 제약과 편집기술 상 그중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적발업체만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 언론사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며, 원고의 적발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170004 손해배상(기)

원 고 : 장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 중 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 병 돈

피 고 : 1.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장 영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세움

담당변호사 박 양 진, 이 진 영, 송 경 준, 강 희 정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 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3. 주식회사 한거래플러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이 상 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 영 대, 정 진 성, 김 경 율

4.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박 진 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경 석, 이 덕 희, 이 용 욱

5.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전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영 길, 박 천 혁, 임 동 채

변론종결 : 2005. 12. 29.

판결선고 : 2006. 1. 2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OO동에 있는 '장□□□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 10. 19.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수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에서 마약류취급

자인 원고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조제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을 시켜 약을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 4. 8. 위 정가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별지 1, 5의 각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위와 같은 기사를 기초로 별지 2부터 4까지의 각 기재와 같은 기사를 전재(轉載)하여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장□□□ 정신과 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대법원을 포함하여 우리 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마약류취급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마약류취급의 적절성을 통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2호증, 을마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적발된 곳의 실명을 모두 적시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소위 전재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또는 그 기사를 기초로 보도한 점(을다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보도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원고와 같은 적발이유, 즉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을 이유로 적발된 업소는 원고 이외에도 5군데인데 피고들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실명만 거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고를 적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적용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적발업체의 모든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고 지면의 제약과 편집기술 상 그중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적발업체만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며, 원고의 적발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한 점(더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하여 주장할 내용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보도한 피고들을 탓할 내용이 아니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 지원

□

발언의 일부를 취사선택해 보도함으로써 취재 상대방에게 큰 비난이 초래되는 경우 취재 상대방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9.자 판결 (2004가합7829)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송○○와 그의 가족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동 방송사의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담당 피디와 진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난 2004년 3월 26일 사건 프로그램에서, 대통령탄핵찬성집회 연사로 등장한 원고의 발언 일부만을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방송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이 특정 사실의 보도 및 이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방송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의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 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발언의 앞뒤를 생략하여 일반인들이 발언의 의미를 오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들이 2차에 걸쳐 방송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발언 내용이 직접적으로 영부인의 학력비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살한 모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자질 등을 비판하는 과정은 거두절미한 채 원고가 영부인을 비하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언론기관의 편집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이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피고 방송이 원고의 발언을 취재, 보도함에 있어 그 전체를 반드시 방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보도함으로써 취재 상대방에게 큰 비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취재 상대방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방송사의 주의의무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까지 편집의 자유가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다”며 원고의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7829 손해배상(기)

원 고 : 1. 송 ○ ○

2. 최 ○ ○

3. 송 □ □

4. 송 ○

원고 3, 4.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송○○, 모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기 림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최 문 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2. 최 □□

3. 신 강 균

피고 2, 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국빌딩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최 재 경

변론종결 : 2006. 1. 19.

판결선고 : 2006. 2. 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송○○에게 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04. 3. 26. 부터 2006.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송○○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최○○, 송□□, 송○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송○○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0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 송○○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최○○, 송□□, 송○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송○○에게 400,000,000원, 원고 최○○에게 50,000,000원, 원고 송□□, 송○에게 각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3. 26.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송○○는 2004. 3. 21.경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하여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발언을 한 자이고, 원고 최○○은 원고 송○○의 처, 원고 송□□, 송○은 원고 송○○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방송이라 한다)은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최□□은 피고 방송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이며, 피고 신강균은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기자이다.

나. 피고 방송의 2004. 3. 26.자 방송

(1) 피고 방송은 2004. 3. 26. 위 프로그램에서 탄핵반대집회와 탄핵찬성집회를 각 보도하였는바, 전체적인 방송의 취지는 탄핵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위 각 집회를 통해 평화롭게 표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집회들이 현행법인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2) 한편 피고 방송은 원고 송○○가 참석한 2004. 3. 21.경 탄핵찬성집회를 일부 보도하면서 원고 송○○가 연사로서 발언하고 있는 부분을 별지 2004. 3. 26.자 방송과 같이 방영하였다(이하 1차 방송이라 한다).

다. 피고 방송의 2004. 4. 2.자 방송

(1) 피고 방송의 1차 방송 후 시중 일간신문들은 원고 송○○가 대통령 부인 권양숙(이하 영부인이라 한다)을 비하할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원고 송○○의 발언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원고 송○○의 영부인 관련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2) 그러나 원고 송○○가 2004. 3. 21. 위 탄핵찬성집회에서 발언할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CBS 사회부 기자 최○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질을 외면한 MBC의 편집방송이 네티즌을 선동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원고 송○○가 위 발언을 하기에 앞서 “‘많이 배우신 분(남○○)이 보잘 것 없는 사람 앞에서 굽실굽실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적 살인입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이처럼 원고 송○○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여론이나 시중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피고 방송에게 원고 송○○의 발언과 관련한 부분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 방송은 2004. 4. 2. 원고 송○○가 2004. 3. 21. 탄핵찬성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의 원본테이프를 방송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 2003. 4. 2.자 방송과 같다(이하 2차 방송이라 한다).

라. 원고 송○○의 피고 최○○, 신강균에 대한 고소 및 반론방송

(1) 원고 송○○는 2004. 4. 7. 피고 방송의 기획팀장 김○○, 피고 최○○, 신강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3. 9. 2004년 형제36403호로 위 김○○, 피고 최○○, 신강균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송○○는 2005. 3. 31.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2) 피고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2004. 4. 23. 원고 송○○의 반론을 방영

하였다.

마. 피고 방송의 방송강령

피고 방송은 1990. 6. MBC 방송강령을 제정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프로그램 기준 2. 정치·경제

- (1) 정치 문제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4) 일반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13. 언어표현

(6) 어떤 프로그램도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교묘한 방식이나 가장된 방법으로, 중요한 사실을 그릇되게 묘사해서는 안 된다.

III 보도프로그램 기준 1. 정확성

(선략) 정확성은 결코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프로그램 담당자는 언제나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충분히 조사하여 사안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불편부당성 (2) 균형성의 유지

(선략) 즉 관련된 주요 사실의 의도적 누락이나 은폐 등에 의해 한쪽으로 편향시키지 말아야 한다. (후략)

4. 범죄 및 시위보도 (4) 시위현장 보도

② 시위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선동적인 구호나 문구를 기사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일어나는 사태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7. 편집 (1) 프로그램 편집

①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각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해당 국장의 승인이 있고, 본래의 사건을 충실히 재연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7, 을 1, 2, 6호증, 을 1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송○○의 주장

원고 송○○는, 방송이 나간 후 4일 동안 2,533통의 비난섞인 욕설을 휴대전화로 받았고, 500통에 달하는 협박과 욕설이 가득한 문자메세지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고, 심한 공포감 때문에 각종 신경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고 송○○가 운

영하던 가게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심지어 원고 송○○는 자살을 기도하려 하였으나, 원고 최○○의 만류로 단념하였는바, 피고 문화방송의 1차 방송은 원고 송○○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 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 송○○의 발언의 일부만을 방송한 부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헌법 제21조 제4항 1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3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제6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으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기관인 방송은 보도를 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언론기관이 특정 사실의 보도 및 이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방송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의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최소한 그 발언자가 한 발언 중 앞뒤의 말을 생략하여 일반인들이 발언자의 발언의 의미를 정반대의 취지로 이해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1차 방송에서 원고 송○○가 연사로서 발언하는 내용을 그 자체로만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영부인의 학벌을 비하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2차 방송에 나타나는 원고 송○○의 전체적인 발언내용은 남○○의 자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자질을 비판하면서 영부인의 학력을 예로 든 것이고 그 발언내용이 직접적으로 영부인의 학력비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 송○○와 관련된 탄핵지지집회의 내용에서 원고 송○○가 남○○의 자살과 관련한 대통령의 자질 등을 비판하는 과정을 거두절미한 채 원고 송○○가 영

부인을 비하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보도한 것은 피고가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송 강령상의 “어떤 프로그램도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교묘한 방식이나 가장된 방법으로, 중요한 사실을 그릇되게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위반하는 것이고, 그와 아울러 언론기관의 편집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 할 것인바, 이는 원고 송○○에 대하여 명예 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3) 원고 송○○ 발언의 진의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위 탄핵집회에서 원고 송○○의 영부인 관련 발언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결국은 대통령의 자질을 문제삼기 위하여 영부인의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탄핵지지집회에서 원고 송○○가 영부인의 학력과 관련한 발언을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바로 말하지 않고 영부인의 학력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듯이 말하며 영부인에 대하여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인상을 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방송으로서 원고 송○○가 자기 하고 싶은 말(즉 피고들 주장에 의할 때 영부인에 대한 학벌비하를 말한다)을 다 하고 이를 인용하는 발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 송○○가 시청자들로부터 자신이 행하는 발언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용하는 방식으로 발언하는 부분까지도 방송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을 방송하는 방송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 송○○가 인용하는 형태의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방송함에 있어 시청자들이 발언 전체의 취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송○○가 영부인의 학력관련 발언외에 그에 대한 전제로서 남○○ 자살 사건과 그에 따른 대통령의 언어살인이라는 발언을 거두절미한 채 방송한 것은 원고 송○○의 전체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원고 송○○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그대로를 방송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방송은, 위 1차 방송이 원고 송○○가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이 아니고, 피고들은 1차 방송에서 원고 송○○를 비난한 바도 없으며, 피고 방송은 단지 원고 송○○가 2004. 3. 21. 탄핵지지집회에서 영부인의 학력미달사실을 거론하며 국모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발언모습과 발언내용을 아무런 멘트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방송의 1차 방송은 원고 송○○의 발언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송○○의 발언이 1차 방송에서와 같이 영부인에 관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송○○가 한 발언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 송○○가 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송○○가 공적인물로서 피고 방송의 보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송○○가 탄핵지지집회라는 공개석상에서 카메라기자 등 언론에 의한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연단에 연사로 올라 발언한 이상 자신의 발언이 취재되어 보도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송○○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 송○○가 공개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언론이 취재하는 가운데 발언하여 자신의 발언이 취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보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을 임의로 잘라서 보도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공적인물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판단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왜곡보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1차 방송의 취지, 편집의 자유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1차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은 검찰이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탄핵반대 집회에 대해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제함을 계기로 시민의 광장에서의 활동에 관한 정당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 방송으로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 송○○의 발언 중 취사선택을 한 것으로, 이러한 취사선택은 모든 보도에서 불가피하고, 피고 방송이 편집권의 자유를 누리는 이상 원고 송○○의 모든 발언을 보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1차 방송의 취지가 탄핵찬성, 지지집회의 그 당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광장에서의 활동에 관한 정당한 여론을 형성함을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방송한 취지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방송을 함에 있어 타인의 발언을 가공하는 경우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피고들의 방송취지가 원고 송○○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원고 송○○의 명예가 훼손된 이상 방송취지가 다르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편집의 자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은 편집의 자유 역시 언론 자유의 일부로서 보장되는 것으로서, 방송사인 피고 방송이 원고 송○○의 발언을 취재, 보도함에 있어 그 전체를 반드시 방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나, 취재 상대방의 발언을 보도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취재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하락의 우려가 크지 않으나, 그 발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보도함으로써 취재 상대방에게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취재 상대방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방송사의 주의의무라 할 것이고(방송은 신문과 달리 짧은 시간에 극적인 장면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그 속성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취재 상대방에 대한 침해 여부 판단에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편집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 방송이 원고 송○○의 발언 일부를 보도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 송○○의 전체 발언을 보도하는 경우에서보다 원고 송○○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커졌고, 또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편집의 자유를 들어 원고 송○○에 대하여 지게 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1차 방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송○○의 발언 행위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역시 피고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정보에 대하여까지 알 권리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원고 송○○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은 원고 송○○의 견해 표명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 방송이 편집 보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이 원고 송○○의 발언 전부를 보도했다 하더라도 원고 송○○의 진의가 영부인은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국모자격이 없다는 것임이 잘 드러나며, 결국 위 원고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은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 송○○의 문제있는 발언이 편집된 채 방송된 사실에 의하여 원고 송○○의 가치가 크게 저하된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식으로든 원고 송○○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피고들로서는 원고 송○○의 발언이 사회 전체로부터 옳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수준에서의 편집을 하여 방영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들이 자의로 원고 송○○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기에 충분한 발언만을 편집하여 방송한 이상 원고 송○○의 사회적 가치

저하는 원고 송○○의 발언 자체가 아니라 원고 송○○의 발언을 편집하여 방송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 방송의 후속보도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가사 원고 송○○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방송의 2차 방송 및 2004. 4. 23.자 반론방송에 의하여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고, 원고 송○○의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반론보도청구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와는 엄연히 그 목적, 성질에 있어 별개의 구제방법으로서 반론보도에 의하여 원고 송○○에게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2차 방송 역시 그에 의하여 위 원고에게 기 발생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탄핵지지집회와 탄핵반대집회의 불균형적 보도 관련 주장, 원고 송○○의 적반하장 주장, 원고 송○○가 제출한 신문기사 등의 보도내용은 일부 정치세력의 여론재판에 불과하다는 주장, 영부인이 원고 송○○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피고들은, 탄핵지지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불균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 타당한지 여부는 언론의 자율규제 및 언론기관의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에 의한 판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보도가능성을 수락하고 공개집회에서 사회자로서 발언한 원고 송○○가 지금 와서 언론 보도가 될 줄 몰랐고, 만약 알았다더라면 욕설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친 표현도 안 썼을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며, 갑 4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2 기사들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편파적인 목적의 보도이고, 영부인이 원고 송○○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 송○○의 발언형태와 청중의 호응을 유도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피고들이 1차 방송을 통하여 원고 송○○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이지, 피고 방송이 1차 방송을 함에 있어 탄핵지지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불균형적으로 보도했는지 여부나 원고 송○○의 전후 태도의 일관성 여부, 원고 송○○가 주장하는 각 신문의 보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편파적인 목적의 보도인지 여부가 아니고, 또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어디까지나 원고 송○○로서 이 사건에서 영부인이 원고 송○○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더 나아가 살필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

갑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방송이 방영된 후 4일 동안 원고 송○○가 엄청난 수의 욕설과 헐뜯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들의 왜곡 방송에 의하여 원고 송○○의 사회적 가치에 현저한 저하가 일어나고 같은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차 방송의 방송에 이르게 된 경위, 원래의 취재분이라 할 수 있는 2차 방송에서 1차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 그 보도에 있어 왜곡의 정도, 1차 방송의 방송시간과 방송내용, 방송사인 피고 방송 및 피고 방송의 프로듀서 및 기자인 나머지 피고들이 보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의 수준, 그 위반의 정도, 피고들의 사회적 책임 및 피고 방송에 의한 반론방송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송○○에게 배상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원고 최○○, 송□□, 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최○○은 1차 방송 후 원고 최○○ 자신이 맡고 있던, 원고 송○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자모회장 직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고, 또 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활동이 좌절되었고, 원고 송□□, 송○은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원고 송○○가 영부인의 학력을 문제삼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조롱의 대상이 되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송○○의 가족들인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수액에 관하여 다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송○○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방송일인 2004. 3.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송○○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최○○, 송□□, 송○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 명 중
판사 이 흥 주
판사 이 수 민

〈별지 1,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6. 2. 15.자 판결 (2005가합18545)

사실개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부산 모 병원장이자 정신과 의사인 박○○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5년 7월 7일 KBS2-TV 「뉴스타임」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술 깨보니 정신병원』 제하의 방송과 같은 날 KBS 1 텔레비전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제하의 방송을 통해 원고 병원이 김○○(이 사건의 제보자)을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및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방송은 그 제보자인 김○○의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구청, 경찰서)의 관리가 소홀하며, 위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피고들이, 원고 병원에서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가 정신보건법령 및 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김○○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취재하고서도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바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는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취재된 원고 병원의 사정을 이 사건 보도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18545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경 윤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강 ○ ○

부산 수영구 남천동 63 KBS부산방송총국(소속 취재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신

변론종결 : 2006. 2. 1.

판결선고 : 2006. 2. 15.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5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병원(이하 같은 병원 또는 원고를 포함한 같은 병원의 구성원들을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방송의 실시와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이며, 피고 강○○는 피고 방송사의 소속 취재부 기자로서 다음 나.항 기재 방송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방송 및 그 내용

(1) 피고 방송사는 2005. 7. 7. KBS 2TV "뉴스타임"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약 1분 32초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술깨보니 정신병원

○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한 40대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이 40대는 그 동안 눈이 거의 실명지경에 이르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피고 강○○(화면 아래쪽에 "1999년 4월 김○○ 씨 술 취해 쓰러진 뒤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인계"라는 자막 표시) : 48살 김○○ 씨는 지난 99년 4월 24일 밤 9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김 씨가 눈을 뜬 곳은 부산 △△동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 원고 병원 관계자[화면 아래쪽에 "병원관계자 (입원동의는)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라는 자막 표시] :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하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 피고 강○○ :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자가 있다는 김 씨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김○○(화면 아래쪽에 "4년 동안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자막 표시) : 보호자 없는 사람인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곳이 정신병원인지, 세계 어떤 나라가..... 있는지.....

○ 피고 강○○ : 구청은 매달 80만 원 가량의 병원비만 지불했을 뿐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려환자는 일단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경찰관계자(화면 아래쪽에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됐습니다"라는 자막 표시) :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되었습니다.

○ 피고 강○○ : 건설근로자였던 김 씨는 4년 동안의 정신병동 생활 이후 말초신경 장애와 실명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KBS뉴스 강○○입니다.

(2) 그리고 피고 방송사는 같은 날 KBS 1TV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다음의 앵커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다음날 KBS 1TV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2, 1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이 김○○을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영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손해 및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손해액 합계 411,558,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병원이 김○○을 인계한 경위

(가) 김○○은 건설근로자로서 특별한 신체적 장애 없이 1998. 8.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였고, 그의 형 김△△가 사망한 이후에는 “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나) 김○○은 1999. 4. 24. 21:00경 부산 연제구 ○○동 ○○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관할 연제경찰서 연산2파출소에 의해 행려환자로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고, 원고 병원은 관할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다) 위 인계 당시 김○○에게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연제경찰서가 작성한 김○○에 대한 “행려환자 인계서 송부”문서에는, 김○○의 성명란에 “자칭(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직업, 본적, 주소란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

으며, 발견일시 및 당시 개황란에는 “행려환자로 보이고 연고도 이름도 몰라 인계한 것임”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 병원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 경과

(가) 김○○은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1999. 4. 25. 07:20경에 깨어나 그곳이 원고 병원인 것을 알고, 원고 병원 간호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그가 왜 병원에 있냐고 하며, 병원에서 내 보내 달라고 하였고, 1999. 4. 26.에는 원고 병원에 “내 이름은 김△△가 아니라 김○○이고요, 43세입니다. 누나 집에 지금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김○○은 원고 병원에서 부산 부산진구 ○○동 거주한다는 그의 큰누나의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냈으나, 그의 큰누나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집에 급한 사정이 있다며 올 형편이 안 되니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면회를 오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 병원은 김○○에게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김○○에 대해 알코올 금단증상에 대한 치료와 만성알코올 의존환자에게서 주로 동반되는 반사회적 성격 및 편집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병원은 김○○의 입원 후 매 6개월 마다 그의 잔존증상 치료를 위해 계속 입원 치료 심사를 부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그곳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2005. 4. 18.까지 김○○을 입원 치료시켰으나, 그 사이 김○○은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다.

(라) 위 입원 기간 중 원고 병원은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계속 입원 치료 심사 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병원에 인계될 당시 “행려환자 인계서 송부”문서에 기재된 이름인 “김△△”와 연제구청에서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임의로 지정하는 관리번호 등을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였다.

(바) 김○○은 위 입원 기간 중이던 2001. 7.말경부터 다리 마비감을 호소하며 보행장애를 보여, 2002. 1.경부터는 부산의료원 등에 외진을 받은 바 있고, 2002. 2. 15.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로 부산의료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4. 4. 초순경에는 원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간 바 있고, 같은 달 7.경부터는 시력장애로 인해 부산의료원 등에서 외진을 받은 바 있으나, 위 2004. 4. 초순경의 외출 이외에는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을 나갈 수 없었다.

(3) 피고 강○○의 취재경위 및 보도 후의 상황

(가) 김○○은 원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05. 6. 30. 피고 방송사 부산방송총국에서 피고 강○○를 만나, 그가 1999. 4. 24. 21:00경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으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신병원이었다고, 그의 이름도 아닌 엉터리 이름으로 4년 동안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 강○○는 원고 병원, 관할 경찰서, 김○○이 위 입원 전 거주하던 집 주인 박○○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를 하였는바, 그 취재과정에서 원고 병원에서 김○○의 진료를 담당한 서○○ 의사는 피고 강○○에게 김○○이 행려(무연고)환자로서 원고 병원에 인계된 경위와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행려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병원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하였다.

(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7. 5. 환자의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경주지역의 모(某) 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관할 자치단체에게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후 2005. 7. 8. 김○○의 원고 병원으로의 인계 과정, 원고 병원에서의 신원확인절차 등에서 문제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문제들에 관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행 정신보건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마) 김○○은 이 사건 방송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05. 10. 10. 원고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2, 갑 10, 11, 13,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6, 갑 16호증의 1 내지 8, 을 2, 3(갑 12호증과 같다)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18, 20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부산고등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일부, 증인 서○○,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방송이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은 정신보건법령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인계되어 응급

입원된 김○○에 대해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그에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확정적 자료도 없고, 달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도 없어, 구청장의 동의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밟아 계속 입원치료 해 주면서 편의상 최초 경찰서로부터 인계 당시 서류에 기재된 “김△△”라는 이름과 의료보험급여를 위해 연세구청에서 부여한 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김○○을 관리해 왔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강○○ 역시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원고 병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원고 병원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설명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이 사건 방송 시청자들로서는 이 사건 방송에서의 “부산 △△동의 한 정신병원”이 원고 병원임을 능히 특정할 수 있다)에 김○○이 “4년 동안 강제 입원”되었다거나 원고 병원이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은 원고 병원의 주관적 명예감정 뿐 아니라 원고 병원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이고, 방송 보도에 있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방송이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기로 한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내용과 피고 강○○의 취재경위 및 보도 후의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제보자인 김○○의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 등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구청, 경찰서)의 관리가 소홀하며, 위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김○○은 1999. 4. 24. 밤 그의 의사에 반해 원고 병원에 입원되어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2004. 4. 초순경 외출을 할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 의해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원고 병원에서는 김○○의 진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김△△”라는 이름과 연체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그를 관리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물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원고 병원에서의 김○○에 대한 입원치료가 정신보건법령 및 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한 것이었고, 또 원고 병원으로서 위와 같은 이름과 관리번호로 김○○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취재하고서도 이 사건 방송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은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취재된 원고 병원의 사정을 이 사건 보도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태) 그러므로 원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방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 근 수

판사 최 우 진

판사 류 종 명

□

북한산 건강식품의 진위여부는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게시물 및 보도 내용은 공익성이 충분하며 보도의 근거가 된 팩스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2.자 판결 (2005가합7656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커뮤니티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원고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북한산 건강식품인 '○○플러스'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게시물과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플러스가 가짜라는 내용의 민경련 팩스 회신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기사화 해 보도하자 팩스 내용에 대한 출처 및 사실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원고가 가짜 ○○플러스를 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손해를 끼쳤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각 게시물 및 각 보도의 공익성 여부를 보면 '○○'은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는 '○○플러스'의 진위 여부가 관심 사항으로 국민 보건과 관련된다 할 것이므로 게시물 및 보도 내용은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하고 “법원의 통일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들이 원고가 수입 판매하는 '○○플러스'가 북한 조선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민경련의 팩스 내용을 이 사건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뉴스에 보도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팩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76567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커뮤니티

대표이사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범 성, 유 선 용

피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안 국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9
대표자 사장 홍 기 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 문 주
3. 주식회사 ○○교역
대표이사 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 재 환, 김 승 교
4.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 문 주
5. 홍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6.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상 철
7. 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 재 환, 김 승 교

변론종결 : 2006. 3. 8.

판결선고 : 2006. 3. 22.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피고 이○○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 한다.)와 피고 홍○○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피고 이△△은 2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교역(이하 '피고 ○○교역'이라 한다.)과 피고 박○○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식품 수출입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에스비에스는 공중과 방

송사업자이며, 피고 홍○○은 피고 에스비에스의 기자이고, 피고 이△△은 아이뉴스(inews)를 운영하는 온라인 뉴스업체인 주식회사 비비아이코리아의 기자이며,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을 주업무로 하여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고, 피고 이○○은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담당 직원이며, 피고 ○○교역은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국대리점을 통하여 북한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민간기업이고, 피고 박○○은 피고 ○○교역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02. 11. 20. 중국기업인 중화인민공화국□□시대의무역공사(이하 '□□무역공사'라 한다.)와 북한산 건강식품인 '○○플러스'와 '□□플러스'라는 제품의 독점공급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2. 12. 말경 1차분 4,000곽(○○플러스 1,700곽, □□플러스 2,300곽)을 □□무역공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플러스는 한 곱당 22만원에, □□플러스는 한 곱당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무역공사는 2004. 6. 1.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신□□□□유한공사(이하 '신□□공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플러스'가 자연산 송이버섯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북한산 건강식품으로 항암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광고하였다.

(3) 피고 ○○교역은 원고가 수입한 제품과 유사한 '○○분'이라는 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한 곱당 7만원에 판매하였고 이에 신□□공사는 2004. 6. 초경 원고의 국내판매 차질을 우려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저가보급품인 '○○분'은 일반식품인 '기준규격외 기타 식품'입니다. 구입시에는 제품겉면의 한국 식약청에서 허가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추어 경제적으로 선택바랍니다.”라는 광고를 하였다.

(4) 그 무렵 원고는 국내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행사를 하였는데 고환암환자인 배○○(필명 ○○ 아빠)은 암시민연대 홈페이지 및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플러스'와 '○○분'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성분과 맛이 다르며 '○○플러스'에 표기되어 있는 '조선장수합영회사 장수연구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의 진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5) 위 배○○은 2004. 7. 초경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팀 직원인 피고 이○○에게 “조선장수합영회사의 존재유무 및 ○○플러스와 □□플러스의 해외 수출권자라고 주장하는 신□□공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약품판매허가를 취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 이○○은 같은 해 7. 12.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의 베이징대표부에 조선장수합영회사의 존재여부를 문의하면서 문의배경에 대해 원고가 북측장수연구소와 중국측 신□□공사의 합영회사인 조선장수합영회사로부터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인 ○○플러스에 대해 진위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6) 피고 이○○은 2004. 8. 6.경 민경련측의 베이징대표부로부터 “현재 조선장수합영회사는 없으며 올해 5월 광명성총회사에서는 ○○교역(주)에 ○○약을 보냈으며 민경련이 이에 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약 개발자는 ○○약에 ‘○○플러스’라는 이름을 달아 판매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팩스(이하 ‘이 사건 팩스’라 한다.)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게시물 및 각 보도

(1)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피고 이○○은 2004. 8. 16.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팩스의 송수신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2) 피고 ○○교역 및 피고 박○○은 암시민연대의 홈페이지에 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게시된 이 사건 팩스 원본을 소개하고 피고 홍○○과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플러스가 가짜라고 하면서 이 사건 팩스 내용을 보도 자료로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3) 피고 에스비에스 및 피고 홍○○은 2004. 8. 16. 저녁 8시 메인뉴스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분과 ○○플러스 두 제품이 팔리는데 북한은 오늘 ○○분이 유일한 북한산이라고 통보해왔다. 북한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플러스는 허가한 적이 없으며 위법행위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4) 피고 이△△도 역시 같은 날 아이뉴스(inews)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팩스와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1,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2, 을나 1 내지 3호증, 을나 4호증의 1 내지 2, 을나 5호증, 을다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팩스의 내용에 대한 출처 및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기사화하여 보도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가짜 ○○플러스를 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가 신□□공사로부터 ○○플러스 및 □□플러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였고 2004. 11. 20.까지 사이에 수입이 예정된 75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플러스의 진위 여부는 암 환자들에게 큰 관심대상이고 민경련이 보낸 팩스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게시물 및 각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홈페이지의 각 게시물 및 각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팩스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가 ○○플러스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게재하여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약이 아닌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플러스 및 □□플러스의 판매에 사실상 큰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각 게시물 및 각 보도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은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암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는 ○○플러스의 진위 여부가 관심사항으로 국민 보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게시물 및 각 보도가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게시물 및 각 보도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을나 1 내지 3호증, 4호증의 1 내지 2, 5호증, 7 내지 8호증, 9호증의 1 내지 3, 10, 내지 11호증, 24호증, 을다 1호증, 3호증, 5호증, 7호증의 1 내지 3, 8호증, 11호증의 1 내지 2, 1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통일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10. 7. 위 배○○, 주식회사 비비아이크리아 및 피고들을 상대로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하여 2004년형제108531호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 ② 통일부는 민경련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무역성 산하기관으로 남한의 대북 교역 및 투자사업 전담 창구와 남북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확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민경련 북경대표부 근무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팩스에 “현재 조선합영장수회사는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의 의미에 대해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위와 같은 명칭의 회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이 사건 팩스 중 “○○약 개발자는 ○○약에 ‘○○플러스’ 라는 이름을 달아 판매하도록 허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귀측의 어느 한 회사가 ○○약에 ‘○○플러스’ 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플러스’ 라는 상품은 ○○약이 아니므로 가짜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회보한 사실, ③ 배○○이 북한 운영 조선엑스포닷컴(www.chosunexpo.com) 홈페이지에 ○○플러스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하였더니 ○○개발자인 북한의 문호 박사가 성분 분석한 결과 ○○플러스가 가짜로 밝혀졌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통일부는 위 조선엑스포닷컴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해 주었고, 국내 여러 일간지들도 위 홈페이지가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수입 판매하는 ○○플러스에 대해 민경련이 보낸 팩스 내용을 이 사건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뉴스에 보도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팩스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던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게시물 및 각 보도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 및 지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철환

판사 이민영

판사 최응영

□

**교회 목사의 보수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자 판결 (2005가합1895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김제○○교회(이하 원고 교회)와 이 교회 담임목사가 오마이뉴스와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신도가 피고 인터넷 신문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 라는 내용을 제보하고 이에 피고 인터넷 신문사가 2005년 1월 20일자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원고 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원고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이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종교, 특히 교회가 차지하는 기능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사(修辭)적인 과장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표현 방법 또한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관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18950 손해배상(기)

원 고 : 1.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

대표자 김 ○ ○

2.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동 배

피 고 : 1.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 연 호

2. 조 ○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3. 문 ○ ○

4. 문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차 현 환

변론종결 : 2006. 4. 7.

판결선고 : 2006. 4. 21.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에게 금6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1999. 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이하 “피고 신문사”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를 관리·경영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조○○은 피고 신문사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편집·게재한 사람이고, 피고 문○○은 원고 교회의 시무장로인 사람이며, 피고 문□□은 피고 문○○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및 그 내용

피고 신문사는 2005. 1. 20.에 발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에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이라는 대체목 및 <전북 J교회 담임목사의 연봉 내역을 공개합니다>, <교회 예산 20% 담임목사가 차지... 청소원 연봉은 1천 만 원대 20배 차이>, <미국자녀 학비 지원 중단해야 - 계속 줘야... 미 시민권 포기 논란도>라는 중제목으로 담임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한 교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다. 피고 문□□의 제보

피고 문□□은 “오마이뉴스”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목사 연봉이 124,200,000 원입니다’ 라는 제목을 온라인통신으로 송부하고, 피고 조○○의 전화취재에 응하면서 팩스로 원고 교회의 2004년 및 2005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문○○은 원고 김○○의 교회 운영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 교회의 내분을 야기한 자로서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 교회의 내부 문서인 세입세출예산서를 절취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 문□□에게 전달하고 피고 문□□과 공모하여 담임목사의 연봉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피고 조○○에게 제보하였으며, 피고 신문사와 그 소속기자인 피고 조○○은 원고 교회가 내분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 김○○이 소도시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원고 교회도 그러한 부도덕한 목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피고 문○○은 이 사건 보도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전북 J교회’, ‘담임목사 김 아무개’ 라고만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설사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인들의 현금으로 운영되는 교회 재정에 관한 비평의 일환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문○○의 개입 여부

먼저, 피고 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문○○이 원고 교회의 내부자료를 절취하고 피고 문□□과 공모하여 피고 신문사, 피고 조○○에게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 등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원고 교회를 ‘전북 J교회’, 원고 김○○을 “담임목사 김아무개” 또는 “김 담임목사”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그 기사내용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김 목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에 부임하여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는 등의 취지이고 원고 교회의 전면부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 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김 목사”가 원고 김○○을 지목하는 것이고 “지방소도시 교회”가 원고 교회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위법성조각여부

살피건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그 전체적 취지가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은 이 사건 기사에 연이어 “목사연봉 어느 정

도가 적정할까”라는 제목 하에 서울 “높은 뜻 승의 교회”의 목회자의 적정연봉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사례와 기독교방송의 목사 연봉에 관한 설문조사사례, 시민종교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관계자의 의견 등을 취재하여 별지 제2목록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들이 특정 교회나 특정 목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종교 특히 교회가 차지하는 기능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서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지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 증인 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은 피고 문□□을 통하여 원고 교회의 2004년 및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라는 구체적인 문건을 입수하고 원고 교회의 장로 및 권사들로부터 원고 교회의 재정운용상황 등을 취재하고 원고 김○○과도 전화통화를 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원고 교회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세입예산총액이 1,058,000,000원으로서 이는 전부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조성되는데(헌금 이외의 기타 수입은 40,000원에 불과하다), 세출예산 중에 담임목사(원목)의 생활비 54,400,000원, 목회비 6,000,000원, 연구비 6,000,000원, 도서비 4,800,000원, 여비 3,600,000원, 수양비 1,200,000원, 자녀학비보조비 49,200,000원(특별 30,000,000원, 원목 19,2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위 예산서상 교육목사의 교육비(연봉)는 13,200,000원, 교육전도사의 교육비(연봉)는 18,000,000원 또는 8,400,000원, 사무직원의 생활비는 16,000,000원, 차량기사의 생활비는 21,440,000원 또는 17,600,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청소원에게는 급여로서 연 10,000,000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실, 예산서상 행정관리비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접대비 10,000,000원, 축조위비 7,000,000원, 정보통신비 5,000,000원

도 사실상 담임목사가 그 용도에 따라 지출하고, 예산서상 원고 교회 보유 차량, 시설, 사택 등에 대한 재산관리비로서 121,48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인 원고 김○○에게 그랜저XG 승용차 1대와 30평대 사택을 제공하면서 그 유지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위 재산관리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 온 사실, 2005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004년도의 그것보다 감소되었지만 목사생활비, 교역자 연구비, 교역자 도서비 등은 오히려 증액 편성된 사실(세부적으로는 부목사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것이다), 원고 교회는 2003년부터 재산운용방법(중학교 인수 문제 등) 등을 둘러싸고 내부의 갈등을 빚어오다가 2004. 10.경에는 원고 교회의 장로 10여명이 원고 김○○의 미국 시민권 포기 약속위반, 독단적인 부서 임원 임명, 처리권(징계권) 남용 등의 이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역노회에 고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피고 조○○의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원고 교회의 공식적인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편성내용, 원고 교회의 담당위원회가 재미 유학 중인 원고 김○○의 자녀교육비로서 연간 30,000,000원(15,000,000원 씩 2회)을 4년 동안(대학졸업시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한 시점이 2001년 초경(갑 제4호증)임에 비추어 2005년도에는 통상적인 대학 수업연한을 초과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교회의 경우 교인들의 현금으로만 운영되는 교회인데 담임목사인 원고 김○○ 개인의 생활 및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원고 김○○이 미국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문제 등이 원고 교회의 내부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그 문맥 중에 '연봉 2억 원', '총예산 중 20%를 담임목사가 가져간다', '청소원의 연봉은 담임목사와 20배 차이' 등 수사(修辭)적인 과장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하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표현방법 또한 모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관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

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황 인 경

판사 이 영 남

〈별지 1, 2〉 기사 생략 - 편집자 주

